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74-10



ISSN 1975-3128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인 디지털음성도서 데이터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도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nld.nl.go.kr)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정책정보/발간자료/연간보고서' 메뉴에서 데이터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인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로고타입 자체를 간결하게 만들고 조형적 완성도를 높여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으로서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조'와 '생명' 그리고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의 심벌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만의 정체성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로고타입과 함께 사용한 심벌은 현대성과 한국성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용', '공명정대'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 조형인 원과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을 활용하여 심벌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 발간사



“급변하는 인권 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험겨운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는 일상의 인권문제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인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 실현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당국의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의 사회적 낙인 방지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와 성명 등을 발표하였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등 방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문제를 해결하고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였으며,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등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을 선언하고 다양한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스포츠계의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환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였고, 국회의장에게 낙태죄 비범죄화가 바람직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결정들을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진정사건 처리를 통해 처리 건수와 권리구제율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인권현안에 대하여 직권조사와 긴급구제 등 적시성을 높인 현장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보호를 위해 장애인인권 피해사례 긴급 실태조사, 정신의료기관 코호트 격리에 대한 방문조사,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난 긴급소득 외국인 배제 개선 권고,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성명과 같은 다각적인 인권 보호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EU와 함께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부위원장에 선출되는 등 활발한 국제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20년은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년)을 마무리하는 해로써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년)을 확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업무는 그 자체로 국내외 인권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이번 연간보고서는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수행한 일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현재의 인권상황과 인권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록으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위원회는 그간 독립적인 인권옹호기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여러 인권 현안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동안의 성과를 성찰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인권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충실히 보장 되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일러두기

- 1 본문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단체를 ‘인권·시민사회단체’로 표기하였다.
 - 2 본문에서 ‘월’ 앞에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2020년’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 3 본문 표에서 사용된 부호 ‘-’의 뜻은 해당 숫자 없음(0)을 의미한다.
 - 4 본문에 수록된 통계표의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을 의미하며, 특별한 경우 누계 산정기간을 명기하였다.
 - 5 본문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수치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고령자고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종차별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자유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舊 ICC)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2008년부터 4-5년 주기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이 검토하는 제도

CONTENTS

목 차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3
제2장 2020년 대내외 환경	8
제3장 2020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10
제4장 평가와 과제	34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43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44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44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45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59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86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88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90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90
2. 인권증진 사업	103
제4절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122
제5절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127
제6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130
제7절 평가	139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145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148
1. 인권상담	149
2. 진정 접수	154
3. 면전진정	155
4. 민원	156
제3절 기초조사 및 조정	158
1. 기초조사	158
2. 조정	159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60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60
2. 직권·방문조사	164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167
가. 검찰·경찰·법원	167
나. 군	183
다. 구금시설	192
라. 다수인보호시설	196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200
바. 각급 학교	206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12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12
2. 직권조사	218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221
가. 성별에 따른 차별	221
나. 성희롱	223

CONTENTS

목 차

다. 장애에 따른 차별	225
라. 나이에 따른 차별	228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230
바. 종교에 따른 차별	234
사. 병력에 따른 차별	236
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237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239
차. 혼인 여부,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242
카.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245
타. 전과	246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247
제6절 행정심판	253
제7절 평가	254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26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63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263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265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268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79
5. 인권도서관 운영	283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286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88
제3절 평가	295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298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300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300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308
3. 국제회의 개최	311
제3절 평가	313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315
제2절 주요 활동	316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316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317
3. 진정사건 처리	318
4. 인권교육	321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322
제3절 평가	337

CONTENTS

목 차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345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64
3. 2020년 결산	377
4. 2020년 상담·진정 통계	378
5. 2020년 업무 총괄도	380
6. 2020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381
7. 2020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407
8. 위원회 간행물	408
9. 보도자료	411
10. 사진으로 보는 2020년	419
11. 위원회 소관 법규	423
12. 위원회 활동일지	427



표 목차

[표 1-1-1] 위원회 정원	5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44
[표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148
[표 2-2-2] 최근 5년간 유형별 상담 현황	150
[표 2-2-3]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151
[표 2-2-4]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152
[표 2-2-5]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54
[표 2-2-6] 최근 5년간 면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155
[표 2-2-7] 최근 5년간 접수 경로별 민원 처리 현황	156
[표 2-2-8] 최근 5년간 민원 처리 현황	157
[표 2-2-9] 진정사건 기초조사 배정 및 종결 현황	159
[표 2-2-10]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9
[표 2-2-11]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160
[표 2-2-12]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162
[표 2-2-13] 2020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63
[표 2-2-14]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13
[표 2-2-15]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14
[표 2-2-16] 최근 5년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16
[표 2-2-17] 2020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17
[표 2-2-18]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	253
[표 2-3-1] 2020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267
[표 2-3-2]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69
[표 2-3-3] 2020년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운영 현황	271

CONTENTS

목 차

[표 2-3-4] 2020년 학교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273
[표 2-3-5] 2020년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274
[표 2-3-6] 최근 5년간 인권특강 운영 현황	275
[표 2-3-7] 최근 5년간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276
[표 2-3-8] 2020년 강사역량과정 운영 현황	277
[표 2-3-9] 최근 5년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현황	278
[표 2-3-10] 2020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281
[표 2-3-11]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283
[표 2-3-12] 위원회 간행물 원문 이용 현황(인권도서관 홈페이지)	283
[표 2-3-13] 인권도서관 이용 현황	284
[표 2-3-14] 인권도서관 분관 장서 현황	284
[표 2-3-15] 2020년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현황	287
[표 2-3-16] 홍보 매체별 이용자 현황	289
[표 2-3-17] 2020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291
[표 2-3-18] 2020년 제9회 인권보도상 당선작	293
[표 2-3-19] 2020년 결정례 동영상 내용	294
[표 2-4-1]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301
[표 2-4-2]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현황 ..	302
[표 2-4-3]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303
[표 2-4-4] 2020년 인권 현장 방문 현황	305
[표 2-5-1] 인권사무소와 출장소 위치 및 관할 구역	315
[표 2-5-2]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316
[표 2-5-3]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면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17
[표 2-5-4]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318
[표 2-5-5] 2020년 인권사무소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321



그림 목차

[그래프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149
[그래프 2-2-2]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161
[그래프 2-2-3] 전년 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 기타 제외)	215
[그래프 2-3-1]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6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20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3
제2장	2020년 대내외 환경	8
제3장	2020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10
제4장	평가와 과제	34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1. 설립과 주요 기능

위원회는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만들어졌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92/54)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단체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92/54)와 파리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공론화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약하였고, 1999년 4월 7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3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6개월 후인 2001년 11월 25일 독립적 국가기구로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인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또한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통해 기존의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와 서로 보완하는 준사법적 기구이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이라는 점과 파리원칙이 정한 권한과 책임, 구성과 활동 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준국제기구의 성격이 있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주요 4대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 기능은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 등이다. 조사·구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인권교육과 홍보 업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이고, 국내외 교류 협력 기능은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하는 업무이다.

2. 조직

인권위원회는 총 11명이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11명의 인권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요 업무의 수행 및 의사결정을 위해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로서 침해구제제1위원회(검·경·군·국정원·입법부·사법부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 기타 인권침해 분야), 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차별, 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분야), 아동권리위원회(만 19세 미만 아동, 아동보호시설·소년원 분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위원회 조직은 정무직 4명과 사무총장, 1관 3국 16과 2팀 5사무소 1출장소와 임시 조직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정원은 총 232명이고 본부 188명(정무직 4명 포함)과 소속 기관 44명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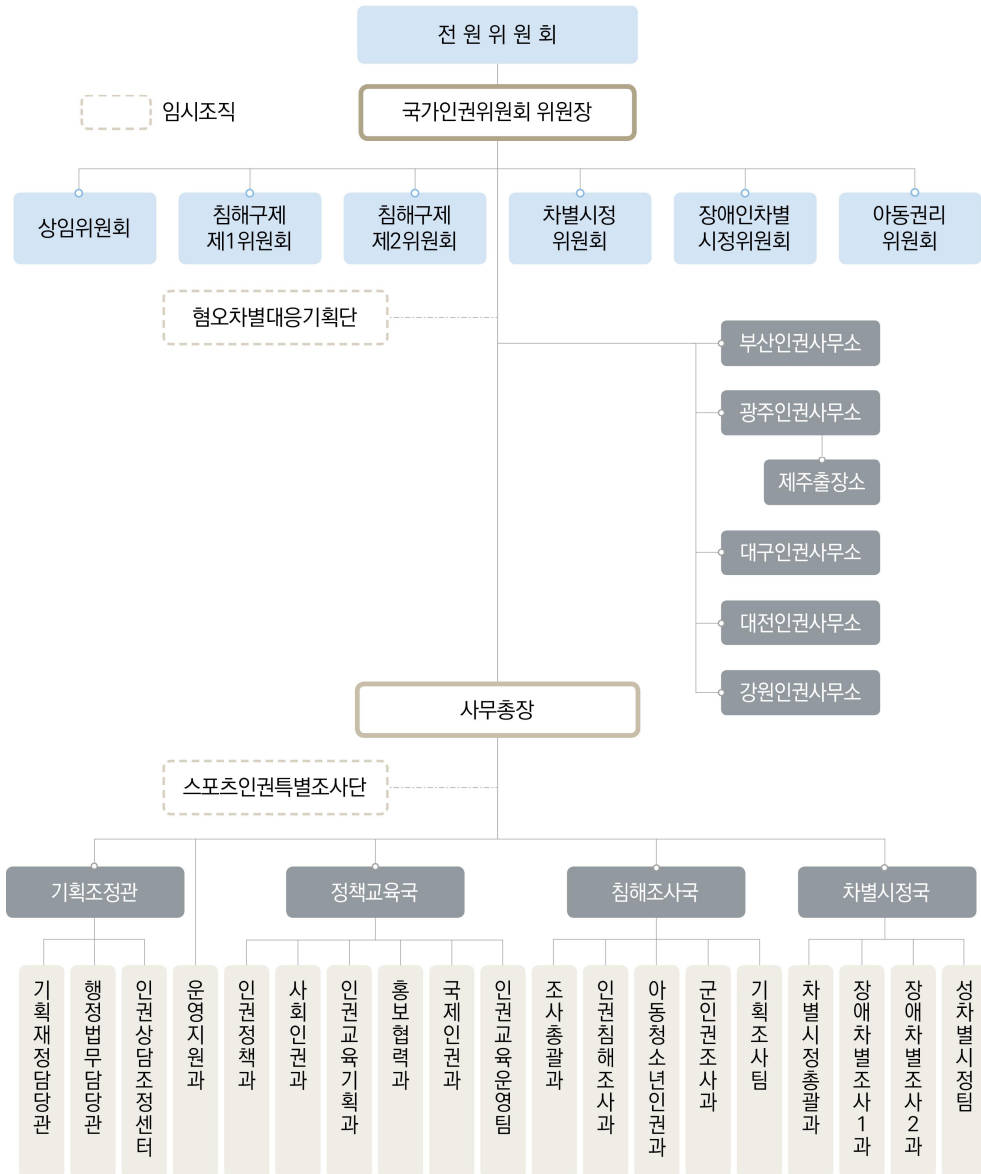
[표 1-1-1] 위원회 정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경감
계	232	4	5	3	18	15	57	57	43	8	20	1	1
본부	188	4	5	3	13	15	47	52	29	3	15	1	1
소속	44	-	-	-	5	-	10	5	14	5	5	-	-

■ 위원회 조직도



3. 2020년 예산

1) 경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19년(B)	증감(A-B, %)
	본예산	추경(A)		
계	37,827	36,669	36,683	△0.04%
인 건 비	18,515	17,885	17,936	△0.28%
기 본 경 비	8,610	8,587	8,152	5.34%
주 요 사 업 비	10,702	10,197	10,595	△3.76%

2)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20년 예산	
		본예산	추경
총 계		10,702	10,197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1,415	1,415
	① 인권의식 향상	947	947
	② 지역 인권문화 확산	468	468
인권교육 활성화		1,825	1,707
	③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825	1,707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2,645	2,459
	④ 상담 서비스 접근성 제고	218	218
	⑤ 취약 분야 인권개선	1,779	1,593
	⑥ 장애인 인권증진	648	648
인권제도 선진화		1,438	1,438
	⑦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215	1,215
	⑧ 북한인권 개선	223	223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585	1,384
	⑨ 국제교류협력	1,295	1,094
	⑩ 국내교류협력	290	290
인권위 정보화		1,794	1,794
	⑪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102	1,102
	⑫ e-진정시스템 구축 운영	692	692

제2장 2020년 대내외 환경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생명·안전의 위협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일상에 존재하던 인권문제를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재난 상황에서 개인,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가 드러났고, 그간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도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성명, 권고, 방문조사, 직권조사, 긴급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종, 출신국가, 출신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심각한 혐오표현 및 차별을 목격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차별과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문제를 해결하고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6월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 입법을 위한 지원 활동을 개시하였다.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인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이 여전히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의 변혁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스포츠인권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면서 경찰력에 의한 권한남용·인권침해 예방 및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2021년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유연성, 전략성, 업무 균형성, 유사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목표설정체계인 ‘인권증진행동 전략(2021~2025년)’을 수립하였다.

제3장 2020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1. 기본 방향

2020년 위원회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4대 전략 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업무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과 실효성 강화,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지속적인 국내외 협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2. 사업별 추진 성과

가. 위원회 4대 전략 목표

1)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기후 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 다양한 노동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책간담회를 실시해 택배노동자 노동인권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노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한편 가스안전점검원 등 가구방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조건 향상 및 인권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노동환경별로 청소년이 직면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분석하고, 청소년 노동환경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국내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강화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언어적 제약, 제도와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및 법·제도적 차별 등으로 인해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민의 건강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태 조사를 추진하였다.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고,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전체의 안전보장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퇴거시키는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절대빈곤계층의 생존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구제

위원회는 남성은 정규직 아나운서,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해 온 방송국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또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서울시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논의하는 한편, 뉴질랜드 대사관 상사에 의한 외국인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성희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을 살펴보았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탈시설 및 접근성 제고

정보접근권은 위원회가 장애인 인권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의제로서,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전달 방식이 초래하는 정보 불균등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0년은 농인(聾人)의 정보접근권에 큰 진전을 이루어낸 해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2월 각 방송사 뉴스 보도에서 정부의 공식 브리핑 상황을 보도하면서 수어통역사를 한 화면에 배치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해지자 2월 28일 긴급하게 <농인(聾人)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 보장을 위한 위원장 긴급성명>을 발표하였다. 공중파 방송3사 메인 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진정에 대해 4월 20일 메인 뉴스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접근권 측면에서 수어통역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는 방송3사 모두 수용하여 9월부터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9월 21일에는 대통령 대국민 특별연설도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 전자정보 접근성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종합 분석을 처음 실시함으로써 향후 조사 매뉴얼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평가,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활동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광주, 부산, 춘천, 경주에서 <장애인 탈시설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주민·난민의 인권보호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단순히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중단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난민 또한 겪는 재난이다.

그러나 이주민·난민이라는 이유로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의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더 취약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의견수렴 등과 같은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항 터미널에 장기 체류하는 난민아동의 인권침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고등학교 졸업까지 국내에서 장기간 살아가고 있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 코로나19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민 배제, 난민신청자의 면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주요 진정사건을 통해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이주민·난민의 정책·제도 개선도 함께 도모하였다.

한편 정부 정책 및 언론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의 이주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주인권 분야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권이 강화되면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인권위의 역할과 수사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한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수사절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3차 NAP 중 수사 절차 관련 인권보호·증진 제도 추진 현황 및 실무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위원회는 2020년 친권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 사례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현황, 사전 예방 절차 및 사후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여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 제915조 삭제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거주 아동의 진정권 보장 등 권리보장 체계와 자립 및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점검하였다.

한편 외국인보호시설(5개)을 방문하여 감염병 상황 아래 보호외국인 처우 및 건강권을 점검하고 장기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정책이 목적인 바와 같이 추진되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교정시설(10개)을 서면·대면 방식으로 점검하고, 방문조서를 송부하여 시정 조치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개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대상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면조사, 시설장 및 전문가 간담회 추진 등으로 대체하였다.

3)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공공·학교·사회 영역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건립 부지와 기본 설계비를 확보하였다.

또한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인권교육포럼,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전문화에 힘썼다.

「노동인권교육활성화법률안」 의견표명,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도입 제도개선 권고로 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대학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로 인권교육 현황과 문제점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 인권기구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전담기구가 활발하게 설립됨과 아울러 국제인권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지역 인권에 관한 전문성 강화와 과제 발굴 및 자문을 위해 지역인권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지방 인권기구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강화하였다.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현황 조사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인권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관계자, 인권

행정 담당자, 인권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인권옹호자회의>를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평등법과 관련하여 △각 인권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대응, △지자체 인권기구(지역 행정, 의회, 단체 등)의 책무,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으로 분과를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또한 지자체 인권업무 매뉴얼 수립을 위해 전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업무별 애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광역자치단체 11곳, 기초자치단체 60곳 등 총 71곳의 지자체가 답변을 하였다.

시민사회 협력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 설립의 주요한 기반으로, 위원회의 업무 활성화, 현장성 및 효과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온라인 의견수렴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병행하였다.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12월)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9월)에 참가하여 위원회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특히 노인인권 등 주요 인권의제 공론화를 선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GANHRI 연례회의에서 총회 의결을 통해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6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화상회의에 패널로 참가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고, 9월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의 <노인의 권리 향유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성명서를 발송하였다. 12월 GANHRI 연례회의에서는 위원회의 노인인권 보호 활동을 문서화하고,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역량 강화와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 관련 규범적 요소들과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주제(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권, 사법접근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에 개최된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는 최영애 위원장이 APF 부의장 겸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아가 위원회는 APF와 공동으로 9월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혐오차별 대응기제로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혐오차별과 관련된 인권문제의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선도적인 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0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등법’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각국의 평등법 제정 과정, 제정 이후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경험 및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11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중간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부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 견해 권고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2월에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등 5개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입법부를 중심으로>를 개최하여 국회의 역할 제고와 입법 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정책 검토를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엔의 주거권 보고서, 혐오·표현 대응 유럽평의회 권고 등 주요 인권 문헌을 번역·배포하였다. 국제의원연맹(IPU)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

발간한 책자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2016) 을 번역·배포하여 국회의원의 인권보호 관련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주요 인권조약기구의 일반 논평(총 171종)을 번역 및 감수하여 내용과 질을 보강했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4)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북한인권 문제 대응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위원장 논평,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고, <북한인권 포럼>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쟁점을 살펴보는 한편,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해 북한인권 현안에 적시 대응하였다.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과 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상반기 <인권경영포럼>을 열지 못함에 따라 인권경영을 위한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인권경영의 국제 동향과 기업의 실천 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20 기업과 인권 포럼> (하반기 인권경영포럼)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영상정보처리기기 등과 같은 정보처리 신기술이 인간의 삶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와 기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러한 시대 변화를 감안한 정보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다수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끌어내는 한편 관련 의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수술실 CCTV의 처리 기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금융정보 제공 기준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의 인권보호 기준을 제시한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허위 언론보도와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주문내역정보’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권고 결정을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정보인권 각계 주요 전문가로 <정보인권포럼>을 구성하고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호, 빅데이터 시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방안 등 새로운 의제 발굴과 개선 방안 제시에 노력하였다.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생명·안전의 위협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등의 인권이 얼마나 더 취약해질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위원회는 ○○○○병원 폐쇄병동 장기입원 정신장애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긴급구제 및 성명 발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 상황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를 기록하여 향후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인권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최장 하루 24시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이 중단되거나 하루 3~4시간으로 급격히 단축되어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권뿐 아니라 생명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데 대하여 긴급구제 권고(7회)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긴급 정책권고를 통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아동인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자 <기후변화와 아동인권 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위원회는 부대 내에서 장병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자살 비중이 높은 점을 주목해 초급간부 자살 예방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 구급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군 교도소의 인권적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육군 전·후방 각 2개 부대, 해·공군 각 1개 부대)하여, 일부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국방부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나. 특별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위원회는 2019년에 이어 혐오표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20년 사회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산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위원장 성명, 코로나19와 혐오 빅데이터 분석, 국가기관 최초로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실태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혐오표현 발화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은 교육 영역과 언론·미디어 영역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을 선언하고,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온라인, 스포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고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공감대가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 강화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진정사건 처리 절차 개선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로 권고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수용 권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 피권고기관의 불수용 사유 등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교직원 채용 시 종교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3개 사립대의 불수용,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 공가 적용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불수용,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배제 시정 권고에 대한 경기도의 불수용,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민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경기도의 불수용,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경찰청의 불수용 등 권고 불수용 9건을 언론에 공표하였다.

한편 지난 20여 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권고가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권고 이행에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0년 수사분야 인권개선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긴급구제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긴급구제 신청이 들어온 경우 현장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긴급구제 요건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 후 긴급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에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여 긴급구제 신청 사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위원회는 조직·예산상 독립성 확보 등 독립성 강화, 역할 및 기능 확장, 권리 구제 기능 확대,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설, 법적 정합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준비했으며, 2021년 정부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진정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진정 시스템'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가 가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차별판단기준 수립 연구 등 차별사건 양상 변화에 적극적 대응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위원회 차별 분야 진정은 꾸준히 증가(2002년 136건→2009년 1,685건→2015년 2,188건→2020년 2,869건)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용 영역과 관련한 차별 진정 증가(고용차별 사건처리 2016년 490건→2020년 702건) 폭이 크다. 차별 진정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차별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차별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내용 측면에서도 사건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하고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차별행위도 겹으로 드러나는 직접 차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차별이 많아지는 등 양상이 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적인 차별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실정법령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차별금지 관련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차별금지 법제, 실무 지침을 참조할 수 있도록 주요국(캐나다, 독일, 영국, EU)의 고용차별 관련 법령·지침에 대한 번역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년도에 수행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주요 결정례의 차별 사유별, 유형별, 영역별 쟁점을 도출하고 비교 대상 판단 기준과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위원회가 차별 진정을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직원 인권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합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교육을 소규모 집합교육 형태 및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내실 있고 안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인권전문학교’ 교육과정 기획 시 실무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야별 특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였으며, 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시정국 조사관학교’, ‘침해조사국 조사관 학교’로 분리 운영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근현대사 이해’ 과정을 운영하여 인권사를 살펴보고 미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부서별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업무와 교육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라. 주요 인권 현안 대응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핵심 원칙이고,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¹⁾.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응답해야 할 시점이며,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²⁾도 무르익은 점을 고려하여, 2006년 위원회의 제정 권고 이후 7차례에 걸친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평등법의 성공적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입법 환경 조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존중되고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건강한 포용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쟁점검토회의(9회), 공론화 실무팀회의(4회), 법안 의견수렴(자문회의 6회, 의견청취간담회 3회), 인권위원 워크숍(2회) 등을 거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 시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국회에 조속한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한편 의견표명 이후에도 성공적인 국회 입법 발의 지원을 위해 입법추진전략팀 회의(9차),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 면담, 개별 국회의원 방문 설명,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면담, 개신교 등 7대 종단 원로 면담, 6개 권역별 지역설명회 개최, 평등법 Q&A 자료 제작·배포, 카드뉴스 및 유튜브 광고 제작, 혐오차별

1)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2015년 심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2017년 심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8년 심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년 심의), ‘아동권리위원회’(2019년 심의) 및 UPR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2017년 심의)에서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4.) 결과, 조사 대상 10명 중 9명(91.1%)이 ‘코로나19 계기로 나도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88.5%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국제 콘퍼런스 지원, 주한 외국대사관 초청 콘퍼런스 참석, CBS·쿠키뉴스 언론 인터뷰 등 다각적 공론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운영

2019년 2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당초 2020년 2월까지가 업무 기한이었으나 2019년의 성과를 토대로 2022년 2월까지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초·중·고교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대학생 선수 실태조사, 합숙소 운영 실태조사, 실업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중·고교 학생선수 및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 500여 개 스포츠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등 대응 및 보호체계 관련 대규모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서 스포츠계에 근본적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19년 실시한 초·중·고·대학교 학생선수들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0개 종목을 선정하고, 선수·지도자·학부모, 체육회 관계자·운영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스포츠인권 침해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에 접근하는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전국 규모 대회가 취소되거나 개최한 대회마저 무관중으로 진행된 상황에서도 경기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스포츠계 인권의식 환기를 위해 스포츠인권 캠페인 ‘#인권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와 ‘스포츠인권선서 시즌 2’를 진행하여 비대면 상황에서 스포츠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전 사회적 지지를 결집하고 체육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 확산 속 다각적 인권보호 활동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 사회적 낙인, 감염취약계층 증가 등 국민 불안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제약,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손목밴드 도입,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 차별 등에 대해 5건의 권고와 10건의 성명을 발표하여 방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다.

- ▶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 대처 성명(2. 5.)
- ▶ 재난 상황 보도에서 농민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 보장을 위한 긴급성명(2. 28.)
- ▶ ○○○○병원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성명(3. 3.)
- ▶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성명(3. 9.)
- ▶ 코로나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대책 마련 촉구(3. 19.)
- ▶ 손목밴드 도입 논의 등 과도한 자유권 훼손에 대한 위원장 성명(4. 9.)
-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5. 14.)
- ▶ 육군 간부의 장병 대상 코로나19 성금 강제 모금 관련 권고(5. 27.)
- ▶ 긴급소득 지원 시 외국인 배제에 따른 평등성 침해 권고(6. 11.)
- ▶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노인의 취약성 관련 성명(6. 15.)
- ▶ 포천시의 외국 국적을 이유로 한 재난지원금 미지급 차별 권고(7. 30.)
- ▶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 등 인권침해 권고(9. 1.)
- ▶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및 입원절차 존중에 대한 의견표명(9. 21.)
- ▶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 존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12. 30.)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별 대응팀’을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특별대응팀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정보인권·기본권 침해, 취약계층 보호 등의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방역 활동과 기본권 보장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 상황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 등이 수립한 코로나19에 대한 인권적 대응과 관련해 수용자, 노인, 아동, 이주민 등 분야별 총 15종의 인권보호 지침 및 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번역하여, 국내의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검토 시 국제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성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고, 더 나아가 해당 확진환자가 인터넷상에서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 증상이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 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3월 9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 조사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실제 여러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전국적 실태조사를 긴급 현안 의제로 설정하고, 10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피해 상황 수집과 발달장애인 가족 설문조사 및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정책 수집을 골자로 하는 긴급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정부는 1년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와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규모가 크고(1,174명),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확인되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12월 22일 긴급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관심을 촉구하였다. 후속 분석과 정리 작업을 거쳐 2021년 1분기 내에 전체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4월 단체진정으로 접수됨에 따라 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조사·검토하여 5월 전원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개선 권고를 하였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추가적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거나,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여 정책을 시행하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위원회는 8월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직권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을 확인하고, 공적 영역에 있어 노동권 침해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제도개선 등 권고안을 준비하고 논의하였다.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30일 국회의장에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낙태죄를 존치하고 있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9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의견표명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성전환 부서관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관련 긴급구제 권고

위원회는 1월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서관(이하 ‘이 사건 부서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서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으며,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020년 1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해 육군 참모총장에게 2020년 1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인 시위 및 농성 관련 긴급구제 대응

2020년에는 긴급구제 신청 사건이 급증하였는데, 신속한 현장 기초조사를 통해 인권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대구 재개발 현장 음식물 등 반입 제한과 관련하여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긴급구제 권고를 결정하였고, 세월호 참사 생존자의 청와대 앞 장기 1인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자의 난방·의료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외에 금융연수원 앞 1인 시위, 부산 그랜드 호텔 농성, 대우조선 고공 농성,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 관련 농성,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³⁾

2020년 인권침해분야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6,530건으로 2019년 대비 449건(6.4%)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감소세인데,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3)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160쪽) 참고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활동과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진정 발생 요인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6,385건으로 2019년에 비해 251건(3.8%) 감소하였다. 이는 접수 건수 감소에 따른 처리 건수 자연 감소, 2017년부터 누적된 장기사건 처리 집중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권리구제 건수는 634건으로 2019년 대비 106건(20.1%) 증가하였고, 권리구제율은 9.9%로 2019년 8.0% 대비 1.9%p 상승하였다.

2020년에도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가 이어졌다. 무분별한 출국금지 요청 관행 개선 권고, 피의자 경찰차량 호송 시 안전 확보 규정 마련 권고, 집행관의 부동산 집행 최고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의 주거지 무단 침입 관행 개선 권고,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의 전역처분에 대하여 전역처분 취소 및 제도 정비 등 권고, 교정시설 내 일률적인 외부 도서 반입 제한 중지 권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배제 개선 권고, 공공기관 경비 조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과 관련하여 관련자 징계 권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반성문 작성 강요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에 힘을 기울였다.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⁴⁾

2020년 차별분야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2,385건으로 2019년 대비 336건(12.3%)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외부 활동 축소로 장애차별 진정 요인 감소, 2018년 미투운동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성희롱 사건의 예년 수준 회복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비록 전년 대비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은 감소하였으나, 2020년 진정사건 처리는 2019년 대비 오히려 427건(17.4%)이 증가한 2,879건을 처리하였다.

4)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212쪽) 참고

이는 접수 건수 감소에 따른 사건처리 소요시간 감소, 다수 병합 장애인 차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권리구제 건수는 976건으로 2019년 대비 464건(90.6%) 증가하였고, 권리구제율은 33.9%로 2019년 20.9% 대비 13.0%p 상승하였다.

2020년에도 인권이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차별 및 성희롱 진정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가 이어졌다. 지상파 방송3사 메인 뉴스 수어통역 제공 시정권고를 통해 농인 언어권 보장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아나운서 비정규직 채용 등 방송국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 개선 권고, ○○○○대사관 상사에 의한 외국인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 신체조건(내반슬, 색각이상)을 이유로 경찰 모집 배제 등의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 힘을 기울였다.

제4장 평가와 과제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생명·안전의 위협과 사회·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역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장애인·이주민·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확보 등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사회적 낙인 방지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고, 방역 당국이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긴급소득 외국인주민 배제 개선 권고, 정신의료기관 코호트 격리에 대한 방문조사,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권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 긴급 실태조사,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성명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향후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더욱 심화되는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교육 영역에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 언론·미디어 영역에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등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을 선언하고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등법 관련 쟁점 검토,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평등법

시안을 마련하여 6월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평등법 입법 취지를 알리고 종교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입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에도 평등법이 중요한 입법 과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의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반(反)차별·평등을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고(故) 최속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오랜 기간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승리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점철된 스포츠계의 성과주의를 통해 폭력적 훈련 환경과 평가 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구제는 물론 구조 변혁을 위한 적절한 직권조사 수행을 통해 스포츠 인권 피해구제체계의 초석을 다지고, 스포츠 현장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과제를 적절히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4대 전략 목표별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주요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빈곤 해소 등 사회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의 평등한 향유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택배노동자, 건설노동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가구방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노동 현안을 살피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⁵⁾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검토도 추진하였다. 또한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과 절대빈곤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다양한 약자들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으로써 실질적 평등사회 지향을 위한 다각적 활동과 노력을 기울였다.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분야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적 대표성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성희롱 예방과 규제를 위한 맞춤형 개입 전략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차별 해소와 성희롱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방송 화면에서 수어통역을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5) 플랫폼노동 : 배달대행 앱·대리운전 앱·가사노동 중개 앱·각종 심부름 앱과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형태

일상이 되었다. 또한 8회에 걸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권고를 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지적되어 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 긴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단편적으로 보고되던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특히 발달장애인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한편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 등을 권고하고,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장애인 탈시설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동인권 분야에서는 연이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코로나19로 초래된 아동인권 문제가 위원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하였다.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 사례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현황, 사전 예방 절차 및 사후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여 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한편,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 제915조 삭제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주인권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이주민·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신속하게 권고하여 외국인주민도 재난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인 및 노숙인 복지 시설, 구금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대해 총 7건의 방문조사를 개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대상 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워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2020년에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1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전국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인권기구, 시민사회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역인권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 구조인 지역인권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 사무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인권전문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국가인권 기구 교류·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 겸 거버넌스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였고, 세계국가 인권기구연합(GANHRI) 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국제인권규약의 정부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등법' 제정 논의를 위한 국제 협력 활동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적용 관련 콘퍼런스 개최 등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인권 개념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 인권 개선,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정보인권 보호, 생명·안전·환경·문화, 군 인권 등의 새로운 인권 개념의 사회적 확산과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처리 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인간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정보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인권 분야에서는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군 구급시설의 기능, 시설 및 환경 등을 점검하여 군 영창 폐지 이후의 군 구급시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권고하는 등 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성전환 부사관의 강제 전역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등 긴급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인권 분야에서는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고, <북한인권 포럼>,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해 북한인권 현안에 적시 대응하였다.

2020년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대비 804건(8.2%)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인권침해, 차별 행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적극적인 진정사건 처리를 통해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63건(1.8%) 증가한 가운데, 권리구제 건수도 569건(54.7%) 증가하였고, 권리구제율도 17.3%로 전년 대비 5.9%p 대폭 상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인권현안에 대하여 직권조사와 긴급구제 등 적시성을 높인 현장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기존 관행·제도의 개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가 이어졌다.

다만 국가인권기구로서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과 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에도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면 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일부 부족함이 있었다. 향후 비대면 업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실질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면서 10만 경찰력에 의한 권한남용·인권침해 예방 및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위원회가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검경인권 조사과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말 기준 위원회 차별시정국 조직 정원은 33명(국·과장 포함)으로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조직 축소 이전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2008년 12월 기준 정원 30명), 과거 대비 급증하는 차별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종합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효과적, 안정적으로 발휘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인적 자원 충원, 가칭 성평등과 신설 등 조직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성차별 시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8년 7월 24일부터 총액 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임시 조직인 성차별시정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같은 형태로는 성희롱·성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젠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젠더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여 성차별 관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만큼 2021년 6월 30일 성차별시정팀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과 단위의 정규 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43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45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60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98
제5장	인권사무소	315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계	993	413	550	30
2020년	117	25	91	1
2019년	102	25	75	2
2018년	63	28	32	3
2017년	64	30	33	1
2016년	72	44	26	2
2015년	36	12	23	1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

2020년 위원회의 정책권고는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의견표명은 2019년 대비 21% 증가한 91건에 이르는 등 다양한 인권 현안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의견표명이 증가한 것은 개별 진정사건을 통해 관련 정책 및 관행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또한 직권조사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는 등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2. 정책권고 주요 내용⁶⁾

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긴급 개선 권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로서, 2021년 예산이 1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복지제도이다. 그런데 65세 이전에는 하루 24시간까지도 받던 활동지원급여가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3~4시간으로 급격히 단축되어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유지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해왔는데, 2020년 2월 20일 긴급 정책권고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17개 광역 자치단체장에게는, 법률 개정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연령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도 관련 법률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사실상 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고, 국회의 적극적 입법 노력으로 12월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었다. 위원회 권고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개정 법률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령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6) 정책권고 목록은 부록 참고.

나. 교육전문직 사립학교 교원 배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3월 27일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을 교감계열 응시자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전문직원 추천 절차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다. 중등 교육전문직원 응시자의 경우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중 한 계열이 선발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전문직원전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계열의 지원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다.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이고,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교육전문직원의 지원 자격을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할지 또는 공립학교 교원으로만 제한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렵다며, 교육전문직원 지원 자격에서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업무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계열에만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교감계열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지원할 경우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추천자가 학교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감계열 대상자를 추천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중 한 계열의 선발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계열 지원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합격자가 담당할 교육전문직의 업무 내용이 동일한 점으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청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2020년도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부터 중등교사계열과 교감계열 모두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하였다.

IT업체 대표 및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되면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76조2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이 사용자와 노동자 이외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 대상을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고,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021년 3월 24일, 국회는 위원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였다.

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이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해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민주화보상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정부포상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추천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마.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9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 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2025)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정신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 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있어 ‘요양’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거주서비스 제공 시설로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실제 역할에 부합하는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인력 기준과 최저 서비스 기준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임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논의가

미비한바,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2025)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질적 추진 방향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바.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8월 28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직영·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하여 단기보호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2018년 11월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생활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요양·돌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인프라 수준이 상이해 접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상존한다.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17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4차 심의 최종견해에서 노인이 오랫동안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확충이 필수적인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충분한 재가 돌봄서비스로 인해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되어 있는 ‘단기보호’를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과 그 가족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비용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여야 하는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책무(「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3항)가 있는바,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과 그 가족이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2020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정책권고

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군 구금시설 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조사는 2020년 8월 5일부로 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징계 입찰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구금 시설로서의 기능과 군 미결수용자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방문조사 대상 6개 부대(육군 4개 부대, 해·공군 각 1개 부대)에 서는 대체로 규정에 따라 수용자 처우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하거나 군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인되어 위원회는 10월 13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규정 마련, △번호인 접견실 개선, △구금시설 내 보호실 설치 및 보호 장비 구비, △수용자 개인정보 노출 관행 개선, △화장실 변기 및 샤워실 차폐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 기후 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

위원회는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임금지원 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건설업은 옥외에서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이다. 이러한 폭염은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 기온 현상으로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 배포하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폭염 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업 중지로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폭염 상황에서 작업 중지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휴게실과 샤워실 등을 추가하고 현장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규모를 포함한 각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자.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권고

위원회는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애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다.

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가 민영화된 이후,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업무는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된 연속공정 업무임에도 발전기·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대부분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간접고용⁷⁾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전5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노동자였다.

따라서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각 공정 간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가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가 발전회사에 직접고용될 수 있도록 발전회사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7) 간접고용은 직접고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고용’과 ‘사용’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내하도급(사내하청)·용역·파견 등을 포괄하며, 외주화·아웃소싱·분사화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일컫음.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남동발전 등 5개 발전회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할 것,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 전담 부서 혹은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방법으로 통합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과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약 4만 4,000명으로 늘어났으나 처우 등 근로 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별로 임금수준이 다르고, 각종 수당 중 일부만 지급되는 등 격차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임금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인 상용임금의 경우 기관별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에 산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를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인사관리체계가 달라 격차가 존재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인사·노무관리 대응 체계 및 총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혹은 전담 부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카.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8년 12월 31일 고(故) 임○○ 교수 피살사건, 2019년 4월 17일 안○○ 방화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관련 언론보도량이 급증하고, 조현병에 대한 위협성과 폭력성이 극도로 부각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혐오로까지 번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나 편견으로 인해 정신질환 치료 시기를 놓쳐 만성화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제20대 국회에서 강제입원, 치료 등 정신질환자 관리 및 통제 관련 법률이 대거 발의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반대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랐다.

이에 위원회는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과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캠페인, 언론 모니터링과 언론인 대상 교육·훈련 등의 인식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 국가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타.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위원회는 12월 2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회의장에게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법」의 개정 추진을 권고하였다.

강제퇴거 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강제퇴거와 관련한 입법 조치에는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 ‘정부 관계자 또는 대표자의 퇴거 현장 입회’, ‘악천후·야간·휴일 등에 퇴거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강제퇴거 실시 금지’,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의무자의 퇴거 조치 완료 후 행정대집행 실행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 마련,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현장 등에 공무원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동절기 또는 악천후 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파.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와 이를 통한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보호종료아동 역량 강화라는 2개 주제하에 주거지원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취업·진학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3만여 명의 아동이 부모의 빈곤·학대·사망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만 18세에 도달하여 법적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동이 2019년 기준 2,58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책은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거나 금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보호종료아동이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 개선 및 역량 강화, 자립 관련 정보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실용적 생활기술 등 자립 준비 교육 확대,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취업·진학 지원 강화 등 보호종료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권고

위원회는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문내역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중에서 ‘주문내역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0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사업이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는데, 여기에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문내역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어떤 상품을 언제, 어느 업체에서, 얼마의 수량과 품목을, 얼마의 금액으로 주문·결제·배송 받았는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의 범주 안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0년 2월 4일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 범주에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 정보’를 추가한 것은 적절치 않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본인신용관리업이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에 ‘주문내역정보’까지 포함하는 것 또한 신용정보의 포섭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문내역정보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성향·취향이나 정체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일상사의 변화 등 내밀한 사적 영역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를 대량으로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생활 노출이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통합·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주문내역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거. 20대 청년 개별가구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12월 28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대 청년이 취업과 학업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빈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아 부모와 떨어져 살수록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 단위로 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한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인 가구 수급액보다 적게 지급받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뿐 아니라,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고, 저소득 20대 청년의 빈곤 탈출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부모와 청년 세대 모두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아울러 비혼·만혼에 따른 20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의견표명 주요 내용⁸⁾

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월 10일 국회의장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 의사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입증이나 부정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수술실

8) 의견표명 목록은 부록 참고.

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개정법률안 제26조의2는 수술 과정에서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인권 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하도록 규정하되, 환자 동의를 어려운 응급수술 등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명확히 동의 사항을 고지하고 서면 등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중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보의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하므로 CCTV로 기기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술실 내 CCTV에 대해 촬영 범위나 임의조작 금지에 대한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영상정보처리기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하여 균형에 맞는 처벌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공항 장기체류 난민신청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위원회는 2월 27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들은 앙골라 국적 아동으로, 2018년 12월 부모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10개월가량 인천공항 제1터미널 승객라운지에서 머무르게 한 것은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출국대기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 및 건강권을 포함한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 아동인 진정인들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난민협약상 난민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기본적 처우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체약국의 의무와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경우 관련 소송 및 심사 기간에 그 국가에서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월 20일 국회의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의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개정법률안 제4조 제1항 제3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안전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도 명의인의 금융거래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거래 정보는 다양한 사회생활 영역에서 금전 거래 내역의 파악을 통해 개인의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의 상세한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이나 조회를 통해 특정 개인의

경제·사회 활동과 관계된 다른 사람의 민감한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일반적 개인정보에 비해서 그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되어 있는 반면, 국정감사나 기타 안건 심의는 사실상 모든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관여하거나 중복될 수도 있어 특정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의 요구가 과다해질 수 있고,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기타 안건 심의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 원칙,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원칙에 관한 규정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2000년대 들어 머신러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이 면접 및 채용, 형사재판, 난민심사, 범죄자의 재범가능성 판단 등과 같이 사람의 삶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편향과 차별, 인공지능 기반 영상 인식·합성 기술로 인한 감시 및 인격

침해, 인공지능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 국가, 단체 등에서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 다수의 국제기구, 국가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의 인권보호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이 2019년 4월 채택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촉진과 산업육성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기본적·개괄적 원칙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기준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 원칙,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4월 16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에도 기본적인 의료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은 진정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유치장에서 진통제만 제공받았다면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현재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자비로 치료받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경찰서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 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4월 23일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옥외 집회·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으로 신설되는 최고 소음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같은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의 일관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옥외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인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시간 이하 동안 큰 소음을 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특히 심야 시간 주거지역 등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개정안이 심야 시간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기준 신설, 국경일 등 기념행사 소음 기준 강화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다만 집회인들이 최고소음도에 의한 집회의 제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소음도 측정의 기준·간격 등 세부 사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 직접 규정하여 접근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이 소음 측정 및 필요한 조치 등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11월 5일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심야 옥외집회·시위 금지·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심야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 시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성이 명백히 저해될 우려가 현존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심야 옥외집회를 자유롭게 개최·참여하는 관행이 10년 이상 존재해 왔고, 옥외집회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및 거주자·왕래자의 평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심야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심야 시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주자·왕래자의 평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옥외집회와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예외 사유를 두어 그에 해당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이유로 작가 배제 관행 개선 의견표명

위원회는 5월 26일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가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동의를 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장 및 관련 피진정인들에게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015년 이른바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여성혐오에 대응한 ○○○○ 사이트가 생겨났고,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한 여성 성우가 ○○○○ 파생 사이트를 후원하는 사진을 올려 게임 이용자들의 성우 교체 요구가 쇄도했던 것을 계기로, 게임업계에서는 이른바 ‘○○사냥’이라는 사이버 괴롭힘 행위가 번져나갔다. 이들 게임 이용자들은 작가 개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관여한 게임이나 웹툰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게임회사 등에 해당

작가들의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페미니즘과 관련한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 의해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등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게임 이용자들의 퇴출 요구로 인해 일러스트 또는 웹툰 작품의 사용이 중단되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기업도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게임 이용자의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동조하지 않거나, 혐오표현 및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진정 회사들에 표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예술’의 범위를 ‘게임’ 분야까지 확장하여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에 대하여는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난독증 수험생 편의 미제공 의견표명

위원회는 6월 12일 교육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난독증 수험생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 마련을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고 단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대학입학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서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이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난독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세가 아니기에 학업적·사회적·직업적 영역에서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난독증을 갖고 있는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 조건을 부여한다면 난독증 수험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끝내기 어려워져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도 갖지 못할 수 있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

위원회는 난독증처럼 비록 등록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읽기 등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읽기 능력 등이 필요한 시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자. 재판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6월 26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교부하는 경우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견인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는 진정인은 2017년 12월 말 교통사고 가해 차량을 견인하다 차량 안에서 마약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2019년 9월경 해당 마약범죄의 피고인이 법원에서 교부받은 사건 기록에서 얻은 진정인의 연락처로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재판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을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판장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성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 보호조치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소송 절차상 파생적·부수적 사항으로 재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진정은 각하하기로 하였다.

다만, 각하 결정과 별개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제정하여 운용 중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측에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해 주는 경우 존속살해·축타살인·강간·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 신고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했거나 우려되는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매우 좁게 정하고 있어 증인·신고자·목격자·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들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차.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의견표명

위원회는 6월 30일 국회의장에게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물론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있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 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인류가 이미 7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듯이,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는 없으므로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평등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원회 또한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카.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7월 6일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27개 쟁점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제4차 최종견해(유엔 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령, 정책, 제도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 목적이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확인하고,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 등의 이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도전 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제4차 최종견해가 2015년에 채택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

보고서(안) 일부 내용 중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타. 거주시설 시설장의 장애인 탈시설 방해 행위 등에 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7월 7일 ○○○○○ ○○○○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의 기본 철학과 가치임에도 오랜 기간 시설 수용정책을 펼쳐온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장애인 탈시설 전략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시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진정사건에서 시설 이용인의 탈시설에 대한 시설장 및 직원들의 소극적 인식과 태도가 감지되고, ○○○○○ ○○○○ 사회복지재단이 다수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아 의견을 표명하였다.

파. 사건기록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7월 16일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기록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과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2014년 5월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기록을 보관하던 검찰이 증거 자료인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이 저장된 CD 원본을 파손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느 기관에서 파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불기소처분의 항고(일선 검찰청→고등검찰청), 재항고(고등검찰청→대검찰청), 재정신청(고등검찰청→고등법원), 즉시항고(고등법원→대법원) 과정에서 사건기록은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었으나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형사 사건기록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하급법원의 재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이므로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하여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8월 21일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최근 친권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친권자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아동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

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와 ‘훈육’의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915조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한다고 해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거.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8월 28일 법무부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표명을 하였다.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남용적 성격이 명백한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남용적 재신청’과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실제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어서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는 등 난민협약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난민심사제도에서 시급한 개선 사항은 재심기관인 난민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이며,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너. 경찰의 사건관계자 정신질환 정보 임의공개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9월 21일 경찰청장에게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경찰이 언론 브리핑 시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대중에게 임의로 공개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질환이 범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 고정 관념과 편견이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원회가 보도된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사 대상 사건 진행 상황 보고 시 경찰에 의한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여부가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어 개인의 민감 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더. 청와대의 수어통역 제공 필요 의견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을 맞아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 연설을 하였는데, 청와대는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공중파 방송 3사와 공익채널 KTV가 자체적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하였다. 이에 수어통역의 책임을 방송사에 전가한 탓에 농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9월 21일 이 진정을 판단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방송 화면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었기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도, 청와대의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연설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표명하였다.

국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 따라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제2항에 따라서 농민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정책을 안내하는 자리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특별연설을 함께 진행하였다면, 대통령의 연설은 그 자체로 농민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입원절차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방역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추가진단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신규 비자의입원 또는 기간연장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 전문의도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한시 허용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폐쇄병동, 9인 내지 10인의 다인실 병실 등 정신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예외 규정인데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적합성심사도 전화조사 및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계속입원심사 역시 자체 진단으로 진행되는 등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적법절차가 입법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신질환 고용차별 의견표명

위원회는 9월 21일 감사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소지가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감사 결과와 개선책을 권고할 때에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권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월 감사원장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90일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91명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한 것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13개 인권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차별이며,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고용 주체는 아니기에 위원회 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거나 의학적 견해 등의 합리적 근거를 갖기보다 사회적 편견에 기인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고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민간고용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버. 정신의료기관의 병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가 의료서비스에서 차별 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및 장비기준’을 개정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천 소재 특정 정신의료기관에서 넓이가 8.4m×4.3m 정도인 1개 병실에 정신질환자가 9~10명씩 입원하여 운동할 공간조차 없이 과밀하게 갇혀 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과밀수용은 피진정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정신의료기관의 공통적 사안으로 과밀한 입원병실 환경은 적절한 치료 환경이 될 수 없고,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0월 26일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대 단체의 집회 방해로 인해 성소수자 집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해 적법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쿼어문화축제 경비대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들은 2018년 9월 ○○광역시 ○○역 광장 일대에서 쿼어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경찰 측에 집회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 측이 반대 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조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당시 배치한 경찰 인력이 1,000명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소홀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이 반대 세력을 이격 조치하여 종국적으로 행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다만 성소수자 집회에 대한 반대 세력의 방해 행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같은 방해 행위가 향후에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정법률안 제33조 및 제34조와 같이 허위 언론보도 등을 한 언론사 등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언론 기사는 ‘사실의 적시’를 넘어 ‘의견’, ‘평가’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한 표현물 내에서 이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국제기구 등은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해 강제적 규제가 아닌 장기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행법의 목적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나 중재의 범위를 넘어 언론보도 등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언론사 등에 대한 시정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시정명령 후 해당 언론사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미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저. 체포적부심 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4일 경찰청장에게 체포된 피의자 등에게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일선 경찰관서에서 안내문 등을 직접 피의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비용 결제 문제로 주인과 다툼이 생겨 경찰에 의뢰하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된 후 체포적부심 청구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면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진정인의 요청을 받은 담당 경찰관이 청구서를 찾아보려 하였고, 관련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검찰청 당직실에 전화를 한 기록도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서를 제공하지 못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위원회는 기각 결정과 별개로 비록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는 피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장 경찰관들이 관련 절차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된 피의자로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청구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난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하고, 체류 기간,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다수의 진정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1회성 사업이고, 사업 취지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소득 감소에 대한 가계 보전 및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혜적 성격이 강하여 사업 시행 주체인 정부에 매우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 해당 진정은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재난 극복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에서 외국인의 지원 범위가 한층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할 난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의견을 표명하였다.

커.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준 아동성폭력사건 범죄자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출소 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을 일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수용이 필요하다고 본 법안 발의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양형의 적절성 보완, 형벌 집행에서의 교정 및 교화 기능의 보완, 범죄피해자 보호 방법의 실질적 강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보호수용과 같은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점, 대상자를 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박탈하면서 피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보호수용과 형벌이 병과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이중 평가 및 처벌이 이루어져 거듭 처벌이 된다는 점, 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기존 「보호수용법(안)」에서 7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보호수용기간 및 보호수용 집행유예기간의 상한을 제정안이 오히려 10년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한 2004년, 2014년, 2016년의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용법」의 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터. 아동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보호아동들의 동의를 받거나 CCTV 설치 등에 관하여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공동생활가정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공동생활가정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들은 공동생활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비행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으나,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설치하여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보호아동 등의 비위행위로부터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CCTV 활용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내 CCTV가 적법하게 설치 및 운영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하였다.

퍼. 북한선원 강제송환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한선원을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23일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요청 의사와 보호신청자 처리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북한선원 강제송환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각하하면서, 국내외의 비판과 피해자들의 보호 요청 의사 확인 과정과 추방 절차에 논란이 있으므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북으로 추방된 피해자들이 중대범죄 혐의자들이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비추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우려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고려할 때,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 의사와 보호신청자 처리에서 우리 정부에 확립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허. 코로나19 관련 가족휴가 제한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25일 국방부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휴가제한 조치로 인해 경조사 및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의 휴가 관련 재량 범위를 방역지침의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외조모상을 이유로 청원휴가 2일과 2일의 개인연가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인 연가 사용을 불허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당시 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상급 부대 지침의 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연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진정사건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수를 점하고 있는 휴가 제한 관련 진정 중에서도 단순 외출 목적이 아닌 불가피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특별 휴가 성격의 휴가 요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휴가 제한이 공익적 목적하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관례적인 경조사 휴가를 위해 이미 부대 밖으로 외출한 인원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가 사용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보았다.

고. 낙태죄 관련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30일 국회의장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낙태죄를 존치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형법」 등에 따라 낙태를 처벌하는 방식은 낙태를 감소시키기보다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의 낙태 비범죄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이 임신·출산 전(全) 과정에서 국가의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노.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3일 국회의장에게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 범위를 신설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활동 대상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중에서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개정법률안은 경찰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 정보활동에 의한 국민의 권리 제한의 근거 및 한계를 비로소 법률로 정하게 된 점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동안 경찰이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정보활동 중에서, 정책정보와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업무 범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그에 따른 법령에서 업무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도. 감염병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 차단 내지 집합 제한·금지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1조가 정하는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개정법률안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 내지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가 내려진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이나 재난사태 선포 등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상 상황을 이유로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회·시위로 인한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 장소, 인원, 방법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용 또는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류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적 보건 위기를 겪는 상황임은 명확하나, 이를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폭넓게 제약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한 집회·시위 금지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재난사태 선포는 성격상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재난이 직접 발생한 지역 외에 인근 지역까지 넓게 포함해 선포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인데, 개정법률안과 같이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그 이유, 성격, 규모 등을 불문하고 금지한다면 결국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로.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28일 국회의장에게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빈곤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3만 명에 달하고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고, 제1,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및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렵다.

이에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하고 있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개선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29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던 시기와 달리 최근에는 이들 공무원 채용이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기존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넘어서는 당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승진 적체로 인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관한 의견제출

위원회는 12월 28일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관하여 “사형 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꾸준히 밝혀왔다.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나, 2020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에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 보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으며 사형제도는 이미 범행이 종료되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인간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빼앗는 형태의 처벌이라는 점 등에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보았다.

또한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그 주된 정책목표인 범죄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사형은 다른 형벌과 달리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바, 사형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날짜	제목	요지
2월 5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성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퍼지면서 온라인에 중국인 또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에 대해 우려 표명.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 필요
2월 28일	농인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 보장을 위한 긴급 성명	각 방송사들이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뉴스 화면 송출 시 반드시 수어 통역사를 화면에 포함할 것을 촉구
3월 5일	카카오, 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 관련 성명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댓글 정책 개편(카카오), 인격권 존중 등을 위해 인물 연관검색어 폐지 등 정책(네이버)은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대응 의지를 밝힌 점에서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환영
3월 16일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논평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려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의 지적을 매우 뜻깊게 평가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성명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거나 다른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 필요
3월 2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성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선거로서 성숙한 선거 풍토를 정립해 나갈 적기. 정치인들이 '혐오표현 없는 국회의원 선거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기대
4월 9일	코로나19 위기, 우리 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정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 착용 방안 논의 관련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자가격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함
5월 7일	태아의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대법원이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통해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

날짜	제목	요지
5월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정부가 검진 과정에서 방역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언론이 진단 및 방역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5월 21일	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
6월 16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성명	충남도 의회에서 진행 중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조속히 제정 되길 바람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성명	정부 당국에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
9월 4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대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을 환영
9월 28일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성명	9월 24일 발생한 북한의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북한의 행위에 유감을 표명. 인간의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는 점에서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 소재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10월 29일	택배노동자 사망 관련 성명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하여 연속된 장시간 노동문제 개선과 법적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 촉구
11월 13일	전태일 사망 50주기 관련 성명	사회 변화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시켜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 지대가 발생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다양한 고용 형태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법·제도 마련 필요
12월 3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영 성명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
12월 30일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 존중을 위한 성명	정부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생계와 의료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사람들과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런 때일수록 인간의 존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필요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가.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가구방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조건 향상 및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치수리기사·가스 안전점검원·상수도계량기검침원·재가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다문화가족방문 교육지도사·통합사례관리사 총 7개 직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가구방문 노동자는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주로 혼자서 고객과 대면하여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 간접고용·특수고용·기간제·단시간노동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 시장화된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로 인해 과도한 감정노동, 신체적 폭력, 성희롱,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등에 노출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가구방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권·건강권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노동조건 개선은 노사 간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판결)임에도,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이에 위원회는 노조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비롯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고소 등으로 출발 단계에서부터 무력화하는 등 단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조 설립이나 산업별 노조의 가입 등 단결권 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간접고용 및 플랫폼노동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 사회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랜 기간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만 빈곤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심각한 노후 빈곤을 겪고 있다. 한국 노인은 대개 50세를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 퇴직한 후 20여 년 동안 주변부 노동시장에 잔류하면서 구직과 실업을 반복하다 70세를 넘겨서야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은퇴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 은퇴 연령이나 건강수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매우 짧고,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노인이 많으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근로를 원한다기보다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현재 노인세대와 비자발적 조기 퇴직 후 임시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잠재적 근로자 등 노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5~11월)하였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노인의 노동시장 진입 이유를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하는 노인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 실태를 규명하는 등 한국 사회 노인의 빈곤한 현실과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열악한 노동 실태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라. 장병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의료체계 실태조사

2013년 위원회가 실시한 <군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진정사건 등을 통한 개선 권고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여러 개선 움직임이 있어 왔으나, 군내 의료와 관련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여전히 민간 의료기관과의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장병의 변화된 의식수준, 인권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실태조사 연구팀(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요자 중심의 군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선행연구와 현재 법·제도 현황 및 한계, 민간 부문 제도 등을 분석했으며, 국내외 현황 및 사례 파악과 군 의료체계 이용 장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노동환경별로 청소년이 직면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 526명 및 업무담당자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만 13~15세 청소년을 일반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특성화고 실습생 등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청소년의 노동 상황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규약 및 유럽연합,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국내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 설문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연기자(82명), 아동·청소년(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하여 아이돌 연습생 및 연기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중문화산업 확대에 따라 해당 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아동·청소년이 처한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의 장시간 촬영 강행, 부당한 계약관계 등 방송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 실태조사

위원회는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 특수교육보조원, 발달장애학생의 가족(주양육자) 등 707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와 함께 28명에 대한 포커스그룹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장애의 기질적 특성 등 개인 차원에서 찾고

있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다. 도전적 행동은 개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환경 측면에서 도전적 행동 대응 전담 부서와 인력을 학교 내에 마련하며 교직원 대상 상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특수교육법에 행동 중재계획 의무화 명시, 신체적 개입에 대한 기준 및 시행 체계 마련, 교육부 내 총괄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가 인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환경의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문제에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위원회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특수기능별로 총 9개의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 포함하여 총 54개 구금시설에 1,500명이 넘는 장애인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는데, 장애 유형과 특징, 그리고 정도별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진은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의 수를 늘리고 이 시설에 먼저 편의시설과 인력 충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지체·뇌병변 등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심장 등 내부 장애인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러한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러한 방안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과 규칙/지침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자.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 실태조사

위원회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이용 실태 및 이용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법상의 정신장애인 인권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신재활시설의 발전 방향 및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거, 소득, 재활 및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신재활시설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이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분석 대상 229개 중 105개로 45.9%에 달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정신재활시설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치료 및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장지향 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인권기준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방향 및 서비스 구성이 재활치료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장과 회복 지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이용 실태와 인권 실태에 대한 설문은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신건강 문제 발현과 치료 시점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의 마련, 재활시설 탈원 후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강화 지원,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서비스 영역의 우선순위 및 서비스의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를 확인하여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과 주거, 건강, 사회참여, 고용 및 직업, 교육 지원과 서비스 등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이 정책과제로 제언되었다.

차. 경찰 수사권 민주적 통제 방안 연구

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와 국민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은 현행 국내 제도 연구, 관련 해외 제도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통제 방식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용역은 수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 확대, 경찰민원에 대한 항고를 담당할 경찰인권보호관 도입, 경찰 인권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모니터링 사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카. 국제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위원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은 우선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평의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 변화를 살피고, 이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신기술과 개인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그 결과로 개정된 일명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타. 유엔 메커니즘과 SDGs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연구

북한은 5개의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엔 회의에 참여하고, 유엔전략계획(2017~2022)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적용을 시도하는바,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최종견해와 후속 조치 분석, 관련 법제 분석, UPR·SDGs에 대한 유엔 문서 및 우수 사례 검토, 국내 대북정책 및 인권 관련 정책 전문가 면접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과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향후 위원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시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파.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경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1,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89개 기관으로부터 유효응답을 분석하였고, 인권경영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문헌 연구,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 인권침해 판단기준 연구

위원회 설립 이후 축적되어 온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근래 들어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인권문제를 판단할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연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33개 유형별 심사 단계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특히 판단 시 어려움을 겪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결정 사례를 검토하고, 유사한 분야에서 인용과 기각이 된 사례를 비교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헌법」 및 국내법령,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등 국내외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을 검토하고,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조사 및 판단 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 수준과 관련하여 권고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검토하여 구제조치의 유형과 수준을 분석하고, 해당 구제조치 수준의 적정성과 더 나은 구제조치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위원회 권고의 합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는 건강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의료보장에서 차별 받고 있는 이주민 실태를 조사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이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이주민의 의료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제도와 정책 등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는 첫째, 의료보장제도를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위기 상황의 의료비지원제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제도로 구분해 이주민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차별의 내용을 검토했고, 비정규체류 이주민에게 의료안전망을 제공해 온 민간 부문의 의료지원 활동도 포함하였다. 둘째,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이용해 의료보장 적용률, 건강보험 직역별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주민의 정주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적 방향 전환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체류관리제도와 이주민의 체류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보장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보장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1,060건의 유효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와 사례조사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 지원단체 활동가, 이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의료보장제도가 특히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법·제도와 정책이 실현되는 방식과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보장 확대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위원회는 정서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주요 사례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상황을 검토하여 정서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적 학대와 아동방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사회복지적,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구체적인 행동연구에 대해 문헌 및 판례 등을 분석하여 행동범주에 대한 하위행동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행동범주 및

하위행동에 관해 다양한 전문가 패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적 아동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더. 정신장애인 인권 법령 및 정책개선 과제 연구

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취지를 계승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장애인 인권 법령 및 정책개선 과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신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구현,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인식 조성, 정신장애인의 존엄, 자율과 평등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존중·보장·실현, 국제 기준을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환경과 법·제도의 마련, 정신장애인의 자립적·사회적 삶의 보장, 사람의 생애와 위기에 대응한 정신건강 문제의 국가적 전략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제안 사항은 향후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러.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방안 연구

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중 여성이 10.5%에 머무는 등 지역구 후보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현실에 주목하고 국내 정치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한계, 정당의 조직문화, 공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정치적 대표성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정치 관심과 참여’, ‘정치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21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공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하는 한편, 20~30대 남녀 페미니스트 16명을 대상으로 ‘정치대표성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 효능감, 정치 출마 의사 등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과반이 찬성한 것에 비해 남성은 30%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였다.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여성할당제’보다 ‘성별할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해 정당 차원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강제력을 가진 법·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성 균형 확보, 할당제의 법적 이행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머.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위원회는 4월 차별시정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전반을 짚어보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에서 발생한 혐오와 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91.1%)이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코로나19가 국민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은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93.3%),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73.6%),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92.1%)하다는 인식에도 상당수 동의하여 다른 사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82.0%)하고, 차별을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면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91.5%), △학교에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90.5%),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88.5%), △정치인·언론·온라인미디어의 차별·혐오표현 규제(87.4%),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7.2%),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86.5%), △차별 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80.8%) 순으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6월 23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과 공유하는 한편,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향후 차별 관련 교육, 정책, 홍보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버.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위원회는 성희롱에 대한 연령별, 성별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국민의식을 살펴 보고, 집단별 간극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현행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성희롱 예방교육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개선점 및 대상별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민의식 조사는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국민 1만 397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개념 인식’, ‘성평등 의식’ 등을 내용으로 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성희롱에 대한 법적 개념과 국민의식 간 괴리는 성별, 연령별, 혼인 여부 및 소속 조직의 남녀 성비 등의 요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30대 비혼 여성이 다수인 조직에 소속된 여성일수록 성차별부터 성폭력까지 모든 유형을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 기혼으로 여성이 없거나 소수인 조직에 소속된 남성일수록 성차별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50대 이상 기혼인 남성 상사와 20~30대 비혼 여성 부하 간 관계에서 각각의 인식 차이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갈등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성희롱 예방과 규제를 위한 맞춤형 개입전략 마련 및 성희롱 관련 정책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 인권증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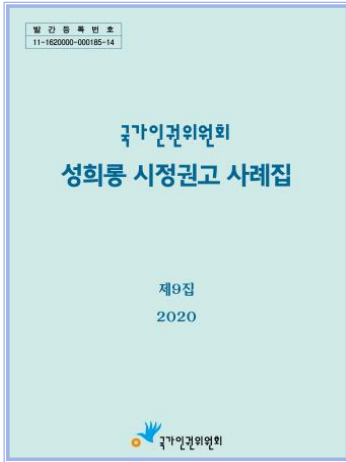
가.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성평등포럼 개최

위원회는 다양한 젠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성평등포럼을 개최하였다. 2020년 2월 10일에 개최된 성평등포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 정의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젠더법학자, 여성노동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현행 ‘성희롱’ 규정이 성적 언동에 치중하여 고용상 차별이자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라는 관점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2차 피해에 대한 개념 규정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을 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9집>을 발간하였다.

성희롱이 법제화되어 규제 대상이 된 지 20년이 경과한 지금도 성희롱 사건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발간한 사례집은 성희롱 사건 조사 및 판단 과정이 잘 드러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성희롱 사안 조사 실무에 참고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성희롱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및 성희롱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 아동인권 모니터링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아동인권 영역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당사자 모니터링 및 정책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정책 모니터링은 전문가를 위촉하여 아동인권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인권 정책 및 제도의 국제인권기준 이행 정도를 검토하였다. 특히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아동의견표명권이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리 영역별 아동 의견 진술권의 실현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둘째, 현장 모니터링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이 아동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어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아동을 만나는 돌봄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관 운영 현황과 아동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당사자 모니터링은 전국 14개 권역에서 아동 122명, 코디네이터 및 실무자 26명이 참여하여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를 주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파악하고, 당사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취약한 아동인권 분야에 대해 점검하였다.

넷째, 정책연구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청소년의 노동 상황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 아동인권 보고대회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위원회는 11월 23일에서 25일까지 3일간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8개 세션을 통해 진행된 아동인권 보고 대회는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인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 진행되었다.

첫날인 23일에는 개회식,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라는 주제로

당사자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현장모니터링사업의 결과로 코로나 상황

에서의 아동 돌봄, 주요 현안인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보호·강화를 위한 공공 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24일에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등 2020년 실시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정책모니터링사업의 결과로 ‘아동의 의견표명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구자와 당사자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마지막 25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아동인권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기된 아동 돌봄·학대·교육·건강 등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에 대응할 수 있을지 향후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요 참석자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참여하고,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이를 시청하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대중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아동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었다.

다. 노인인권 증진

■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위원회는 12월 7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엔 경제사회국(DESA)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주(駐)유엔 아르헨티나 대표부 후원으로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콘퍼런스에서는 제11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준비 현황 및 정부 간 논의사항, 평생교육 및 사회보장·사회안전(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안전권 보장) 관련 규범 요소, 그리고 제11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주제인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권’, ‘사법 접근권’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유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기구, 정부 기관, 학계 연구자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10여 명이 참가하였다.

최영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이 더욱 취약하므로 노인인권 보호가 중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노인인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 연대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강화라는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의 임무 수행이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고 밝히면서,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와 지자체에 노인인권에 대한 권고, 기술지침 제공,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노력, 관련 진정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인권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프레디 카리온 인트리아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노인은 돌봄의 수동적인 수혜 대상이자 경제와 복지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세션에서는 노인의 평생교육과 역량 강화,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 관련 규범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라. 장애인 인권 증진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규정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12월 2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4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에 ‘정신

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가 제5호로 포함되었고, “다만 전문가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날 강상경 서울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규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념과 동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의료와 복지 그리고 인권이 중시되고 당사자의 욕구와 실현이 중시되는 정신건강서비스 동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자로는 제철용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정하 장애와인권파도손 대표가 참여하여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했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일치된 견해를 발표하였다.

■ 장애인 탈시설 등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광주광역시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장애인인권단체 및 인권옹호기관과 더불어 <장애인 탈시설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광주광역시(10. 6.), 부산광역시(10. 27.), 강원도 춘천시(10. 29.), 경북 경주시

(11. 13.) 4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된 토론회는 지역별 현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평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활동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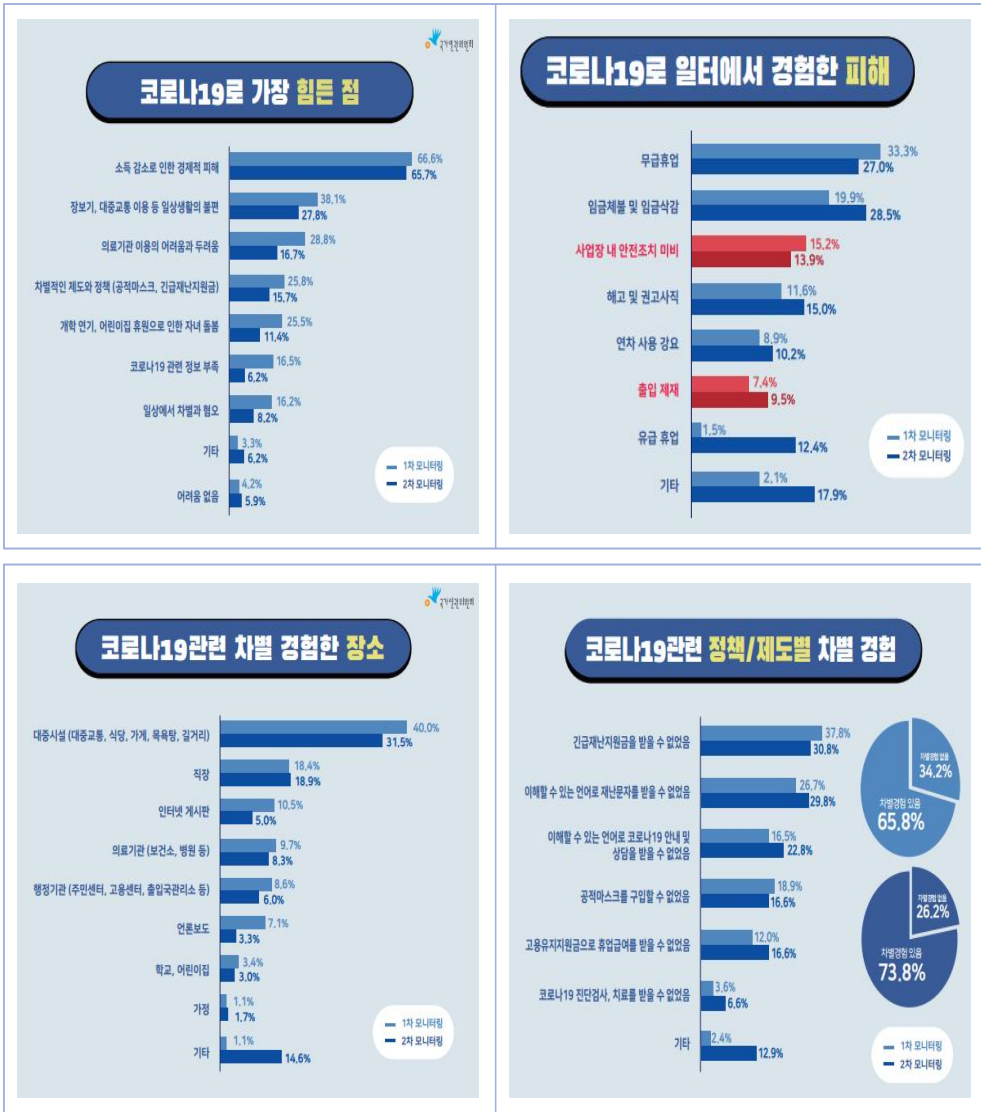
마.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사업 추진

재난 상황은 피해의 예측 불가성과 광범위성, 그리고 그 대응의 긴급성에서 사회적 위험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특히 이주민은 언어와 문화 장벽, 비용, 정보 부족, 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를 포함하여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한 계층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이주민을 배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정책,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도 없이 무급휴업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일터에서의 차별, 의료시설 접근과 아동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 결여, 일상에서 심화되는 혐오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언어별 설문조사와 응답 통번역이 용이한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를 통해 2020년 5~6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2020년 7~8월 2차 모니터링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현장 모니터링 사업 추진**

위원회는 언론보도에서 어업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인권실태가 부각됨에 따라, 국내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 양식어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7월 현장

모니터링을 2회 실시하였다.

1차 모니터링은 서해안 섬을 직접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국적의 이주노동자 63명에게 노동조건, 임금 지급 방식과 임금체불, 산재 여부와 건강보험 문제, 통장·신분증 미소지,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출도 제한 등에 대해 심층면접과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거환경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0시간, 휴식시간은 0.7시간이었으며, 한 달 평균 휴일은 0.1일로 월평균 노동시간은 359.9시간이었다. 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응답이 90.5%로,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와서 배가 안 떠도 육상에서 그물 손질 등 다른 일을 한다고 답하였다. 섬에서 병원까지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보건소를 가거나 약을 먹는 것으로 버텼다. 선주가 여권·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6건이었고, 임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선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23건이나 되었다.

2차 모니터링은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머물고 있던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을 방문하여 베트남 선원 52명을 대상으로 승선 기간, 취업을 위한 수수료와 보증금, 임금체불,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인권 침해, 상륙 시 외출금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출항 후 다시 입항하기까지 항해한 평균 기간은 10.2개월로, 최장 24개월까지 한 번에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배에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송출업체에 수수료·보증금 등을 내고, 대다수 선원이 월급이 유보된 경험이 있었고 유보 기간은 3개월 정도였다.

■ 이주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미등록 이주 아동이 체류자격을 얻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누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웹툰 및 단행본을 제작하였다.

웹툰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 등 국내 인종차별 및 다양한 차별 주제에 대한 만화를 연재한 고예성 작가와 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례를 재구성하여 총 3편을 제작하였고, 위원회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통해 게시하고 홍보하였다.

단행본은 에세이집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등의 저자 은유 작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인터뷰하여 초고를 완성하였으며, 2021년 대중도서로 출판될 예정이다.

■ 공항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위원회는 11월 15일 공항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2016년,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공항난민’⁹⁾의 인권상황을 검토하여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2016년 당시에는 공항난민의 ‘송환대기실 수용’이 주된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공항 터미널 장기 체류’가 인권문제가 되고 있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5~10월까지 시민단체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공항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공항난민’이던 외국인들에 대한 인터뷰, 담당 공무원, 공항공사, 항공사운영협의회,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난민인권 단체, 의료단체, 아동단체, 긴급구호단체 관련자 인터뷰 등을 인권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9) ‘공항난민’이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에 불회부되어,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 기간에 공항(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뜻함.

보고회는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 공항 구금 상황 및 송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의 권리구제절차 과정에서의 난민에 대한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난민인정자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12월 11일 난민인정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난민인정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난민신청 및 면접심사 과정 및 국내 체류 중에 겪는 고충, 난민인정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난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바. 군 인권 증진

■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진정 방법 안내 등 홍보물 제작·활용

위원회는 군 장병의 상담 및 진정 방법과 위원회의 장병인권 보장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광고 영상과 지하철 내 안내 문구, 진정 안내 포스터 등을 제작해 장병들이 다수 이용하는 KTX 역사와 지하철 역사, 군부대 등에 배포·상영하였다.

아울러 2001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위원회가 배포한 군 인권 분야 보도 자료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 사례 판단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보포스터

홍보영상 중 일부

■ 군인권포럼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군 인권 관련 정책·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군 인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군인권포럼을 구성하였다. 군인권포럼은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등 필요 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회의보다는 서면 회의 및 자문 의견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사. 노동자 인권보호

■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2019년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월 15일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플랫폼노동’이란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형태이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앱을 통해 일감을 구하며 간헐적 1회성 일감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 이는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고용을 대체하면서 확산 추세에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64%가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약 152만 원, 주 평균 노무제공일은 5.2일, 하루 평균 노무 제공시간은 8.22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결코 짧지 않았다. 그런데 일감이 불규칙하고 초단기적이어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 특히 응답자 중 기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으로,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와 이들의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인권 증진 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회는 9월 23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석하여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 개선, 통합 관리·운영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택배노동자 노동인권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를 통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연속적인 장시간 근무로 인한 택배노동자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는 10월 27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택배노동자의 처우 및 근무조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11월 10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위원회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인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명확화, 적정 수수료 개선, 노동조건을 집단적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권 보장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위원회는 12월 1일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고 하청노동자 등 관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다. 또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22개 권고안에 대하여 2019년 12월 12일 당·정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필수공공재인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 없는 운영과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발전회사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아.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 법무부와 업무협약식 개최

위원회는 기업과 인권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역량을 공유하고 인권경영 정책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5월 26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업무협약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 주최, 정책 정보 공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법령·정책 개선 연구, 인권 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2020년 상반기 인권경영포럼 자료집 발간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상반기 인권경영포럼을 자료집 발간으로 대체하였다.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초발제문과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경영 평가기준 제안서, 한국공항공사 사회적가치기획팀 등의 인권영향평가(안) 등이 수록되었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여 인권경영 실무가 개선되도록 조력하였다.

■ 2020년 하반기 인권경영포럼

위원회는 12월 4일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법무부와 〈기업과 인권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된 포럼에는 국내외에서 300여 명의 기업 담당자, 학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인 수리야 데바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션2에서는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양한 국내외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인권영향평가 개선안 및 입법례에 대한 실시간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자. 정보인권 증진

■ 정보인권포럼 구성 및 개최

위원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인권 관련 새로운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 자문기구인 정보인권포럼을 구성하였다. 정보인권포럼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2020년 총 3회 개최하였다. 제1차와 제2차 포럼은 ‘코로나19와 정보인권’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제3차 포럼의 경우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모색’을 주제로 공개 포럼으로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에도 정보인권포럼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정보인권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보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차. 북한인권 증진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위원회는 11월 26일 서울에서 ‘코로나 19 시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을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안에 대한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코로나 19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대화 및 기술협력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변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 북한인권포럼 개최

위원회는 북한인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북한인권포럼을 구성하고 세 차례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북한의 사회권 관련 최근 보고서(<권리의 대가>)’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중간점검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11월 18일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기 UPR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포함하는 「형법」 제297조 개정 필요, 이주민이 아동수당 및 건강보험 등에서 법률상 배제되는 문제 개선,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필요,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사법행정 서비스 제공 개선, 농어촌 거주 이주여성 성폭력 노출 문제 해결 방안 필요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상황 중간점검 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11월 24일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상황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견해 채택(2017년) 이후 관련 정부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권고항목 27)과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권고항목 69)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4차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도모하였다.

■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콘퍼런스(입법부를 중심으로)

위원회는 12월 18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인권학회 등 5개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콘퍼런스에서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권고 이행 절차 등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해외 사례(영국, 호주 등 10개국)를 소개하였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제인권기준 활용(입법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기준 심사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타. 기타

■ 국가인권통계 구축 사업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여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인권통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국가승인통계와 행정자료에서 인권 관련 통계를 발굴하였다. 기존 승인(행정) 통계에서 발굴할 수 없는 주관적 인권 경험·인식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실태조사>는 19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인권인식,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등 인권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한다.

2019년 총 448개(발굴통계 381개, 조사통계 67개) 국가인권통계를 발굴한 이후, 2020년에는 총 460개(발굴통계 409개, 조사통계 51개) 국가인권통계를 발굴하였다. 2019~2020년도에 걸쳐 구축된 국가인권통계는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인권지표(지수)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4절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가. 개요

1) 추진 배경

유엔이 혐오표현 대응전략(2019)을 마련하여 각국 정부의 혐오표현 대응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이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위원회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의 특별사업으로 혐오표현 확산에 대응하였고, 2019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신설하여 공론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2) 목적

위원회는 2019년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전반을 짚어보고 이론적 기반을 갖추면서 국내외 협력을 통해 혐오표현 대응의 외연을 확대하는 등 혐오표현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혐오표현 대응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① 자율규제 확산 ② 공론화 및 사회 분위기 조성 ③ 공공영역 대응 강화 등 3개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주요 활동

■ 혐오표현 자율규범 마련 및 실천 확대

혐오표현 자율규범 마련, 혐오표현 근절 선언은 혐오표현에 맞서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공동체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행동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율규제의 효과가 크다. 위원회는 2019년에 이어 각 영역에서 혐오표현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협의와 지원을 강화하였다.

1월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9개 언론·미디어 단체와 공동으로 ‘혐오표현 추방 실천선언’을 하였다. 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앞장서야 할 언론과 미디어가 오히려 편견을 조장하고 혐오표현을 확산하며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대응한 것이다. 선언문에는 혐오표현 재생산에 대한 언론·미디어 종사자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어떠한 혐오표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7개 항목의 실천 과제를 담았다.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2020.1.16.)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평등 실천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학교가 처한 문제 상황과 현실에 따라 자가진단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혐오표현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서와 해설서를 제작해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배급하였다. 교육청도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생활규정에 혐오표현 대응 반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강화

온라인에서 작성·유통되는 악성 댓글은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
이므로,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2019년 10월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참고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에 적극적
으로 나설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플랫폼에 요청하였다.

카카오는 2월 혐오와 차별 댓글 삭제 등 자체 심의규정을 강화했고, 네이버는
3월부터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악성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네이트는 7월부터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를 발표하는 등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

위원회는 3월 성명을 발표하여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 노력을 지지하였다. 이후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자율대응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는 2021년
1월 혐오표현 자율대응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규제 동참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혐오표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혐오표현으로 나타
나기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월 5일 특별성명을 내고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자고 호소하였다. 특히 지난 5월
집단감염 보도과정에서 언론이 동성애를 부각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조장할 때 긴급성명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특수한 취약성을 감안하여 진단
및 방역과 관련 없는 정보 공개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언론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감염병 공포로 촉발된 혐오를 인류애와 연대, 존중과 응원을 통한 극복 등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인권 존중의 국제 연대를 구축하는 글로벌 캠페인 ‘hope ON, hate OFF’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코로나19와 혐오 대처’를 주제로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하고, 웹 포스터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hope ON, hate OFF 캠페인

코로나19가 남긴 혐오와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에 노출된 혐오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한 공포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항표현과 정부·언론의 입장표명, 캠페인 등을 통해 혐오를 표출하기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년 초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대 입학,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의 강제 전역 등 트랜스젠더 이슈가 부각되면서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성소수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가장 열악하며,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생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차별과 혐오,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트랜스젠더가 당면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공공영역의 혐오표현 대응 강화

정부가 혐오표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혐오표현 발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7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표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제시하는 ‘혐오차별 반대 범정부 선언’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이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혐오표현 자율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제5절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가. 추진 배경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차별을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필요하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2015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2009년, 2017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년, 2018년), 인권이사회 인권상황 정기검토(2008년, 2012년, 2017년)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2020년 6월 30일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는바, 평등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인권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 확산, 이로 인한 차별 구조화와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2020년 4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도 언젠가 차별을 받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0명 중 7명이 차별 문제를 “이대로 두면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바, 위원회는 평등 원칙의 입법을 요청하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도모하며, 차별금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주요 활동

■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마련 및 국회에 의견표명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쟁점검토팀을 구성·운영하여 2006년 7월 정부에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을 기초로 그간의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반영하는 등 평등법 초안을 마련(2020. 1.~5.)하였다. 이후 법안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2020. 4.~5.)을 거치고, 국회에 대하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국회가 입법 추진 시 참조하도록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을 제시하였다.(2020. 6. 3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에서는 차별 개념(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 차별 사유, 차별 영역 및 차별 예외 등 차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시안에서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혐오표현이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 공고히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차별 영역에서의 괴롭힘을 차별 개념에 포섭하였다.

또한 시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시정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배제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할 경우 비차별 및 소수자 보호 원칙을

견지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각 차별 영역에서 규율되는 차별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권위의 시정 권고 및 소송 지원, 법원의 차별시정 명령 및 손해배상 등 차별 피해의 구제 실효성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규정하였다.

■ 종교계 및 법조계 등 각계 의견 수렴

위원회는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평등법 제정 의견 표명 배경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평등법 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다양한 종교계의 종교지도자 면담 및 법조계 등 각계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개신교계 원로간담회 등을 통하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신교계의 우려 및 오해를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입법 환경 조성 공론화

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6개 권역 지역설명회(7월), 인권옹호자 회의(8월), 혐오차별 국제콘퍼런스(9월), 주한 외국대사관 초청 콘퍼런스(9월/10월), 인권도시포럼 ‘차별금지’ 세션(10월) 등을 운영하고, 평등법 Q&A 자료 제작, 언론 인터뷰, 유튜브 및 버스 광고, 영상 제작 등 평등법 제정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힘썼다.

제6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가. 개요

1) 추진 배경

2019년 1월 빙상계를 통해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이는 형식적 개선이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끌어내었다. 이에 2019년 2월, 위원회는 관계 주요 부처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가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게 되었다.

특별조사단은 2019~2020년 각급 학생선수 및 일부 종목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 주요 분야 실태조사,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을 통해 스포츠인권 분야의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은 물론 피해 당사자 등의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에 노력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 각 기관, 다양한 단위의 체육 단체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시책이 단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단 활동을 2022년 2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2) 목적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별 피해 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주요 활동

■ 운동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권고

특별조사단에서는 2019년 스포츠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초·중·고교 학생선수, 직장 운동선수, 유도 선수들의 인권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먼저 2019년 초·중·고 학생선수 전수조사를 토대로 2020년 6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교육청, ○○체육회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19년 실업팀 직장운동선수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선수 인권보호 시책 및 이행방안 마련,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 수립, △근로계약의 관리·감독 강화 및 표준계약서 마련, △통제된 합숙소의 폐지 및 선수 복지 차원의 숙소 운영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2019년 유도선수 인권상황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센터, ○○○○회에 유도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종목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훈련 중 실신 등 부적절한 훈련 관행 개선을 위한 훈련지침 마련을 권고하였다.

■ 주요 10개 종목에 대한 심층 현장조사

2019년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층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체조·근대5종·유도·태권도·수영·테니스·야구·농구·축구·자전거 등 10개 종목에 대해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체육회 관계자, 운영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양적 분석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인권 취약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 등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등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 여성 전문체육인, 해외 스포츠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2020년, 학생선수부터 지도자까지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 중심적 스포츠문화로부터 배제된 여성 스포츠인 인권 관련 논의를 확장하고, 스포츠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성 스포츠인들이 처한 유리천장을 깨고, 더욱 활발한 참여와 인권증진, 성평등 및 젠더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개선 대책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 해외 선진제도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스포츠분야 해외 선진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스포츠 선진국들의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예방 시스템과 조사·구제·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시사점을 통해 한국 스포츠계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 주요 스포츠대회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가 대부분 취소되는 가운데 일부 대회조차 비대면을 원칙으로 개최됨에 따라 외부 감시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에 수영(제16회 꿈나무 수영대회), 야구(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테니스(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체조(제75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 등 4개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안전·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 등에 대해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특조단은 현장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점검목록(check list)을 고도화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스포츠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현장 상황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인권침해와 권위적 문화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이해당사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스포츠 분야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19년과 마찬가지로 전화·메일·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전용 신고 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선수들의 운동시간 등 훈련 일정에 따라 야간시간(18~24시)의 상담 및 신고가 용이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24시까지 업무를 연장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에 대한 구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110건의 개별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조치 권고 19건, 조사중해결 3건, 합의종결 1건 등을 포함하여 99건을 종결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염려를 불식하는 가운데 축적되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23%로 높은 구제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주요 권고 내용은 △학교운동부 감독 및 코치의 선수 체벌 등에 대한 구제 권고, △학교운동부 코치의 선수에 대한 폭언 징계 권고, △대학교수의 수업 중 장애인 비하 발언 징계 권고,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 미흡 제도개선 권고,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 비하 발언 등 징계 권고, △학교폭력 사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 권고,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구제조치 권고, △장애인 체육단체 중간 관리자의 농인 직원에 대한 차별 징계 권고, △초등학교 운동지도자에 의한 인권

침해 징계 권고, △초등학교 운동지도자의 학생 성추행 방조 및 폭행 등 구제 조치 권고, △전문체육고등학교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징계 권고,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언, 과도한 훈련 등에 의한 선수 인권침해, △체육 지도자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학교의 조치 미흡,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제도개선 권고, △대학교 학생선수 간 성폭력 고발 등이다.

또한 원거리 통학 중인 학생선수들이 기숙사 폐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숙사 운영을 허용하거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 교육청에 표명하였고, 혹서기에 야외에서 대회가 개최될 경우 초등학생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초등학생 선수들의 건강을 고려한 시기에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개최가 불가피하다면 혹서기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라는 의견을 종목 단체 및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의 사망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선수의 부상 예방·관리·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직권조사를 통한 정책개선 권고

위원회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은폐·지속 원인을 파악하고자 2019년 실시한 직권조사를 통해 스포츠계 전반의 관련 사례와 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상응할 인권보호 체계를 검토하였고, 체육 현장의 인권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7월 6일 대통령에게 체육계의 다른 비리 사건들과는 구별하여 폭력·성폭력 사안의 전문적인 조사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권고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회장, ○○○○○체육회장에게 체육계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향후에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와 지도자들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어렵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체육계 인권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 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 징계와 이력 관리가 보다 엄정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회와 ○○○○○체육회도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밝혔다.

또한 2019년 실태조사 결과와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학생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통상 폭력(신체, 언어 등)의 범주에는 포함 되지 않지만,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는 문화 및 관습으로 작용하는 경험이 다수 발견되어 이러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운동부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주요 대학(9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 사용 제한, 과도한 외박·외출 제한, 언어 통제, 과도한 심부름 부과, 두발 제한, 과도한 일상 통제 등과 같은 통제 행위는 운동부 내 규율이나 전통으로 강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폭력(기합, 욕설 등)이 동반되는 등 단순한 통제가 아닌 ‘폭력적 통제’로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악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폭력적 통제는 주요 대학 운동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폭력적 통제가 단순히 통제 행위자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는 규율이나 전통으로 내면화하도록 만든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가 원인이라고 분석 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관계기관에 합숙소 등에서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조치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스포츠계 및 일반 국민 대상 스포츠인권 홍보활동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홍보 및 행사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웹툰 캐릭터와 구체적인 스포츠인권 침해 긍정·부정 사례를 활용하여 신고 및 접수 방법을 포함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체육 관련 단체 등 3,500여 곳에 배포하였다.



홍보 포스터

상징물

스포츠인권 2차 캠페인은 樂(즐거울 락)과 SPORT(스포츠)를 융합, 인권이 먼저인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의 본래 목적인 즐거움을 지켜가자는 의미의 ‘#인권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엠블럼 제작과 활용을 통해 캠페인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높였다.

또 운동하는 과정의 즐거움 및 보람을 부각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영상 ‘#인권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스포츠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스포츠인권 현장 vs 현장’ 영상,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스포츠인권선서 시즌2’를 SNS 중심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운동경기가 열리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캠페인(11.8 FA컵 전북 vs 울산, 전주/ 11. 17. KBO 한국시리즈, 고척돔)도 진행하여 선수·지도자 등의 동참(19~20년 누적 약 6,000명)을 이끌어 냈다.

또한 스포츠인권명예대사인 류현진 선수가 위원회에 방문하여 ‘스포츠인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를 ‘랜선 인터뷰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스포츠인권 이슈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 자문을 위해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 1기는 2019년 2월 25일 ~ 2020년 2월 24일 운영하였으며, 2기는 2020년 2월 25일 ~ 2021년 2월 24일 운영한다. 이 기간에 총 11차례의 정기회의와 사안에 따른 전문 분야별 자문을 통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의사결정에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위원(5명), 전문법률상담위원(11명)으로 상담진을 구성하여 개별 피해 호소에 대응하여 심리 회복 및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 스포츠인권 인식개선 활동 등

학생선수들의 스포츠 분야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2개 체육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캠프’를 2020년 11월 26일과 12월 10일에 개최하여 스포츠 분야 인권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스포츠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 △장애인 스포츠를 응원하는 방법, △스포츠 성폭력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스포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스포츠가 더 사소해지면 좋겠다, △스포츠에서 차별이 보일 때, △학생선수들이 행복한 스포츠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왜 민족주의 스포츠가 되었나 등 8개의 강연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하여 대국민 스포츠인권 의식 확산에 노력하였다.

‘다시 시작!’ 이라는아울러 학생선수 등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스포츠 인권, 리스펙트에서 주제로 동영상 6편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하여 운동선수들이 겪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모색, 스포츠인권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제7절 평가

2020년 위원회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노동인권 현안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 증진 등 노동권 관련 정책권고를 하였다.

또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및 돌봄 문제 등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사 절차·관행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을 검토하였고, 기업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인권경영 실천 기업 지원, 국제기준 국내 도입 등과 관련한 인권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권경영포럼 개최 및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성명 발표 등 코로나19 관련 현안 대응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선 권고, 「인공지능산업진흥법」 관련 의견표명 등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인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속에서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11월 26일, 서울)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을 통하여 북한에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기

보다는 상호 호혜적으로 기술, 지식, 경험을 교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위원장 논평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여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 소재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인권 현안에 적시 대응하였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유엔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상황 중간점검 및 유엔자유권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 대응 등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입법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20년은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 기반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가 2019년에 비해 21건 증가하였다.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개별 권리구제에 집중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 등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의미 있는 권고를 이끌어냈다.

주요 정책 권고로 △학생상담시스템 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장기결석 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교육전문 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 배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아동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가 있다.

의견표명으로는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재판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북한선원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 중인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대체 급식 제공 관련 의견표명, △코로나19 상황 통제에 따른 장병 경조사 청원휴가 불허 관련 의견표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연설 시 수어 통역사 미배치 관련 의견표명, △혼인 시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 관련 의견표명, △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경찰의 사건관계자 정신질환 정보 임의공개에 대한 의견표명,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등이 있다.

이주인권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이주민·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며, 우리 사회에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인식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아동인권 분야에서는 연이어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코로나19로 초래된 아동인권 문제 등이 위원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하였다.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 사례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현황, 사전 예방 절차 및 사후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여 정책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 제915조 삭제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아동 돌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군 인권 분야에서는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군 구급시설의 기능, 시설 및 환경 등을 점검하여 군 영창 폐지 이후의 군 구급시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권고하는 등 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이외에도 2020년 총 7건의 방문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조사가 지연되었으나,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1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에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책과제의 발굴 및 확장을 지속 추진하였다. 즉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개선 정책권고,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게임업계 여성작가 배제 관행 개선 의견표명 등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방송 화면에서 수어통역을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과 수년간 지적돼 왔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65세 연령 제한 문제가 법률 개정으로 해소되는 데 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 2월 ‘농인의 언어권, 교육권, 정보 접근권 증진 주제의 경우, 긴급 위원장 성명’, 4월 ‘방송 3사 간판 뉴스 수어통역 제공 권고’, 그리고 9월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의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농인의 언어권을 강조함으로써 공용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0년 한 해에만 7건의 긴급구제 권고와 1건의 긴급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신장애 인권단체 및 기관과 인권보도 기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그룹 회의체를 구성, 이슈별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책 권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함은 물론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정책 수행기관의 장단기 계획 수립 시 인권 친화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의 사건관계자 정신질환 정보 임의공개에 대한 의견표명, ○○○○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위원장 성명,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위원장 성명 발표, 발달장애인 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정신재활시설 인권증진 실태조사, 여성인권 관련 실태조사 연구, 성평등 포럼 개최 및 성희롱 사례집 제작·배포 등 성평등 이슈와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가 지난 3년간 혐오표현 공론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 언론 영역의 혐오표현 대응 선언을 통한 자율대응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온라인, 스포츠, 공공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혐오표현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혐오표현 무관용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혐오표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법률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평등법 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의견표명을 하였고, 성공적인 국회 입법 발의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공론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아직 평등법 발의가 되지 않은바,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이 발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평등법 입법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19년 발족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20년 2년 차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진정사건에 대한 개별 피해 구제와 스포츠인권 문화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심화된 현장조사 및 체육대회 모니터링을 기획하였고, 스포츠인권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6월 고(故) 최속현 선수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인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이 여전히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체육단체들의 구제 및 보호의 사각이 드러남에 따라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의 변혁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스포츠계의 인권문제는 국소적인 처방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스포츠계 내외의 인권 인식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이 드러났다. 이에 국가는 물론 스포츠계의 모든 주체가 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한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현장에서 진정성 있게 실천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항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¹⁰⁾·공직유관단체¹¹⁾와 구금·보호시설이 그 업무의 수행¹²⁾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단체·사인(私人)이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진정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주로 진정 제기로 개시된다.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 등 제3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구술·전화로 진정하기 어려운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받는 면전진정¹³⁾ 제도도 있다.

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2)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한다.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긴급구제

진정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위원회의 신속한 긴급구제 결정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긴급구제 안전 상정 건수가 2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적극적인 현장 기초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상임위원회에 긴급구제 안전으로 상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된 긴급구제 사안이 11건에 이른다.

2020년에 결정한 주요 긴급구제 권고 건으로는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재개발 현장 음식물 반입 금지 등에 따른 긴급구제, 교도관의 진정 취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강요에 대한 긴급구제 등이 있다.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직권조사 8건을 개시 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 직권조사 4건을 포함하여 6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구제조치 권고 5건, 수사 의뢰 1건이다.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시설 방문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7건에 대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 조사건을 포함하여 5건을 처리하였다. 처리 유형은 정책권고 3건, 방문조사 종결 2건이다.

한편 2020년 4월 기획조사팀이 신설되어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향후 방문조사 대상 시설 확대, 조사 방법 체계화 및 효율화를 통해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전 예방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상담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권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효율적인 상담위원 제도를 위해 내담자들의 수요가 많은 법률·노무·인권일반으로 분야로 집중하고, 상담예약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수어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정, 상담, 민원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권리구제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 단계에서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진정사건은 8,948건, 상담 2만 8,182건, 민원·안내(조사 대상 및 접수 절차, 타 기관 안내 등) 4만 4,688건이 접수되어, 2019년보다 진정은 804건(8.2%), 상담은 5,259건(15.7%), 민원·안내는 173건(0.4%)이 감소하였다.

[표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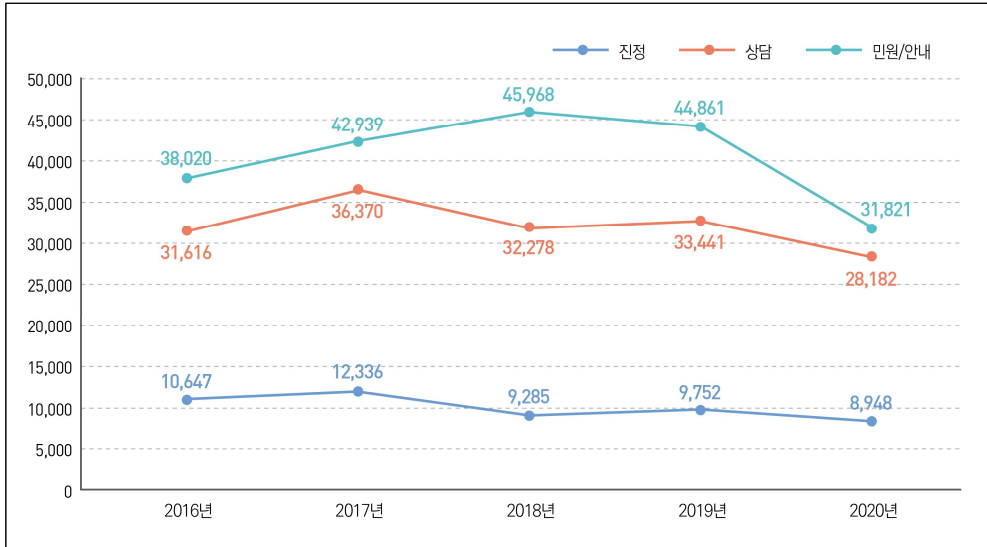
연도	진정	상담	민원 / 안내	합계
누계	150,897	430,547	561,038	1,142,482
2020	8,948	28,182	44,688	81,818
2019	9,752	33,441	44,861	88,054
2018	9,285	32,278	45,968	87,531
2017	12,336	36,370	42,939	91,645
2016	10,647	31,616	38,020	80,28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상담은 면진진정 상담종결 건수를 포함한다.

[그래프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단위: 건)



1. 인권상담

가. 상담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20년 12월 말까지 처리한 상담은 43만여 건에 이르며, 2020년에는 2만 8,182건으로 2019년 대비 15.7% 감소하였다. 2020년 상담의 유형별 분석 결과,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전체의 45.5%, 차별행위 관련 상담이 7.7%,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이 3.7%, 기타 상담 건이 43.1%를 차지하였다. 2020년과 비교하여 전체 상담 건에서 인권침해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4.4% 증가하였고, 차별행위 관련 상담은 0.6% 감소하였다. 한편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 간 침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재판 관련 사항 등이다.

[표 2-2-2] 최근 5년간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합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면접진정 상담종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계	430,547	169,857	39.5	36,956	8.6	194,805	45.3	28,929	6.7
2020	28,182	12,813	45.5	2,162	7.7	12,160	43.1	1,047	3.7
2019	33,441	13,744	41.1	2,767	8.3	15,874	47.5	1,056	3.2
2018	32,278	12,970	40.2	2,772	8.6	15,365	47.6	1,171	3.6
2017	36,370	14,737	40.5	3,236	8.9	17,095	47.0	1,302	3.6
2016	31,616	14,421	45.6	2,530	8.0	13,661	43.2	1,004	3.2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나.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수인보호시설이 5,229건(40.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8년 49.5%, 2019년 43.5%, 2020년 40.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매년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상담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2017년 5월)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요건 심사가 강화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한 효과로 분석된다.

다수인보호시설 다음으로 경찰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2018년 1,933건, 2019년 2,405건이었으나, 2020년 1,833건으로 2019년에 비해 572건(23.8%) 감소하였다.

또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인권상담이 2019년 4건에서 2020년 61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도 827건으로 2019년 1,253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 784건,

공공기관 722건이다. 교정시설 상담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시설 특성상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서면이나 면전진정을 통해 상담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대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298건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내 인권침해 빈도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장병 등의 위원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3]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누계	2020	2019	2018	2017	2016
합 계	169,857	12,813	13,744	12,970	14,737	14,421
검찰	5,226	221	250	231	265	176
경찰	32,738	1,833	2,405	1,933	2,281	2,033
국정원	269	14	4	10	11	4
중앙행정기관	1,718	117	45	58	147	108
지방자치단체	10,432	784	799	747	826	650
사법기관	2,316	167	149	136	143	125
입법기관	111	5	8	3	13	7
기타 국가기관	8,849	455	774	499	630	529
교정시설	4,602	298	370	302	428	354
다수인보호시설	76,497	5,229	5,974	6,418	7,324	8,034
군	5,065	298	362	366	397	304
교육기관	9,657	827	1,253	1,078	1,171	990
출입국관리기관	905	38	51	52	70	96
공공기관	4,472	722	554	543	539	409
의료기관	392	302	4	5	13	14
기업 등 영리단체	522	385	15	12	13	11
비영리법인 및 단체	135	125	6	1	1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659	618	4	5	5	3
기타	5,292	375	717	571	460	57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상담 건수에서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는 제외된 것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된 건수는 포함된 것이다.

다. 차별행위 상담

2020년 역시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전체 차별행위 상담의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희롱 관련 상담이 525건(24.3%), 그 뒤를 이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258건(11.9%),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89건(4.1%) 등의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출신 국가 관련 차별 상담은 2019년보다 30건 증가하였다.

매년 장애차별 관련 상담 비중이 높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¹⁴⁾ 등을 통한 차별시정제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4〕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누계	2020	2019	2018	2017	2016
합 계	36,956	2,162	2,767	2,772	3,236	2,530
성 별	1,194	92	110	98	122	76
종 교	294	19	22	27	32	22
장 애	12,277	607	955	998	1,065	906
나 이	2,208	89	123	133	144	116
사 회 적 신 분	3,140	258	262	189	231	155
출 신 지 역	241	21	15	15	12	14
출 신 국 가	870	80	50	46	49	44
출 신 민 족	52	8	5	1	1	2
용 모 등 신체조건	528	33	29	33	54	37
혼 인 여 부	194	7	5	10	19	19

14)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③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구분	누계	2020	2019	2018	2017	2016
임 신 · 출 산	632	33	63	53	75	39
가 족 상 황	270	13	14	17	33	14
인 종	68	7	5	3	6	8
피 부 색	21	1	2	1	-	1
사상·정치적 의견	117	6	10	9	4	9
전 과	451	17	19	27	34	20
성 적 지 향	92	9	9	6	12	12
병 력	1,048	61	62	57	115	62
학 별 · 학 력	421	23	23	13	32	18
성 희 롱	9,576	525	759	835	963	739
기 타	3,262	253	225	201	233	217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상담 건수에서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는 제외된 것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된 건수는 포함된 것이다.

라. 진정함 점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금·보호시설에 의무로 부과된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까지 진정함 설치 및 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경우 대부분의 수용자가 편지지 및 봉투, 필기구를 소지해 개인별 우편을 이용하고 있어 진정함 이용 실적이 저조하며, 교도소 진정함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인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진정함을 이용한 건수는 거의 없다. 이에 진정 접수 경로별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의 진정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진정 접수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15만 897건인데, 이 중 76.0%인 11만 4,628건이 인권침해, 22.5%인 3만 3,893건이 차별행위, 1.5%에 해당하는 2,376건이 기타 사건이다. 2020년 접수한 진정사건 8,948건 중 인권 침해는 6,530건(73.0%), 차별행위는 2,385건(26.7%)이다.

2019년 대비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804건(8.2%)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표 2-2-5]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합계	비율	합계	비율	합계	비율
누계		150,897	76.0	33,893	22.5	2,376	1.5
2020		8,948	73.0	2,385	26.7	33	0.3
2019		9,752	71.6	2,721	27.9	52	0.5
2018		9,285	76.0	2,207	23.8	25	0.2
2017		12,336	74.0	3,169	25.7	34	0.3
2016		10,647	76.6	2,433	22.9	54	0.5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3. 면전진정

2001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금·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은 총 6만 2,009건이 접수되었다. 2020년에 종결 처리된 면전진정 2,376건 중에 314건(13.2%)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1,047건(44.1%)이 상담종결, 983건(41.4%)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되었다. 면전진정 처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종결 건수는 면전진정 접수 건수의 감소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으며, 상담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문의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관여할 수 없는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면전진정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처리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면전진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전진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2-2-6]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별	접수	처리						
		소계	진정 접수	진정률	상담종결	상담종결률	철회	철회률
누계	62,009	61,651	15,537	25.2	28,929	46.9	17153	27.8
2020	2,529	2,376	314	13.2	1,047	44.1	983	41.4
2019	2,669	2,649	573	21.6	1,056	39.9	1,020	38.5
2018	2,648	2,654	570	21.5	1,171	44.1	913	34.4
2017	2,765	2,858	672	23.5	1,302	45.6	884	30.9
2016	2,619	2,479	495	20.0	1,004	40.5	980	39.5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4. 민원

위원회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진정 접수 및 조사 업무 이외에도 각종 민원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0년 민원 처리 건수는 총 3만 3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 이용 수단을 살펴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1만 6,739건(55.2%)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이 9,511건(31.3%), 우편/FAX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3,973건(13.1%) 순이다. 범정부 통합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포함하면 86.4%의 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표 2-2-7] 최근 5년간 접수 경로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합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 비서실		국민 신문고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계		264,289		59,445	27.2	119,878	54.8	703	0.3	83,131	28.4	1,132	0.5
2020		30,356		3,973	13.1	9,511	31.3	2	0.0	16,739	55.2	131	0.4
2019		30,149		4,749	15.8	8,545	28.3	1	0.0	16,663	55.3	191	0.6
2018		29,953		4,785	16.0	9,900	33.1	18	0.1	15,054	50.3	196	0.7
2017		25,640		5,399	21.1	7,612	29.7	24	0.1	12,486	48.7	119	0.5
2016		19,416		5,035	25.9	7,935	40.9	44	0.2	6,286	32.4	116	0.6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표 2-2-8] 최근 5년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누계	2020	2019	2018	2017	2016
합계	264,289	30,356	30,149	29,953	25,640	19,416
진정 접수 절차 안내	26,140	2,738	2,627	2,077	1,622	942
조사 대상 안내	63,944	4,839	3,491	6,220	3,949	3,699
진정 내용 보완 요구	4,129	361	529	982	489	374
진정사건 처리 안내	1,586	111	120	152	51	46
법령 등 자료송부	699	17	2	3	2	5
질의회신	785	-	-	-	-	-
면접진정 안내	486	26	10	6	7	4
타 기관 이송*	46,475	13,000	12,694	11,568	8,424	505
타 기관 안내	1,741	653	145	18	74	148
진정 접수 안내	53,313	4,532	4,619	3,513	6,959	5,151
민원인 취하	1,038	33	141	23	72	53
공람종결	2,005	26	199	263	52	97
처리종결(회신무)	25,220	1,252	1,182	1,260	1,236	5,594
민원회신	29,104	2,192	4,230	3,811	2,633	2,747
기 타	7,539	593	160	57	70	51

*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타 기관으로 이송한 민원(2020년 1만 3,000건) 포함이다.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제3절 기초조사 및 조정

2018년 2월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국의 조사관별 보유 사건 증가로 사건의 적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조사력 상당 부분이 각하사건 처리에 투입되어 오히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주요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접수 초기 단계에서 각하·조정·합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기존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상담조정센터로 개편하고 진정사건의 기초조사 및 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초조사·조정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기초조사

기초조사·조정팀이 신설되어 업무를 시작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전체 진정 접수 2만 1,946건의 17.7%(3,584건)를 배정하여 같은 기간 전체 종결 2만 2,429건의 15.8%(3,547건)를 처리하였다.

2020년에는 전체 종결 건수 9,301건 중 1,234건(13.3%)을 처리하여 업무 효율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9] 진정사건 기초조사 배정 및 종결 현황

(단위: 건)

기간	배정 진정사건 수		종결 진정사건 수	
	전체 배정 건수	기초조사팀 배정 건수	전체 종결 건수	기초조사팀 종결 건수
합계	21,946	3,584 (17.7%)	22,429	3,547 (15.8%)
2020	8,948	1,210 (18.4%)	9,301	1,234 (13.3%)
2019	9,752	1,799 (18.4%)	9,138	1,787 (19.6%)
2018. 8. ~ 12.	3,254	575 (17.7%)	4,149	526 (12.7%)

2. 조정

2020년 조정사건은 6건 접수하여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였다. 2019년 조정 불응이 7건으로 조정위원회가 2회 개최된 것과 비교할 때 조정위원회 개최 비율이 높아졌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차별 관련 조정 2건, 성차별 관련 조정 2건, 인권침해 관련 조정 1건이다. 이 중 조정 성립은 2건이다.

[표 2-2-10]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소계 (①+②+③)	조정 성립 ①	조정 불성립 ②	조정갈음결정		각하 ③
					성립	이의신청	
누계	170	170	74	32	(10)	(6)	64
2020	6	6	2	3	-	-	1
2019	9	9	1	1	-	-	7
2018	22	26	7	3	(4)	-	16
2017	36	43	19	4	(1)	-	20
2016	38	30	18	4	(2)	(1)	8

* 조정갈음결정의 () 안 숫자는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에 포함.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진정사건 접수

2020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총 6,530건이 접수되어 2019년보다 449건(6.4%)이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감소세인데,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활동과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진정 발생 요인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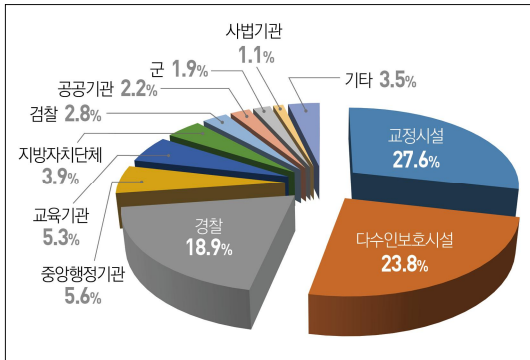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교육기관과 경찰 사건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교육기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학내 구성원 간의 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며, 경찰 관련 진정사건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의 외부 활동이 감소해 경찰이 개입할 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표 2-2-11]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중앙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정시설	출입국관리기관	다수인보호시설	의료기관	기타
누계	114,628	3,286	22,406	256	2,286	6,677	96	1,330	1,280	4,653	2,588	6,282	32,748	1,068	28,231	233	1,208
2020	6,530	115	1,188	4	199	331	9	71	28	390	276	529	1,706	56	1,424	58	146
2019	6,979	146	1,318	10	200	456	4	86	28	401	292	668	1,690	50	1,485	24	121
2018	7,053	128	1,258	12	192	261	3	59	15	273	208	582	1,826	67	2,091	11	67
2017	9,133	219	1,543	12	251	450	10	102	30	412	286	746	2,269	74	2,637	22	70
2016	8,160	149	1,474	8	201	263	3	78	39	264	205	609	1,632	83	3,073	25	54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그래프 2-2-2]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20년 말까지 인권침해 진정 누적 건수는 11만 4,628건이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접수 현황을 피진정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정시설 관련 진정이 3만 2,748건(28.6%)으로 가장 많고,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 2만 8,231건(24.6%), 경찰 관련 진정 2만 2,406건(19.5%), 중앙행정기관 관련 진정 6,677건(5.8%) 순이다. 구급·다수인보호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진정사건 처리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2020년 6,385건 처리하여 2019년에 비해 251건 감소하였다. 이는 접수 건수 감소에 따른 처리 건수 자연 감소, 2017년부터 누적된 장기사건 처리 집중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20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리구제 건수는 634건으로 2019년 대비 106건(19.6%) 증가하였는데, 권리구제 중 권고 및 징계 권고가 2019년 대비 각각 48건, 17건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던 합의종결 및 조사중 해결도 각각 13건, 31건이 각각 증가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찰(▲50건), 교육기관(▲40건), 군(▲25건) 순으로 권리구제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권리구제율¹⁵⁾은 2019년 8.0%에서 2020년 10.0%로 상승하였다. 권고 건수 역시 2019년에 비해 65건 증가하였다.

15) 권리구제율 : 권리구제 건수/처리 건수(%)

[표 2-2-12]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법률 구조 요청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누계	114,628	112,368	13,060	148	3,113	19	15	1,862	7,903	64,800	1,548	32,358	602
2020	6,530	6,385	634	-	307	-	-	37	290	3,898	39	1,760	54
2019	6,979	6,636	528	3	242	-	-	24	259	4,162	125	1,815	6
2018	7,053	7,702	667	3	209	-	-	122	333	4,697	74	2,248	16
2017	9,133	8,576	875	8	210	-	4	59	594	5,414	96	2,166	25
2016	8,160	8,424	903	19	179	1	9	122	573	4,956	82	2,452	31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이다.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한편 2020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처리 건수는 교정시설 1,638건, 다수인보호시설 1,442건, 경찰 1,177건, 교육기관 561건, 지방자치단체 333건, 중앙행정기관 318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권리구제 건수는 교육기관 143건, 경찰 119건, 다수인보호시설 97건, 교정시설 62건, 지방자치단체 57건, 군 55건, 공공기관 37건, 중앙행정기관 23건 순으로 많았다.

[표 2-2-13] 2020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6,530	6,385	634	-	307	-	37	290	3,898	39	1,760	54
검찰	115	112	6	-	5	-	-	1	76	-	29	1
경찰	1,188	1,177	119	-	69	-	17	33	492	9	547	10
국정원	4	5	0	-	-	-	-	-	5	-	-	-
군	199	210	55	-	28	-	6	21	101	1	46	7
중앙행정기관 ¹⁶⁾	331	318	23	-	8	-	-	15	213	2	79	1
입법기관	9	9	0	-	-	-	-	-	7	-	2	-
사법기관	71	68	7	-	4	-	-	3	49	-	12	-
기타국가기관 ¹⁷⁾	28	25	1	-	1	-	-	-	11	-	13	-
지방자치단체	390	333	57	-	23	-	2	32	186	6	80	4
공공기관 ¹⁸⁾	276	246	37	-	11	-	-	26	158	3	48	-
교육기관 ¹⁹⁾	529	561	143	-	74	-	1	68	296	5	115	2
교정시설 ²⁰⁾	1,706	1,638	62	-	31	-	1	30	1,061	6	501	8
다수인보호시설 ²¹⁾	1,424	1,442	97	-	43	-	10	44	1,066	4	254	21
출입국관리기관	56	60	18	-	5	-	-	13	30	1	11	-
의료기관	58	54	7	-	4	-	-	3	37	1	9	-
기타	146	127	2	-	1	-	-	1	110	1	14	-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이다.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16) 부·처·청 등 중앙행정부처 및 그 소속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군, 교정시설, 출입국관리기관 등 제외)

17)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기관

18)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및 지정되지 않은 기타 공공기관

19)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 각급 학교 및 관련 법인, 특수학교, 기타 학교, 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20)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소년교도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군 교도소 제외)

21)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지원시설

2. 직권·방문조사

가. 직권조사

2020년에는 2019년에 개시한 군 초급간부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직권조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 사건 처리 관련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권고 및 수사 의뢰를 각각 의결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포츠, 아동,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먼저 아동인권 분야에서 위원회는 9세 아동이 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감금되었다가 사망한 사건, 9세 아동이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학대를 당한 사건, 아동보호시설인 공동생활가정에서 10세 아동을 수개월 감금한 사건 등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전예방, 사례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현황, 사전 예방 절차 및 사후 보호조치, 구조적 관행 등을 확인하였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도나 정책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였다.

나. 방문조사

2020년에는 2019년에 개시하여 연내 종결 처리하지 못한 방문조사 4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는 각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별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방문조서로 송부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에는 신체 구속 매뉴얼 제정, CCTV 관련 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방문조사 7건을 조사 개시

하였다. 먼저 군 구금시설과 관련하여 8월 5일부로 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징계입창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의 기능과 군 미결수용자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6개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0월 13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교정시설의 경우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10개 시설을 서면·대면 방식으로 점검하였으며, 교도관 및 의무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수용거실, 징벌거실, 보호실 및 진정실, 시설 현장조사 보호장비 점검, 기관 의견 및 현황 자료 수집 등을 실시하였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하는 것은 최소로 하였으며, 위험성이 높은 4개 시설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였다. 방문조사 실시 중 법무부의 보호장비 개선 사항 시달 등으로 각 조사 대상기관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와 관행에 큰 전환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조사 대상기관에는 방문조서를 송부하여 시정 조치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외국인보호시설의 경우 5개 시설을 방문해 감염병 상황 아래 보호외국인 처우 및 건강권을 점검하고 장기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정책이 목적인 바와 같이 추진되는지 조사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양육 시설은 전체 아동복지시설 수 대비 85%를 차지하고, 현원으로는 91%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아동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거주아동의 권리보장 체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자립지원과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파악 등 시설 거주아동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하여 전국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3개소로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는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경우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한 노인이 대부분인 가운데 노인 스스로 진정제기 등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설생활인 인권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기획하였다. 당초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10개 내외에 대한 방문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전파 우려 등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감염증 전파 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방문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장과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는 거주인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임금 미지급, 노동력 착취) 순으로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거의 없는 등 장애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전파 우려 등으로 2020년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전문가 간담회 추진 등으로 대체하였다.

한편 ○○○○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집단 사망 사건이 정신병원의 다인실 구조 등 감염병에 취약한 입원실 구조, 폐쇄병동의 좁은 공간과 과밀 수용, 채광 및 환기 부족, 부족한 위생시설, 적절한 실외 운동시설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에 방문조사를 통하여 현장 방문과 입원 환자들을 직접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방역 단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직접 방문 대신 시설 및 입원 환자 현황, 자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와 종사자 설문조사지를 통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동 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 시스템의

시설환경 문제와 감염병 및 재난 등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가. 검찰·경찰·법원

■ 검찰의 벌금 납부 독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위원회는 검찰의 벌금집행 담당자가 벌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미납자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하여 벌금 체납 사실을 누설한 행위는 미납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5월 6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집행과장은 진정인에게 벌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총 20차례 이상 전화를 걸었고, 총 28차례 이상 문자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직장으로 한 달간 총 4회 이상 전화를 하여 진정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벌금 납부 독촉 행위는 벌금 자진 납부 기간을 도과하여 지명수배 되기에 이른 진정인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지 않고, 추가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진정인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진정인의 직장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진정인 이외에 제3자에게까지 벌금 미납 사실이 알려지게 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여 진정인의 직장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발생시킨 행위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권고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한편 피진정기관이 검찰사무규칙을 근거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보관을 강제하는 관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표명하였다.

■ 폭언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원회는 검찰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조사에 필요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5월 6일 해당 검찰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소속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이대로 가면 재판 가서 오래 살 겁니다. 사회하고 격리된 곳에서 오래 살 겁니다.” “도박하셨나요? 스포츠 토트 했나요?” “본인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장애인한테서 수수료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언은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판사의 입장을 가장하여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진정인의 태도를 비꼬는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의 혐의 유무를 밝혀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진정인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에 불과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권고기관들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검찰의 부당한 출국금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검찰이 공무원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출국금지 필요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통지 제외 요청까지 하여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금지 및 연장을 한 조치는 당사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6월 22일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심사 절차 엄격화 및 대상자 통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편의에 따른 출국금지 및 통제 제외 요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인 소속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경찰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이 법무부에 진정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통지 제외 요청까지 하는 바람에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하던 중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가족과 여행을 가지 못하였다면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당시 참고인이었던 진정인을 비롯하여 피의자 및 중요 참고인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는데,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질 경우 관련자들 간에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등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당사자들에게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의 직업, 가족관계, 출입국기록과 출국금지 요청서 등 ○○지방검찰청 제출 자료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이 해외로 도피할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진정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응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가운데, 출석 조사 이후 이렇다 할 추가 조사가 없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 도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 외에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에서는 출국금지 요청서만 제출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도

별다른 확인이나 소명 자료 요구 없이 출국금지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를 결정하였다.

한편 출국금지 사실 통지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금지 사실이 대상자들에게 통지된다고 해서 증거인멸 등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으로 볼 수 없고, 상당수가 현직 경찰관들이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다.

더불어 현재 출국금지 심사가 출국금지 남용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출국금지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위원회는 검찰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 전화를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8월 25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및 주의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였음에도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증거분석 종료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장기간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할 만한 새로운 전자정보가 휴대전화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탐색·출력·복제 과정이 종료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해야 하는데, 피진정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CD에 복제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휴대전화에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습득한 전자정보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유출 가능성은 물론 다른 범죄의 수사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늦게 돌려준 이유에 대해 진정인이 공범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계속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으면서 임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그 상태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경찰의 과도한 장구 사용과 폭행 등 인권침해

위원회는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가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져 고정체(의자)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눌러 제압한 담당 경찰관들의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1월 21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자 경고 및 징계를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체포된 당일 03:00부터 05:00시경까지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져 고정체(의자)에 연결된 상태로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담배를 꺼내 들자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발길질을 하고 휴대전화를 휘두르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왼팔을 뒤로 꺾은 뒤 진정인의 등에 올라타 무릎으로 진정인을 눌러 제압하여 양손에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진정인이 다시 담배를 꺼내 들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진정인 1이 합세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눌러 제압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되나, 피진정인들의 대처가 과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경찰의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위원회는 술에 취해 자택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잠들어 있던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결여한 체포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3월 18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체포 당일 05:40경 자택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CCTV 영상에서 진정인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추가 조사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진정인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진정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상황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등 인권침해

위원회는 진정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행위는 긴급체포 요건을 결여한 체포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4월 16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 징계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자택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현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귀가하였다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차를 빼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불법이 아니라며 항의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정인에게 차량을 이동 주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소유의 자동차를 전산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진정인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점을 고려하면 진정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는 등 긴급체포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원회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대상자에게 영장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5월 6일 경찰청장에게 영장 집행 시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영장의 제시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감금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당하였는데, 진정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는 도중 경찰관이 영장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영장을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영장을 읽을 시간을 5분 이상 주었고,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었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했고, 진정인이 영장의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인이 앞장의 압수 목록만 확인하면 된다고 영장을 빼앗아 갔으며, 피진정인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트 파일을 압수했다 반환한 사정을 감안하면 진정인이 압수 목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경찰관의 부당한 소지품 압수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

위원회는 피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지품을 압수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이고, 피의자가 조사에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변호사 선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6월 22일 경찰청장에게 증거물 등의 임의제출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임의제출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피의자가 조사에 앞서 변호인 선임 의사를 표한 경우 변호인 조력 보장을 위한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2차 피의자신문조사에 앞서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소지품 중 입금명세서, 메모지 등을 복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였으며, 진정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의자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은 이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 판례(2016. 3. 10. 선고 2013도11233)에 따르면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적법성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 소지품을 임의제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인선임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한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변호인 선임에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경찰들의 가택 무단침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경찰관이 112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후 거주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10여 분간 머무른 것은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6월 2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누군가 아파트에서 칼을 들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동의나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진정인의 집에 들어와 수색을 하였다면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아파트 입구에서 아저씨가 큰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니고, 허리춤에 칼 같은 걸 들고 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가 진정인으로 보이고, 위해 방지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해 진정인의 주거를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지고 다니면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112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약 15분간 머무르면서 거주지 내부를 확인하고,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의 용도 등에 대해 청취한 후 퇴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무단침입을 하여 부당한 수색을 한 것은 아니나,

진정인이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것은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으며, 피권고 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과잉장구 사용 등 인권침해

위원회는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환불 문제로 매장 주인과 다투던 70세 여성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지구대로 이송한 후에도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장구 사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6월 2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이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다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되었고, 모친이 아무런 난동을 부리지 않았음에도 모친에게 뒷수갑을 채웠다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진정인의 모친이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모친이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여 매장 주인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한 것이며, 모친이 매장 소파를 붙잡고, 다리를 탁자에 올려놓은 채 소란을 피워 부득이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가 매장에서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인 점, 피진정인들의 신분 확인에 응한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었던 점, 진정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경찰차량 호송 시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의자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8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피의자 등을 호송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찰차량은 일반적으로 예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운행하므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호송자가 차량 안에서 이송에 강하게 저항하여 업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혹은 피호송자가 자·타해를 할 위험성이 있거나 피호송자의 신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어 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조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9월 14일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를 하였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다. 112 문자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경찰청은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단순 민원 신고에 대해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법에 반하는 행위로 제 신고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현행법 체포 및 조사

위원회는 쌍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외국인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을 통역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한 행위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10월 13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자들에게 대한 징계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외국인 피의자에게 통역 등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미란다원칙 고지서 등 확인서와 형사 절차에 관한 안내서가 더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모로코 국적의 남편이 이사 현장에서 사다리차 조작 업무를 하던 중 행인이 진정인에게 “이놈의 새끼 불법체류자 아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112에 신고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편만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한 후 통역 없이 조사를 받게 하였다면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먼저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상대방의 몸을 밀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 체포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 사다리차 무자격 운전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현행법 체포와 무관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현행법 체포 대상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한국에 8년 동안 거주해 어느 정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고, 한국어로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하긴 하나, 형사 절차나 법률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인정되고, 조서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경찰의 유치인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

위원회는 집회금지 구역을 무단침입하여 농성을 하다 체포된 유치인들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 외에 일률적인 접견금지를 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11월 4일 경찰청장에게 2018년 수립한 접견금지 제도 관련 개선지침을 전국 경찰관서에 재차 하달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 사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농성을 하다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면회 금지를 하였다면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진정인들이 진입한 곳은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로서 외교공관의 안녕 보호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들의 인적사항 이외에는 진술을 일체 거부하는 상황에서 접견을 허용할 경우 배후자 내지 공모자와 통모하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 및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제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경찰 측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기는 하나, 수사상 편의를 위해 가족이나 변호인 외의 모든 사람을 접견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서는 안 되고, 접견인 별로 접견 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덜 침익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2017년 위원회가 과도한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접견 금지의 사유, 불복 방법 등을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 하여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각 경찰관서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경찰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인권침해

위원회는 의수를 착용한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면서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하고, 11월 25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장구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장관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피의자 등 체포 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고지 내용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경찰청장에게는 체포 시 이행해야 할 권리 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애견매장에서 퇴거불응죄로 체포되었는데,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한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웠다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약 1시간 동안 퇴거에 불응하여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및 체포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퇴거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하였으며, 체포

당시 저항이 심해 뒷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하였으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항 제214조의2항에 따른 고지 사항에는 진술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진정인들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청이 2019년 11월 14일 개정된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4항에는 체포·구속 시 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규칙 개정 전인 2019년 11월 3일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피진정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체포자에 대한 권리 고지의 범위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보이고, 상위 법령과 하위 규정 간 권리 고지의 범위가 상이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법령과 규정을 일치시켜 피체포자의 권리 보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의수를 착용한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신체적 장애, 질병, 신체 상태로 인해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갑 등 사용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원회는 법원 사건기록 담당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참고인에게 사건 판결문 등본을 발급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비실명화하지 않은 채 발급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2월 26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A사건으로 인해 진정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정인을 고소한 동료 수행자가 A사건의 판결문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교부받았는데, 판결문에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법원 사건기록 담당자는 증인 등 소송 관계인이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등본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비실명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해당 법원 측은 판결문 등본을 신청한 수행자가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의 청구권자 중 고발인(제보자)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상태에서 A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았는데, A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교도소 수행자가 A사건으로 진정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고소한 후 고소 건의 재판에 활용할 목적으로 A사건의 판결문 등본을 법원에 신청하여 비실명 조치가 되지 않은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해당 수행자가 단순한 범죄 사실의 제보자 또는 증인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상 소송 관계인이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 A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A사건 판결문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수행자가 신청한 내용이 위 법령 및 규칙에 따른 재판서 등본 교부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법원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비실명화되지 않은 A사건의 판결문 등본을 교부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법원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 개문

위원회는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집행목적물인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최고장을 부착한 행위는 채무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6월 26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강제 개문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채무자 등이 숨긴 집행목적물을 수색하기 위하여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부동산의 인도를 최고하기 위한 과정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집행관이 문을 열기 전 채무자에게 스스로 열도록 촉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진정인에게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집행관의 개문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동산 인도 집행의 경우 최고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부재중인 경우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덜 침익적인 방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나. 군

■ 군 초급간부 자살 예방을 위한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2019년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7월 16일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살 예방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익명 심리상담 지원 확대, 자살 유형 분석 결과에 따른 상황별 자살 예방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군 내에서 초급간부가 자살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는 2019년 11월 19일 초급간부에 대한 군 내 자살예방정책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간부 자살 비중이 63%로 병사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높았고,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의 비율이 간부 자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장교의 경우 부사관 포함)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어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자살의 원인이 유형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

위원회는 12월 1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육군 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인 피해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의 심신장애 기준을 피해자에게 적용하여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전역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이 사건 전역처분의 결정은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가 ‘심신장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군인사법」에 별도의 심신장애인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등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실시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세계 정신보건 전문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고 있으며, 신체적 기능장애 측면에서 볼 때에도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검증된 의학적 수술 방법을 스스로 택한 것이, 신체 훼손이나 기능장애,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진정인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의 요건으로 해석하여 피해자를 전역처분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설령 전역처분이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성전환 수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전환수술을 한 이후 영내 거주가 곤란한 사유 역시 보직 조정, 영외 숙소 배정, 부대 배치 전환 등 군 인사행정 계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전역처분의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선발 과정에서의 남녀 구분만 있을 뿐 실질 병력 운용상 남녀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아 피해자를 계속 복무시키더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는 등 피진정인의 전역처분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 사관학교 생도들에 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희롱 사건

위원회는 2월 26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 군 사관학교의 SNS 사용 지침에 성희롱 방지 관련 항목을 추가할 것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의 확대 및 점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8년경 ○○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장교 후보생 신분의 남자 생도들이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여자 생도 및 훈육관들에 대하여 성적 비하 표현 등이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생도들의 성인지감수성 부족과 함께 생도 생활예규상 성비위 규정 위반 시 징계 조항 미비, 성희롱 예방교육 미비, 생도들이 준수할 수 있는 SNS 사용지침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관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피권고기관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 거주지 CCTV 부당 확인 등 사생활 침해

위원회는 3월 23일 ○○참모총장에게 부적절한 민간 CCTV 영상정보 취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관련 직무교육과 이 사건 사례를 소속 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군 소속으로 ○○교육사령부에 복무하면서 부대 밖 민간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는데, 소속 부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진정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리실에 진정인의 인적사항과 징계 협의자라는 문서를 보내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확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진정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는 ‘보안 및 방범(화재예방 안전)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이고,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 조사는 이러한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진정인이 소속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오피스텔 건물의 영상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피진정인이 제공받은 영상정보는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개인정보이고, 「군인사법」 등에는 이런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어 이 사건 영상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일 이를 허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여 국가기관 등이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 없이 수집할 우려가 대단히 높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막연하게 군부대의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피권고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 군부대 상사의 강제 이발

위원회는 4월 16일 ○○ ○○○○사령관에게 간부가 직접 소속 장병의 강제 이발을 실시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부대 내 자체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전역을 이틀 남겨둔 병장이었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직접 이발하고, 당시 이발 장면을 촬영해 간부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전역을 앞둔 진정인이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에 따라 두발 제한을 일정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이행은 최대한 자율적인 수단을 통해 당사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단지 두발 정리를 지시함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발기구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두발을 정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는 수단을 진정인보다 상급자라는 자신의 지위에 의존하여 강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피진정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압적 행위로 부적절한 물리적 수단에 해당하여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전송한 행위는

비록 업무상 보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 개별적인 전송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으며, 단체채팅방에 속한 모든 간부가 이러한 사진을 볼 필요성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두발이 정리된 모습이 타인에게 공유되어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해당 부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간부를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간부의 장병 두발정리 금지, 본인 의사에 반한 촬영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장병 교육을 실시하였다.

■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위원회는 5월 27일 ○군 ○○사단장에게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부대의 상급 부대에 사례 전파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코로나19 성금에 대해 피진정인이 모금된 금액이 적다는 취지로 두 차례 추가 모금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부대 본연의 전투력이나 평가와 무관한 성금 모금액을 대상으로 부대 평가를 언급하여 해당 부대에서 초과 성금모금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강제한 것이며, 이는 모금 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해당 부대 장병들의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고, 해당 부대는 이를 수용하였다.

■ 지휘관의 부대원 민감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지휘관의 부대원 민감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6월 22일 피진정인들의 상급 부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징계하거나 서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허위 사실 및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그중 상급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전출시키기 위해 부대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진정인의 개인 비리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술 내용을 발설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징계 사실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정보를 피진정부대 내 다른 간부들에게 유출한 행위는 그 지휘 권한을 남용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소속 간부들에게 특정인에 대한 비위 사실 여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취합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진정인을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배제하고 그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진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킴으로써 진정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한 피진정인의 경우에는 진정인을 피진정인의 집무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대면하도록 한 것 자체가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회유의 시도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며,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피진정인 앞에서 공개하여 양심에 따라 군사경찰 수사에 임한 진정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편파적인 조사 진행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해당 부대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피진정인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 군 체력단련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서약서 작성 강요

위원회는 6월 22일 ○○체력단련장 사장에게 별당 처분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특수근로제공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 하도록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국방부 산하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인데,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에게 별당 20일을 처분해 그 기간 중 경기보조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피진정인이 '특수근로제공 위(촉)탁 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인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 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별당 처분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경기 보조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이자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 권리보호체계가 없으며 별당 처분 시 진정인 등은 본래의 업무인 경기보조에 투입되지 못하고, 골프장 출입구에서 고객들에게 인사 하고 고객의 골프가방을 받아주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대가 없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나아가 본연의 업무인 경기보조원의 업무 수행을 강제적으로 차단하여 진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약서와 관련해서는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목적은 군사보안에 대한 교육이나 성실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경기보조원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무 없는 사람에게 내심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 하도록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대상자의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군간부 독신자 숙소 출입문 잠금장치 수집 등에 따른 인권침해

위원회는 9월 15일 ○○○○○사단장에게 독신자 간부숙소 입주자의 출입문

열쇠 및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 수집과 관련한 규정 및 관행을 지양할 것과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군 독신자 간부숙소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진정부대는 독신자 간부 숙소 입주자에게 출입문 열쇠나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관리실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주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소에 들어와 시설 점검 및 공사를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주거는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한 기초적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하나, 피진정부대의 간부숙소 관리규정에는 입주자가 부재하더라도 비상용 열쇠를 사용하여 내부에 출입하여 순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방화나 입주자 구호 등의 비상 목적 외에도 보안관리, 위생 등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군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의 요청이나 군사경찰 등의 수사 목적으로 부대를 통하여 요청한 때에는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영장주의 제도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았다.

■ 군 상관에 의한 투표 인증 사진 제출 강요

위원회는 12월 22일 ○○참모총장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장병의 투표 인증사진 제출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례를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소속 부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기간 중 소속 장병들에게 투표 후 인증 사진을 찍어오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외출·외박이 자유롭지 않은 군의 특성상 사전투표기간 등을 이용하여 소속 군인의 투표권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은 군 지휘체통의 의무이고, 피진정부대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달된 상급 부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의 투표 인증사진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상 당연히 유추되는 자유선거의 원칙에는 선거의 내용에 대한 선거인의 자유로운 결정뿐만 아니라 선거의 가부에 대한 선거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명하복의 입장에 있는 군인이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 촬영을 강요받게 된다면, 이는 결국 선거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강요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이 소속 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 및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자유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상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다. 구금시설

■ 수용자의 음식물 내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의료조치 미흡

위원회는 3월 31일 ○○교정청장에게 중식으로 제공된 미역국을 먹다가 치아가 손상된 수용자에 대해 보철치료를 즉각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중 중식을 먹다가 1~2cm 크기의 검은 이물질을 씹어 윗니 1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이로 인해 치주염이 동반되어 발치하였으며,

이후 보철물 제작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구치소는 진정인이 이물질을 씹어서 치아를 발치해야 할 정도의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다며 추가 치료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구치소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의 이물질을 저작함으로써 A씨의 치아가 아탈구되어 발치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치아 결손의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보철치료는 전문의의 소견대로 진정인의 치아는 물론 신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피진정 기관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진정 취하 강요 등 인권침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교도관으로부터 진정 취하와 허위 공문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7월 22일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용자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사건이 해당 소위에 인용안건으로 상정되자 진정인을 불러 회유하고 반복적으로 면담하여 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점이 인정되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반복적인 면담에 대해 위원회와 다른 수용자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피진정인들 앞에서 작성한 진정 취하서를 우편 서신으로 바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반복적인 면담은 진정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와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을 제약한다고 판단하였다.

■ 교정기관의 일률적인 외부 도서 반입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8월 13일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수용자들에게 도서 반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부정 물품의 반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외부 도서의 반입을 불허하고, 교정기관 내에서 책을 구매할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는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교정기관 내 우송·차입 도서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지키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법규에서 정한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적용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수용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2020년 12월 7일부로 전국 교정기관에 이 사건 합리화 방안시행을 중지하였다.

■ 부당한 보호장비 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0월 6일 ○○구치소장에게 보호장비 사용 중단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수용관리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13:00시경 머리와 몸으로 거실문을 들이받았는데, 약 45분 뒤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가 일시 해제된 상태로 보호실에서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한 뒤, 약 15분간 변호인과 접견을 진행하였으며, 보호실로 이동한 뒤 보호장비가 재사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진정인이 특이행동을 하였다는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접견 상대방인 변호인은 진정인에게서 위협이나 자살, 자해의 우려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인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약 1시간 5분간 보호장비가 해제된 동안 특이사항이 없어 자살 등의 위험이 소멸했을 개연성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피진정인들이 막연히 종전의 자살 등의 우려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였는데, 이는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장기간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9월 10일 ○○구치소장에게 장기간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계호 대상 지정 업무 담당자에 대해 직무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되기 전 이미 다른 교정시설에서 약 4개월 동안 영상계호를 받은 상황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때부터 6개월 이상을 영상계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수용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영상계호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인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영상계호를 실시하였으나, 계호상 독거 수용으로 상당 부분 교정사고 예방이 가능한 점, 영상장비 거실에서 계호를 받는 약 10개월 동안 규율을 위반한 행위가 혼자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뿐인 점, 교정심리검사 대상자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이 기간 동안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에도 상당 기간 영상계호를 실시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다수인보호시설

■ 장애인 촬영 동영상 무단 전송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2월 19일 ○○○○집 시설장에게 종사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자가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용자를 따로 불러 동영상 촬영 및 녹화한 후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하였고, 이를 공유한 같은 시설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대신 제출한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이용 범위 및 배포 대상 등을 이용자(피해자1)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후 타인에게 임의 전송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무관한 또 다른 이용자(피해자2)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임의 전송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15조, 제17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부적절한 근무 장소 배치에 따른 인권침해

위원회는 4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원장에게 부적절한 근무장소 배치로 사회복지무요원인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지무요원인데, 시설간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업무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책상과 의자를 시설 2층 생활실 복도에 비치하여 약 한 달간 근무하게 한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사무 공간이 아닌 통행 장소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당사자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에 해당하며, 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라도 피진정인은 관리자로서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할 일이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방법으로 근무 지시를 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권한을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원장은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이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했다.

■ 정신의료기관의 진료 과정 CCTV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6월 12일 ○○○병원장에게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심전도 검사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기본검사 사항 중 심전도 검사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서 실시하여 치료 관계자 이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의 행위를 관행적으로 반복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CCTV는 녹음 없이 매일 24시간 촬영되고 있고, CCTV 모니터 화면은 각 병동 간호사실 및 6층 의무기록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원무과장·간호사·보호사 등 직원이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심전도와 같이 입원 환자의 약물 작용과 신체 반응 및 질환 등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할 경우 환자의 상반신이 노출되어 인격권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절차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위원회는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예외 규정에 따른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자체 진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해 위반할 경우에 행정 조치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환자 입원 시 2차 추가진단을 위해 다른 병원의 의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진정병원이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2차 추가진단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일 2일이 지난 후 해당 기관이 이를 반려했고, 이후 다른 병원에 추가진단 의뢰 없이 입원 12일 만에 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입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환자 입원 후 2주 이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을 규정한 것은 비자의입원 절차에서 입원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전문의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비자의입원 절차를 강화하여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의입원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을 무비판적으로 허용할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 간에 추가진단을 의도적으로 반려할 수 있으며, 진정인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경우 국·공립 병원 및 다른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전문의의 공정한 진단을 기대하게 되는데, 다른 병원 의사가 아닌 동일 병원 의사에 의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비자의입원

환자 입장에서는 일상적 진료를 받은 것인지, 추가진단을 받은 것인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본인에 대한 입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진정병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추가진단 전문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단하고 자체 진단을 실시한 것은 기한 내 추가진단 신청과 진단이라는 형식은 준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외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체 진단을 남용한 사례로 보았고, 추가진단제도 자체는 비자의입원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 절차 중 하나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예외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강화된 입·퇴원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입원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노인요양시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상 노출은 인권침해

위원회는 9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양로시설인 ○○○집 원장과 관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하여 익명 처리, 자료 삭제, 정보 노출 수준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 할머니는 시설에 평소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설 측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특수한 각자의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본인의 경험이 알려질 경우 개인 및 가족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퇴거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3월 31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 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통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규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한 피해자들(17세, 18세)이 강제퇴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

위원회는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되어,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제도가 없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퇴거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보호외국인에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호장구 사용은 인권침해

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4월 22일 법무부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야간 점호시간에 반복적으로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리 조치하고, ①앞수갑 사용 및 격리보호(21:50경), ②머리보호대 사용(21:54경), ③앞수갑을 뒷수갑으로 변경(21:59경), ④발목수갑을 사용(22:15경)하였다. 그런데 발목수갑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종류의 장구이며, 수갑(또는 발목수갑)을 보호외국인의 발목에 사용하고 발목과 뒷수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유지하였다.

위원회는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구를 발목에 채우고, 발목수갑과 뒷수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장구를 사용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규정 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정해진 방식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소속 외국인 보호소들에 전파하였다.

■ 난민면접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9월 10일 법무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통해 녹음·녹화 의무화 및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 등 생성 자료의 열람과 복사 보장, 난민면접조서에 공무원 등의 이름 삭제 관행 시정, 난민심사 인력에 대한 훈련과정과 평가제도 마련, 난민 전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와 난민신청이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11월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 9월에는 신속심사 비율 상향, 심사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난민심사 적체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속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40~44건을 처리 목표로 설정토록 하였으며, 처리 목표에 미달한 경우 경위서를 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난민신청 사유 또는 박해 사실에 대해 자신들의 사연을 충분히 이야기할 분위기나 시간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고, 피해자들의 난민면접 조서에는 각각 다른 사유와 다른 상황을 가진 난민신청자임에도 '돈 벌러 왔다'

라는 틀에 박힌 문구가 공통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난민면접 과정이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난민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자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녹화 파일’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공공기관 경비조장들의 상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는 ○○병원 경비조장들이 소속 경비원들에게 단체집합, 상습적인 폭언 및 욕설, 사생활 침해, CCTV 근로감시 등 괴롭힘 행위들을 확인하고, 6월 12일과 6월 22일 ○○병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들은 △다수 내원객과 직원들이 왕래하는 병원 로비에 직원 10여 명을 집합하게 하여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 △경력직 신입사원을 퇴사하도록 괴롭힐 것을 지시한 사례, △조회시간에 조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 △근무 중 부상으로 입원한 직원에게 흡연 시 정문이 아닌 비상구로 다닐 것을 지시한 사례, △근무시간 이외에 따로 불러 상습적으로 욕설한 사례 등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된 경비조장들의 업무 방식, 그리고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 관계자 등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거론하는 ‘경비직종의 특수성’은 대부분 개선·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피진정인들의 언행과 업무 방식의 침해 정도, 침해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피해자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사회복지무요원 경고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고지 미흡

위원회는 9월 15일 병무청장에게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경고장 발부, 복무연장 등 불이익 처분 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행정

심판 제기 방법 등을 경고장 서식에 명시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13호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연장처분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복무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등의 제한과 관계되며,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 행정 쟁송 제기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에 따른 경고장 양식에는 이의 제기와 관련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이의 제기 절차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인해 진정인이 이러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은 이의 제기 절차를 충실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2021. 3. 18. 시행)하여 별지 제13호 경고장 서식에 복무기관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고충상담 행위를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비난한 것은 인권침해

위원회는 고충을 상담한 진정인들을 공개적인 장소로 불러 폄하하고 비난한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10월 6일 ○○○○○○공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상급자로부터 진정인들의 고충 상담 내용을 전해 듣고, 진정인들을 곧바로 공용사무공간으로 불러 본인 스스로가 고충을 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황당하다” “그걸(고충 상담한 얘기) 내가 들어야 되냐” “생각 없이 함부로 얘기 하면 안 된다” “우리 얼굴에 침 뱉었다”라며 상대방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고충 상담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결국 진정한 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와 발언 들은 진정한들의 조직 내 고충 상담을 폄하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을 초래하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직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결과를 전 직원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인권침해

위원회는 직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결과를 전 직원회의에서 논의한 행위는 진정한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10월 6일 ○○이사장에게 ○○연구소에 대하여 기관 경고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소에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바 있고, ○○연구소는 이 소송 판결이 전 직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가피하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이 중단되었던 월례회의를 급작스럽게 개최하면서, 회의 시 소송 판결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대응 방향, 자료 검토 등의 준비 없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진정한에 대한 직원들의 비난성 공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정한이 비난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정한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소송 결과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진정한에게 심리적 충격과 압박을 주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진정한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 미흡

위원회는 학생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숙소에서 함께 훈련을 받던 피해자가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에게 성추행, 괴롭힘을 당하고 이를 운동부 감독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감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알렸고, 지자체와 체육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3월 31일 ○○체육회장에게 소속 시도체육회 인권보호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해당 구청장에게 (성)폭력 피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직장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직원, 지도자 등은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 해당 시 체육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를 징계하고, 관내 등록된 운동선수 및 지도자에 의한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소속 직원·지도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행피해 관리 소홀

위원회는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지속된 폭력 피해 등으로 사망한 고 ○○○ 선수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해당 시와 해당 시 체육회가 운동부 창단 시부터 이미 팀 관리감독과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팀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겨왔고, 도(道), 도체육회, 문체부까지도 오랜 기간 자치단체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해 온 것을 조장하거나 유지한 관행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2월 23일 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안전과 보호의 의무를 해태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장과 해당 시체육회장에게는 자치단체별 체전 성적 순위 경쟁이 아닌 지방 체육과 지역 체육의 활성화라는 직장

운동부 설치 취지에 맞게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할 것과 감독기관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바. 각급 학교

■ 대학인권센터 등의 피조사자 방어권 침해

위원회는 ○○대 인권센터 등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조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4월 13일 ○○대 총장 등에게 직원 직무교육과 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대 인권센터 등은 진정인을 피신고인으로 하는 괴롭힘 및 갑질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요구를 포함한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의결을 하면서, 혐의 사실을 단순히 “△△과학대학 ▽▽학과 대학원생 인권침해 등”이라고만 고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소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사, 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보호하고,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혐의를 고지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는 피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 내지 사과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하여 그의 동의하에 재발 방지 약속 내지 사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결정 주문을 정비하여 강제적인 서약서 징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반성과 사과를 내용으로 한 서약서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

위원회는 4월 29일 ○○대 총장과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센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를 강제하는 서약행위를 결정 주문에서 배제하고, 향후 서약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성희롱 행위를 한 진정인에 대해 서약서를 받은 것은 대학 공동체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는 등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권고에 불과하고, 서약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없으므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서약서에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의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서약식을 하고 서약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진정인의 양심의 왜곡·굴절이나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며, 진정인에게 피진정기관의 결정 내용의 취지, 성희롱 행위에 상응한 제재,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후속 조치 등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의 조치로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상정할 수도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 양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중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규정은 인권침해

위원회는 ○○중학교에서 「학교생활 인권규정」에 따라 아침 조례 과정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종례 시 돌려주는 것이 학생이 가진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5월 12일 ○○중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기본권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 수신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이 달성 가능한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가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며,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의견 수합을 위한 토론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개정하기 어려우나 휴대전화 및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2020년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연내 적용하지 않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 및 수거에 관한 자율권을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 학생에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교사의 체벌 및 반성문 작성 강요 등

위원회는 학생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여러 교사에게 확인받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5월 12일 ○○고등학교장에게 반성문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다른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내심을 표명하는 것을 전제하는 행위로서, 제도나 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반성문 작성과 서약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고, 학생들이 작성한 반성문을 교사 여러 명이 확인하는 행위는 반성문 내용을 검열하는 것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고등학교장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 지도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였다.

■ 초등학생에 대한 원거리 학교 배정은 인권침해

위원회는 6월 30일 ○○도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신입생 배정 시 통학구역을 1.5km, 아동 기준 도보 30분 이내 통학 거리를 준수하는 등 아동 통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도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아닌 피해자 거주지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배정했는데, 이는 통학구역 관련 법정기준인 거주지로부터 1.5km 이내, 도보 30분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법령이 정한 통학 범위와 통학 안전에 비추어 진정인과 피해자의 수인 한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자, 행정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아동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학생의 통학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간 통학구역 조정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 논의 후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인권침해

위원회는 11월 2일 ○○고등학교장 등에게 진정인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이미 우편 통지된 징계사유 설명서 등을 수령하였는바,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홈페이지에 진정인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와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공시한 시점에서는 「행정절차법」 상 공시의 사유가 없었고 진정인이 우편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결국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징계 사유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는 불필요하였음에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과 일부 학부모들에게 진정인이 징계요구 대상자임이 특정되는 수준으로 공시하였고, 그 내용으로 ‘개인정보 무단제공, 법인이사 감금 등으로 중징계 요구’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되었으므로,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대학부설병원 의사의 피해자 진단명 미고지는 인권침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위암 진단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보호자들과만 공유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12월 23일 ○○대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본인의 위암 진단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만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 성향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위암 진단 사실이 피해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위암 진단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보호자들과만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의학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판단이라고 보기가 명백하지도 않으므로 환자의 선택에 맡겨야 마땅한 사항이며, 이는 피해자가 사람으로서의 주체성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위암 진단 사실, 수술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대학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두발제한

위원회는 대학교 운동부 생활관 내에서 4학년 선배들이 1학년 선수들에게 빨래, 방청소, 집합을 시키고 외출을 금지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여 피진정인 지도교수와 조교가 신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선수들의 두발 길이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것, 피진정인 조교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학생선수들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4월 29일 피진정인 교수와 조교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는 해당 학과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관에서 사적인 제재가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20년 말까지 차별 관련 진정 누적 건수는 3만 3,893건에 이른다. 차별 영역별 접수 비중을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이 1만 3,484건(39.8%)으로 가장 많고, 채용·승진·임금 등 고용에서의 차별이 9,906건(29.2%),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등에서의 차별이 1,879건(5.5%) 등의 순이다.

2020년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은 2,385건으로 전년(2,721건) 대비 336건이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장애인 사회활동 축소 등으로 장애차별 진정사건 감소, 2018년 미투운동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한 성희롱 사건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영역별로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이 1,151건(48.2%), 고용에서의 차별이 703건(29.5%), 기타 차별 226건(9.5%), 성희롱 216건(9.1%), 교육시설 등에서의 차별이 89건(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사건이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야간운행 중단 집단 진정(203건), □□지하철 스크린 도어 접자 스티커 미부착 차별 진정(38건) 등 장애인 교통수단 관련 진정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14]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지급	임금 외 금품	자금 용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누계	33,893	9,906	1,486	1,963	179	592	387	1,542	372	7	257	273	838	2,010
2020	2,385	703	60	109	9	49	36	190	21	-	3	1	26	199
2019	2,721	850	59	110	22	66	34	222	31	1	11	27	31	236
2018	2,207	603	75	112	23	48	31	89	24	-	6	10	48	137
2017	3,169	797	76	183	20	41	39	136	37	-	3	36	71	155
2016	2,433	494	65	93	16	29	12	91	28	-	6	14	45	95

연도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이용 등 차별			성희롱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소계	고용 관계	업무 관계	그 밖의 관계	
누계	13,484	5,159	5,494	1,394	1,058	37	342	1,879	1,758	121	519	350	32	137	8,105
2020	1,151	362	400	286	72	3	28	89	78	11	216	151	14	51	226
2019	972	401	328	52	160	1	30	107	94	13	303	199	18	86	489
2018	1,054	520	366	70	83	1	14	95	84	11	-	-	-	-	455
2017	1,232	591	285	212	111	4	29	130	123	7	-	-	-	-	1,010
2016	865	324	353	88	57	4	39	258	251	7	-	-	-	-	816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성희롱 영역은 2019년 접수 사건부터 분류하였다.

나. 사유별 접수 현황

2020년까지 접수된 차별사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장애 차별사건이 1만 5,830건(46.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성희롱 3,277건(9.7%), 사회적 신분 2,914건(8.6%), 나이 1,905건(5.6%), 성별 1,291건(3.8%)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0년의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050건(44.0%)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회적 신분 226건(9.5%), 성희롱 220건(9.2%), 성별 및 임신·출산 114건(4.8%) 등의 순으로 진정이 접수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가 426건(17.9%)으로 전년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사회 양극화 심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국민의 민감성이 높아져 차별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신 지역,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5]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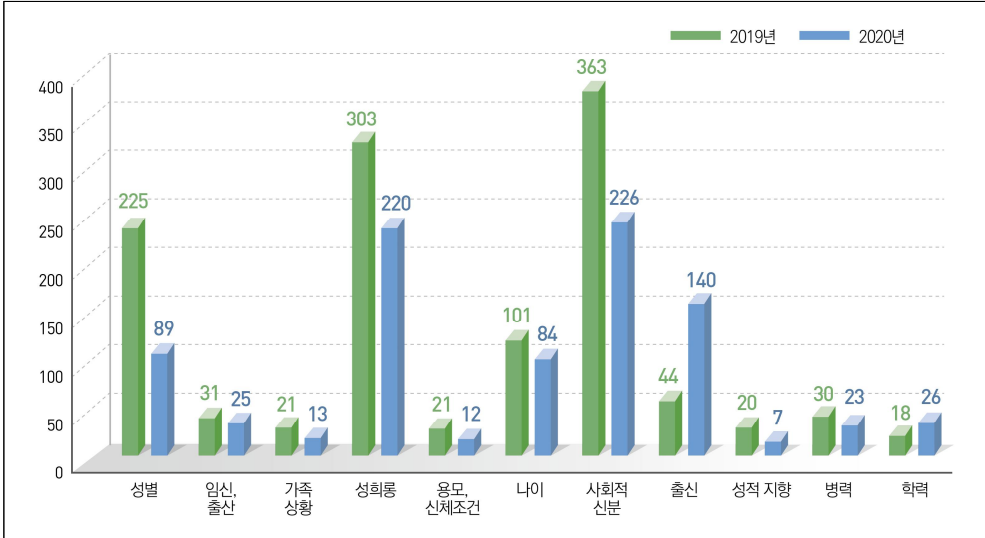
연도	합계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희롱	응모신체 조건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누계	33,893	1,291	157	364	255	3,277	389	15,830	1,905	2,914
2020	2,385	89	9	25	13	220	12	1,050	84	226
2019	2,721	225	7	31	21	303	21	1,217	101	363
2018	2,207	103	10	41	21	263	18	1,137	106	182
2017	3,169	135	19	40	31	299	34	1,433	109	236
2016	2,433	96	16	10	19	207	20	1,511	102	91

연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사상	전과	성적 지향	병력	학력	기타
누계	196	591	18	125	19	240	70	255	382	508	695	4,412
2020	16	124	-	4	1	16	5	9	7	23	26	426
2019	8	36	-	2	1	14	4	17	20	30	18	282
2018	17	29	1	7	1	23	8	12	11	28	21	168
2017	20	26	2	5	-	25	9	17	261	33	45	390
2016	8	29	-	8	1	15	8	10	5	32	23	222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그래프 2-2-3] 전년 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장애, 기타 제외)

(단위: 건)



※ 접수 건수 20건 미만 차별 사유 제외

※ 출신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의 합계이다.

다.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차별 진정사건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5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2,879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427건 증가하였다. 이는 접수 건수 감소에 따른 진정 요지 파악, 피진정인 자료 요구 등 신규 사건 초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고, 장기 미결사건 처리에 주력하면서 다수 병합 장애인 차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차별 진정사건 권리구제 건수도 976건으로 2019년 대비 464건 (90.6%)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용 또는 조사중해결로 처리될 수 있는 다수 병합 진정사건의 감소로 2019년 급감한 권리구제 건수가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집단 진정(115건) 권고, □□시장 장애인 비하표현 장애인 차별 집단 진정(102건) 조사중해결, ○○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야간운행 중단 집단 진정

(203건) 등의 처리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권리구제율도 2019년 20.9%에서 2020년 33.9%로 향상되었다.

[표 2-2-16] 최근 5년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누계	33,893	32,803	9,155	21	2,252	58	811	6,013	16,291	150	7,009	198
2020	2,385	2,879	976	1	274	1	32	668	1,283	7	577	36
2019	2,721	2,452	512	2	246	1	39	224	1,305	5	629	1
2018	2,207	2,460	947	3	338	7	19	580	1,028	3	481	1
2017	3,169	2,383	726	1	147	15	29	534	1,106	6	543	2
2016	2,433	2,410	559	2	70	9	36	442	1,416	12	423	-

-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이다.
-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한편 2020년 처리한 2,879건의 차별사건을 사유별 처리 비중을 보면, 장애 1,349건(46.9%),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개 사유 이외의 기타 사유 355건(12.3%), 사회적 신분 347건(12.1%), 성희롱 280건(9.7%), 성별 및 임신·출산 207건(7.2%), 출신 국가 및 출신 지역 104건(3.6%), 나이 88건(3.1%) 등의 순이었다.

장애, 출신 국가·지역, 나이, 성적 지향, 병력, 학력 등을 사유로 하는 차별사건의 권리구제율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사건은 권리구제율이 하락하였다. 이는 2019년의 경우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인정 차별 집단진정(88건) 시정권고 영향으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사건 권리구제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표 2-2-17] 2020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2,385	2,879	976	1	274	1	32	668	1,283	7	577	36
성별	89	186	27		6			21	134	2	20	3
혼인 여부	9	7	2		1		1	-	4	-	-	1
임신·출산	25	21	2		-			2	13	-	6	-
가족상황	13	17	8		5			3	5	-	3	1
성희롱	220	280	32	1	8		9	14	190	1	37	20
용모· 신체조건	12	18	5		4			1	9	-	4	-
장애	1,050	1,349	715		185		18	512	357	-	271	6
나이	84	88	23		7		3	13	23	1	41	-
사회적 신분	226	347	43		33			10	251	-	51	2
출신 국가	124	88	52		2			50	25	-	9	2
출신 민족	-	0	0		0							
인종	4	4	1		-			1	2	-	1	-
피부색	1	1	0		-			-	-	-	1	-
종교	16	15	7		4			3	1	-	7	-
출신 지역	16	16	2		2			-	9	-	5	-
사상· 정치적 의견	5	11	1		1			-	9	-	1	-
전과	9	11	3		2			1	4	-	4	-
성적 지향	7	17	11		1		1	9	4	-	2	-
병력	23	27	8		4			4	13	1	5	-
학벌·학력	26	21	5		1			4	14	-	2	-
기타	426	355	29		8	1		20	216	2	107	1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2. 직권조사

■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 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위원회는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사와 달리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보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도 교원처럼 학생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장치가 절차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교육청은 없었다. 이에 위원회는 12월 3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직권조사

위원회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2019년 8월 26일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국·공립학교 1만 27개교를 대상으로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감점 처리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항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학교 중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감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가 933개교(9.3%)였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는 근무한 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월 22일 교육부장관에게 각급 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 동일 병원 내 2개 진료과 회전문식 입·퇴원 반복 등에 대한 직권조사

위원회는 동대문구 소재 정신건강의료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동일 병원 내 개설된 가정의학과의 입·퇴원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거나 서류상 입·퇴원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장기입원 환자의 재원일수 조정과 의료급여 수가 기준 기관 등급에 적용됨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2개의 진료과에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확인하고, 7월 27일 피조사 병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 병원 내 부당한 입·퇴원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급여 청구비용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지시 없는 격리 등에 대한 직권조사

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정신건강의료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이 통풍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고, 입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환자를 격리하고 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다수, 인권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피조사병원의 입원 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설 환경은 좁은 공간과 채광 및 환기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외출 및 외박, 실외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내 운동기구의 부족 등 입원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약화와 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신건강 의학과에서의 격리 및 강박은 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식사 및 투약 관리를 위해 임의로 격리 조치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일률적인 통신 제한 행위 등이 확인되어, 7월 27일 피조사 병원장에게 해당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정신보건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마련된 보호실이 법률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입원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조속하게 실시할 것과 이를 통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최저 시설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위원회가 제3자 진정 등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소통을 해오던 중 피해자 측이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 위원회는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여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8월 5일 차별시정국 내 9명 규모의 직권조사단을 구성하여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 여부 및 이에 대한 동료들의 묵인·방조 여부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등 구체적 성희롱 피해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권고안을 준비하고 논의하였다.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가족수당 지급 시 장녀·차남 차별/유급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위원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7월 30일 ○○○○공단, ○○운수주식회사 등에 관련 규정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되었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보았다.

또한 외조부모 사망 시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민법」에는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임에도,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부계 혈통주의적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 방송국 아나운서 채용 시 성차별

위원회는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하고, 10월 6일 ○○○○방송 주식회사 대표에게 이러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방송 주식회사에,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해당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가 모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인 것은 성차별의 의도가 없었으나 결과가 공교롭게 그리 된 것이고,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은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성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채용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전환한 것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과 여성 아나운서들을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성별 고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평등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진정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나. 성희롱

■ 회사 대표이사의 직원 성희롱

위원회는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이 부하 직원인 진정인에게 연애 상대 등 이성 관계에 대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질문과 발언을 반복한 것은 성희롱이라 판단하고, 5월 26일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대표이사의 발언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피진정인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며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피진정인의 발언이 계속되자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결심한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노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사업주로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언동으로 진정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위로금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진정인에게 사업주로서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사내

성희롱 예방 등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진정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원 성희롱

위원회는 8월 25일 부하 직원인 진정인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이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한편, 진정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고용상 압력을 가하는 발언을 한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 등은 일방적인 연애 감정을 이유로 업무 영역에서 하급 직원을 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성 교제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예고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정인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는 등 실제로 진정인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관리자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성희롱 행위가 드러난 후에도 진정인이 본인을 유혹하였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인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진정인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가족 및 제3자들에게까지 성희롱 문제가 알려져 정신적 고통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고, 피진정인에게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인권교육과 진정인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였다.

다. 장애에 따른 차별

■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위원회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8월 24일과 12월 21일 장애인 차별이라 판단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야 막론하고 당 대표, 대변인, 다선의 중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 다수를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사건 3건에 대한 판단이다.

이들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열등하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선입관에 기초한 논평이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은 꾸준히 사회적 논란이 돼왔고 위원회도 2019년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인이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이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불관용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정치 영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진전시킬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시각장애인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편의 미제공

위원회는 지방선거(2018년 6월) 당시 광주광역시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사건에 대해 차별로 인정하고,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권자가 본인 거주지 외에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관외 투표의 특징 때문에 투표소마다 다양한 선거용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모든 선거구 후보를 반영하는 별개의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투표를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기본권(참정권)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등한 접근권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국가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관외 사전투표를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 후보를 모두 합하면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 이를 인쇄한 점자 투표용지를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 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 시각장애인 통장 개설 시 보호자 동행 요청에 의한 장애인 차별

위원회는 시각장애인 통장 개설 시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7월 7일 ○○은행장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음성지원이나 최소한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서명 등 통장 개설을 위한 기본 절차를 완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도 이러한 대안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시각장애인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면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피진정은행에는 대안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러한 관행이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에도 은행권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피진정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 피진정은행은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녹취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하였고, 금융위원회도 은행연합회 등 은행권과 협의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

■ 메인 뉴스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한국수어 통역 미제공 등

위원회는 4월 20일 지상파 3사가 간판 뉴스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래 두 가지 이유로 농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아 시정을 권고하였다.

우선 간판 뉴스는 그날 있었던 국내외 중요한 사건 등을 하루 일과를 마친 국민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이므로, 다른 시간대 뉴스에 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막은 적절한 대체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농인이 뉴스를 시청할 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뉴스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설령 자막이 나온다고 해도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한글 자막 해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막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자막만으로 뉴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방송3사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9월 초부터 모두 간판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 청각장애인에 대한 온라인 공개강좌 포털의 편의 제공 미흡

위원회는 11월 24일 한국○○○○○○원이 제공하는 1만 8,000여 개 공개 고등교육 강좌에서 한글 자막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진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비록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해당 교육강좌 제공 목적에 비추어 응당 지원해야 할 수준이라고 보아 차별로 인정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수어통역

제공이 어렵더라도 자막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면 농인과 청각장애인은 사실상 강좌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자막은 제공하고 있으나 수어통역이 부족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700여 개 강좌의 경우는, 자막 제공만으로도 필요한 편의는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즉 고등교육 과정이어서 대상자가 한글을 기본으로 학습했을 것으로 간주되는 농인이기 때문에 자막만으로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수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어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 등

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이 회의 진행 중 수어를 사용하지 말고 음성언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하였고, 전 직원이 있는 월례 회의 자리에서 마이크를 쥐여주며 음성언어로 월간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피해자의 장애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음성언어를 강요하여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판단하고, 10월 20일 해당 장애인체육회에 해당 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다.

라. 나이에 따른 차별

■ 민간 연구원의 장학금 지원 신진 연구자 선발 나이 차별

위원회는 4월 28일 ○○○○○연구원장에게 ‘△△△△ △△△과정’ 지원 자격에 나이 조건 이외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를 포함하고, 지원자의 나이를 상향하는 등 지원 자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일정 수준에 이른 연구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잠재성 있는 신진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 △△△과정’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 사업의 목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학자를 선발·지원하는 것이고 간접고용 효과가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나이(만 34세) 이하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진정 ‘△△△△ △△△과정’과 목적이 다르고, 박사학위 취득 평균연령을 보면 학업전념자는 35.7세, 직장 병행자는 46.5세로 전체 평균은 41.3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신진 연구자란 최근 학위를 취득하여 그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 최종 학위를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신진 연구자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나이를 제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프로볼러 선발 시 나이 제한

위원회는 11월 12일 ○○프로볼링협회장에게 협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볼러 선발전 응시 요건에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약 4년 동안 프로볼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나, 2017년부터 생긴 피진정기관의 일률적인 나이 제한(남성 만 45세, 여성 만 40세)으로 인하여 프로볼러 선발전에 지원하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프로볼러 선발 과정에 지원한 고령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하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여 나이 제한을 두었으며, 고령 응시생일수록 프로볼링 선수 자격증 취득 후 코치, 볼링 프로숍 운영 등 개인 영리만을 위하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나이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불성실 당사자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이지 소수의 문제를 고령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발을 제한하여 응시 단계에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고령자의 경우 지구력 및 체력 저하, 유연성 결핍 등의 문제로 경기와 성적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협회의 선수 보호와 프로볼링 발전을 위하여 프로볼러 선발전 응시 나이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를 이유로 한 경력 인정 차별

위원회는 3월 27일 ○○대학교병원장에게 전산경력직으로 채용한 피해자의 '사기업체 근무 경력' 유무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무 형태 및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2019년 1월 1일 ○○대학교병원 전산직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호봉 책정을 위한 경력을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50여 개월 동안 사기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을 보수 규정의 '사기업체 근무 경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인정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경력을 인정할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정규직이나 공공기관에서 비관련 업무에 종사한 정규직과 비교해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병원 보수 규정 중 사기업체 근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 조항에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를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기업체에서 실제 근로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다양한 계약 형태를 띠고 있는 프리랜서 직업군 전체에 대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의 형식을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일정 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사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사기업체 근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기업체 근무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피해자의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따른 고용차별

위원회는 3월 27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소속 직원인 진정인의 직급 및 급여 산정에 필요한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합한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관련 회사 대부분이 정규직 경력을 기준으로 유사 경력을 인정하는 상황이고,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관련 내부 규정인 「채용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아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정인의 경우 피진정회사 입사 이전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각각 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지만 비파괴검사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다고 평가받을 이유가 없고,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적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기초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통상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적은 범위 또는 낮은 수준의 업무 강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전 직장에서 정규직과 다른 수준의 업무가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정규직 경력을 정규직 경력과 동일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입사 전 경력 인정은 불이익이 아니라 시혜의 영역이며 본인의 동의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므로 차별 주장은 신뢰에 어긋난다며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차별

위원회는 3월 27일 ○○○○○연구소장에게 행정직·기술직 직군의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행정직·기술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하고, △△△△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연구소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일반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피해자인 ○○○○○연구소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 내용과 일반정규직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업무와 행정직·기술직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같은 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행정원·기술원들과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평가를 받으며, 피해자들과 동일한 채용 자격 요건과 동일한 신분(기간제근로자)이었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대부분 연구직·행정직·기술직 직군으로 전환된바, 피해자들을 행정직·기술직이 아닌 기능직에 준하여 급여 채우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소 및 △△△△기술연구회는 모두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호봉 산정에 있어 기간제교사 경력 차별

위원회는 4월 28일 피진정인 ○○○체육회장에게 진정인의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체육회의 ‘경력환산 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보아 ‘갑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체육회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른 ‘교직원’ 경력은 통상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합격한 교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체육회의 ‘경력환산 기준표’의 갑경력에는 ‘교직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서 합격한 교사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교원 임용권자는 예산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은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교원인 기간제교사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진정인의 기간제교사 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종교에 따른 차별

■ 대학교 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위원회는 8월 25일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2020학년도 신규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행정 분야 지원자의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재적교회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였는데, 행정 업무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이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대학교의 행정 직원이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 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직원 채용 시 일괄적으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등의 관련 법률 취지를 피진정인도 존중해야 하며 종립대학교의 행정직원 채용에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히잡 착용을 이유로 한 취업에서의 차별

위원회는 12월 29일 피진정인 ○○○○○○○위원회 의장에게 향후 채용 면접심사에서 수행 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위원회의 행정직 및 통·번역 관련 업무 인턴 면접에 지원하였다가, 피진정인으로부터 히잡을 쓰는 사람은 여러 나라 사람과 일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채용에서 탈락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히잡 착용 때문이 아니라 면접 지각, 자기소개서 미제출, 미진한 면접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진정인을 탈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번역 인턴사원 채용면접관이었던 피진정인이 면접심사 당시 진정인에게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일할 때 히잡을 착용할 것인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면접심사의 경우 면접관과 지원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은 지원자에게 자칫 심리적인 위축감 또는 모욕감을 주거나 채용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기도 한다. 그 질문이 사회적 소수자이거나 약자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라면 더욱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것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히잡을 착용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기독교인의 십자가 목걸이나 가톨릭 신자의 묵주 등과 다르게 한국에서 익숙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히잡 착용을 쟁점화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어 면접에서의 히잡 착용과 관련한 질문은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 위원회에 채용될 경우 영어와 아랍어가 동시 가능한 직무에 투입되어 통·번역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므로, 히잡 착용 여부는 직무 능력이나 직접적인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인은 단순히 종교의 특성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복장의 탈착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바, 이 사건 면접 과정에서 히잡 착용에 대한 질문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 병력에 따른 차별

■ 신원진술서에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검사임용 차별

위원회는 10월 15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신규임용 지원 시 요구하는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2021년도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해 지원자에 대한 신원정보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원자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치료 이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였다. 진정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원하나 향후 신임검사 임용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진료를 미루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합하고 과거에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정보조사 내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개정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공무원 신원조사 항목에는 건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원조사 요청을 위한 신원진술서에도 건강에 대한 기재 사항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병력(病歷)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검사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능력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 임용의 최종적인 판단 시 후보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황과 업무 수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신 계통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 계통의 질병이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 불합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질병 여부만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임에도, 과거의 질병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2022년 검사 신규임용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교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게시 불허

위원회는 1월 22일 ○○대학교총장에게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 행위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대학교는 성소수자 모임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의 게시를 승인할 경우, 학교가 성소수자의 활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교내·외에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건학 이념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신청을 불허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피진정대학교의 이 사건 현수막 게시 불허 조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단순히 시설물 이용 제한을 넘어 학교 구성원들이 지지 의사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하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차별적이고 고립적인 환경을 조성할 여지가 크고, 그로 인해 예견되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중립학교로서의 정체성 훼손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피진정대학교가 주장하는 건학 이념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진정인이 신입생 환영 현수막 문장에 사용한 ‘성소수자, 비성소수자’라는 단어에서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라는 표현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절차적으로도 게시물에 금지되는 내용이나 형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상 담당자가 사전에 재량으로 표현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무자의 불허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나 다룰 수 있는 절차도 없다는 점 등에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대학교가 건학 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비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담은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조치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기독교 정신의 건학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임에 대한 홍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의 성별 표시로 인한 트랜스젠더 차별

위원회는 4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 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인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적 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과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인권위, 2014)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명(24.4%)이 신원 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등 성소수자들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해당 진정은 입법과 관련된 사안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성별 표현이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선거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무자녀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

위원회는 7월 2일 피진정인 ○○○○ 도지사에게 다문화가정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 자녀 유무 등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키르기스스탄 배우자와 2005년에 결혼하였지만 자녀가 없는데, 피진정인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모두 지급하는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다문화가정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 자녀가 없는 경우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에 대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이 다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 이후 ○○○○관할 각 시·군에 공문을 시달하여 진정인과 같은 경우(무자녀 다문화가정)에 대해 추가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2건의 피해 사례가 권리구제되었다.

■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차별

위원회는 9월 15일 △△△지사 및 ○○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5월 21일 □□시장과 △△△지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동 권고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외국인주민으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을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은 외국인주민이라고 다르지 않고, 사용처가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정되는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외국인주민이 지역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외국인의 경우 기본권 보장의 수준이 내국인과 동일할 수 없으며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따르지만, 외국인등록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조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외국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같은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것으로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부과되는 의무나 행동 지침은 외국인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재난기본소득 사업 취지와 외국인주민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차. 혼인 여부,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불인정

위원회는 1월 22일 피진정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제1순위 자격요건을 정할 때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자격요건으로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로 인정하면서, 이때 혼인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순위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자격요건은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배제하고,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거나 위장결혼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진정인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재혼부부의 전혼자 출생 자녀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편법의 경우 현재의 제도로 방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 교원해외파견자 선발 시 단신 부임을 조건으로 한 차별

위원회는 4월 28일 피진정인 ○○○○교육원장에게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 선발 시 지원자격에서 ‘단신 부임’ 조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를 선발하면서, 파견자로 선발된 자는 반드시 ‘단신 부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진정인과 같이 해외 파견 시 가족을 동반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교원들은 위 장기 파견자 선발에 지원할 수 없어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파견 시 동반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피진정인은 다수 파견국의 의료수준과 사회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낮아 동반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신 부임 조건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파견국 중 일부 아시아 지역 및 영어 사용 국가의 경우 안전망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아닌 안전망이 부족한 국가에 파견된 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단신 부임’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단신 부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 파견자가 동반 자녀의 교육 등의 문제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견자가 불성실한 복무 수행 등을 할 경우 피진정인은 파견자의 파견 활동을 중단하고 지원비를 반납시키는 방안이 있음에도, 일부 사례를 이유로 가족을 동반한 파견자는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예견으로 가족 동반의 경우 해외파견사업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2020년도 관련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단신 부임’ 지원자격 제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

위원회는 7월 30일 피진정인 ○○○○ 교육감에게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현 남편과 재혼하였는데 진정인의 친생자녀 2명, 현 남편의 친생자녀 1명으로 모두 3명의 자녀가 있다. 피진정인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재혼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출산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사업 추진의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진정인과 같이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통한 다자녀 가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재혼가정에 대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 취지가 반드시 “출산 장려”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보아, 피진정인이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재혼 등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은 2019년부터 2020년의 기간에 재혼 사유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카.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 내반슬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및 의무경찰 모집 제한

위원회는 8월 25일 피진정인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및 의무경찰 모집 시 ‘내반슬(오다리)’을 이유로 응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의무경찰 모집 시 신체검사에서 내반슬(오다리) 5cm 이상(차렷 자세에서 양다리가 5cm 이상 벌어지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을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의학계에서 내반슬 자체는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외상 병력이 없고 통증 병력이 없는 내반슬이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큰 차이 없는 생활 방식과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내반슬(오다리) 기준에 대해 완화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면 내반슬은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경찰공무원 채용 등에서 내반슬을 이유로 응시 기회 등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청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2020년 11월 26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하여 신체검사 세부기준(별표1) 중 기존 내반슬(오다리) 규정을 삭제하였다.

■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차별

위원회는 12월 3일 피진정인 ○○카지노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과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여)은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딜러이며, 근무시간에 피진정인들에게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만큼 흰머리를 염색하고 오라고 강요를 받았는데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사유서에 서명과 흰머리 염색을 강요받아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용모에 대한 기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요소인바, 고객이 흰머리를 하고 있는 카지노 딜러의 외형을 보고 딜러의 집중력이나 체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게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우려는 용모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것으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흰머리가 경험과 연륜의 풍부함,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딜러 업무의 수행에서 머리색이 불가피하게 요구 또는 제한되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흰머리의 여부는 카지노 딜러의 업무(게임 진행) 및 직무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흰머리를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용모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타. 전과

■ 소년법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부사관 모집에서의 차별

위원회는 11월 25일 국방부장관 등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관련 기관에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는 군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필기

시험 및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하였으나,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되는 불이익을 당하여, 신분에 의한 고용 등에서 차별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군인의 선발 및 훈련과 감독 등에 있어 이를 관할하는 당국의 재량권이 존중될 필요는 있지만, 「군인사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 외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67조의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 자격에 대한 법령을 적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피해자 등의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시에 다른 일반 응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입직 경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

위원회는 7월 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2018년 7월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연구원(전환공무직)들과 2018년 7월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된 연구원(채용공무직)들 사이에 발생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인 채용공무직과 전환공무직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전환공무직에 대해서만 등급별 자격기준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학위를 호봉으로 추가 인정하고, 명절상여금도 우대 지급함으로써 양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전환공무직과 채용공무직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게 된 배경에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방지라는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진정인과 전환공무직들은 공무원 보수기준표를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에만 치중하여 전환공무직들의 임금 보전책만 마련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이 사건 피해자들과 미래에 들어올 공무원 연구원들에게 전가하는 차별적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불합리하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하는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더 커져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인 가능한 정도의 차이라고 보기 어려워 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은 채용공무직에 대해 명절상여금을 전환공무직과 동일한 기준(기본급 120%)으로 지급하기로 노사합의(2020년 임금 교섭)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 배제

위원회는 7월 22일 ○○○보건소장에게 피진정인(○○○보건소 △△△△팀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보건소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으로 2019년 7월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같은 해 11월 4일 피진정인에게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시장에게 이미 진정인의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한 이후인 11월 12일 진정인의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시장에게 재송부하여,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있도록 지원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는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위원회는 8월 25일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임기제나 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 차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현역근무경력 등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하여, 임기제 및 명예진급 중령 등은 정년으로 만기 전역하는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중령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역복무실적 평가 시 배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기제 중령 등은 대대장과 같은 부대 지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복무 및 잔여근무 경력평가에서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그 차이는 필기시험 등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진급 형태와 유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이고, 현역복무경력 등을 중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불리함을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장기 복무한 전역군인의 전문성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만기 중령계급으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 등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 직군을 이유로 한 경영성과 평가급 지급 차별

위원회는 9월 15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지원직 직원을 배제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피진정회사 ○○○○ 주식회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중, 2018년 1월 피진정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인 지원직 직원인데, 피진정인이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소속 직원(일반직, 전임직, 지원직) 중 지원직들을 제외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원직과 일반직·전임직은 각각 채용 경로, 수행업무, 보수체계 등이 상이한 집단이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경영평가성과급 제도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기관 직원들의 1년간의 업무 수행 실적과 노력이 총망라되어 평가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지원직 직원들이 업무위탁 대상 시설물에서 경비, 미화, 조경, 객실, 제과, 질서유지, 경기 진행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일반직·전임직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지원직의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의 예산 증액 요구가 승인되어야 하는 등 예산상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피진정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약을 받는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대체로 전환 정규직(무기계약직)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예산상 제약을 차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경우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차별적 처우를 그대로 묵인하게 되어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차별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부담이 있다는 점 또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지원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차병원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위원회는 10월 15일 피진정인 ○○대학교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입사 이전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력 환산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진정인의 인정 경력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준은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고 수행한 입사 전후 직무 사이의 유사성 여부이며, 그와 같은 업무 숙련도가 현재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업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경력과 그에 속하지 않는 경력을 차등 대우한다면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성격의 자격 소지자 중 3차 의료기관 경력을 가진 직원에 대하여는 100% 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업무의 유사성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진정인은 현재 담당 업무와 이전 업무 경력 간에 실질적인 유사성, 연속성, 특수성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지 이전 근무지가 2차 의료기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전면 배제

하고 있어 과도하게 불합리한 대우로 볼 수 있고, ○○대학교병원은 해당 기준 변경 시 예산 부담을 호소하지만, 이는 경력 합산 인정의 최고 호봉 제한, 단계적 시행 등 피진정병원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고, 진정인 등에게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감내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6절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2013헌마214결정, 2015. 3. 26.)한 이후 진정사건에 대한 본안심리를 해오고 있다. 이후 행정심판 청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9년 4월부터 진정 사건 종결 통보 시 당사자에게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고지한 이후부터 행정심판 사건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19년 청구 건수는 2018년에 비해 244%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2019년과 비슷한 청구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 청구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누적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력보강, 효율적 처리 절차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표 2-2-18]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

연도	접수				처리(진정사건)				계
	진정 사건	정보 공개	기타	계	취소	기각	각하	이송 취하	
누계	431	39	32	502	49	188	48	35	320
2020	171	14	6	191	23	80	10	11	124
2019	163	15	18	196	13	44	26	22	105
2018	50	2	5	57	8	24	4	2	38
2017	28	1	2	31	2	29	4	-	35
2016	19	7	1	27	3	11	4	-	18

제7절 평가

2020년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9,301건으로 2019년보다 163건 증가하였으며, 권리구제 건수 또한 1,610건으로 2019년에 비해 569건이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권리구제율 역시 17.3%로 2019년에 비해 5.9% 대폭 상승하여 2019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진정사건 처리 및 권리구제 실적이 증가하였는데, 2020년 인권침해 사건 주요 권고 중 의미 있는 권고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검찰에 대하여 무분별한 출국금지 요청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적법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의자 경찰차량 호송 시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112 문자신고자 위치 확인과 관련하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장 경찰이 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영상 촬영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집행관이 부동산 집행을 최고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군의 경우 사관학교 생도들의 단체대화방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태 점검 등을 권고하였고, 코로나19 성금 강제 모금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의 전역 처분에 대하여 전역처분 취소 및 제도 정비 등을 권고하였다.

교정시설의 경우 진정 취하를 강요한 교도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고, 교정시설 내 일률적인 외부 도서 반입 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중단 이후 구체적인 위험성 및 필요성에 대한 평가 없이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배제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였고, 공공기관 경비조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과 관련하여 관련자 징계를 권고하였다.

교육기관과 관련해 학생 복장에 대해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학생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반성문을 여러 교사가 보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등을 하였다.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상 노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권고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요원이 업무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책상을 사무 공간이 아닌 복도에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주의 조치 등을 권고하였다.

출입국관리기관의 경우 부실한 난민신속심사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 심사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적극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발 방지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2020년 3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별 방문 조사 전문가 기획회의를 각 2회 개최하고 조사 대상 시설 및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4분기 중 분야별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시설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현장조사 진행이 어려워 아동양육시설을 제외하곤 방문조사 실시를 보류하였다.

팬데믹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전파되었으나, 그로 인한 영향은 불평등하여 인권취약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까지 작용했으며, 불평등이 소득과 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 젠더, 의료, 정보 등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다차원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인권 현안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차별의 해소를 위해 인권 관련 법·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근원적 개선 활동과 함께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하여 2020년 차별 분야 진정사건 권리구제율 33.9%로 전년(20.9%) 대비 크게 향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성차별과 관련하여, 여성 아나운서의 경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등 방송계 전반에 장기간 만연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하는 관행, 유급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가족수당 지급 시 장녀·차남 차별 사건 등 호주제도 잔재로 인한 성차별 관행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희롱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직위를 이용한 교제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예고한 사례, 연애 관계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과 발언을 한 사례 등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대학 내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 불허 사건 등에 대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장애차별에서 시각장애인과 농인(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였다. 관외투표 시 시각장애인용 편의 제공 문제나 국가 주도 온라인 교육과정 강좌에서 청각장애인용 자막 제공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에서도 참정권과 교육권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의가 있다. 통장 개설 사안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였다.

정치인 비하 발언의 경우 개별 피해자가 아닌,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모욕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이를 인격권을 침해한 괴롭힘으로 보았다. '정신의료기관에 외부인 출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현장조사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진정사건 권고 등 권리구제 실효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경우 모집·채용에서 특정 나이 이상 또는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보험 가입, 공모전 참가 자격, 체육시설 이용 배제 등과 같은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제한과 관련된 진정이 많았다. 진정 직업 자격 등 직무 성격상 나이 제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령 기준에 따라 고용이나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회는 일관되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대부분은 이를 수용하였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 진정의 경우 현대사회의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사건이 많다. 외교부 여권과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는 동일 사업장에서 공무원 또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여와 복리후생, 경력 인정 그 밖의 각종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였다.

종교, 병력, 출신 국가, 가족 상황, 신체조건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차별 진정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부교수 승진 대상 제외 시정 권고, HIV감염인 침상 표지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차별 시정 권고 등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법상 진정사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중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 유도과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차별 시정 대상의 지평을 넓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19가지 차별 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 차별사건이 2018년(169건)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이 생각하는 차별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 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차별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의 입법 실현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차별 진정사건 조사의 전문성 제고 및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권상담과 관련하여 2020년에 상담위원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인권전문 상담사와 전문상담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효율적인 상담위원 제도를 위해 내담자의 수요가 많은 법률, 노무, 인권 일반 분야로 집중하고 상담 예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수어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조정사건은 6건 접수하여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였다. 2019년 조정 불응이 7건으로 조정위원회가 2회 개최된 것과 비교할 때 조정위원회 개최 비율이 높아졌고, 이 중 조정 성립은 2건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개선과 1인 단독조정제도 도입 등 조정제도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제26조에 근거해 인권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위원회는 인권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인권교육의 전문화와 체계화,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교육 활성화 등의 요구와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시의성·전문성·활용성 높은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주요 인권 분야의 인권교육협의회 운영과 협력 강화, 모든 교육 운영에 혐오차별의 이해 과정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교육 인원을 축소하면서도 교육과정 다양화, 원격교육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고 질 높은 인권교육을 추진하였다.

인권교육

위원회는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활성화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도입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환자의 인권> 교재, <노인 인권교육>

교안, 아동인권 온라인 콘텐츠 〈차별의 이해〉 교안, 〈노동인권의 이해〉 교안, 온-오프라인 공용 콘텐츠(14종), 〈인권교육 기본용어〉 개정증보, 유럽인권재판소 혐오표현 관련 판례 번역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콘텐츠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인권교육의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광역시·도 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영유아인권교육협의회, 한국인권교육포럼 등의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을 내실화하였다. 청소년 인권교육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유엔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번역 보급하여 청소년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추진하였다.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연수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였고, 설립 대상 부지와 기본설계비를 확보하였다. 인권교육원 설립은 향후 설계 및 설립 공사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다.

홍보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블로그 〈별별이야기〉에는 17명의 온라인 서포터즈 별별기자단과 함께 580건의 콘텐츠를 게재하였으며,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스토리 등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슬기로운 인권생활〉 시리즈 등 인권 관련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여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위원회의 정책권고와 조사 결과, 사업과 활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총 192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위원회의 결정과 사업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지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소식을 담은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를 매월 발송하여 주요 보도자료와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알리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9회 인권 보도상을 시상하여 언론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총 9개 기관 및 개인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가. 인권교육 제도화

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국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노동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요양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과 기능이 유사하고, 노인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인권교육이 도입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 종사자 인권교육 도입을 관계부처에 권고함으로써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인권교육 내용의 대범주를 설정하고 지식, 가치·태도, 기능·행동이 통합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교수, 교원, 활동가 등 다양한 인권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 인권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개정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대학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등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인권강사 양성 및 위촉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인권강사의 역할이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위해 중요해지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 인권교육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는 위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양성한 인권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있으며, 1~2년 단위로 재위촉 심사를 거치는 등 인권강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강사양성과정 학습자는 매년 3월 초 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강사 양성은 장애·아동·노인 등 분야별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분야를 달리해 공모하며, 대상자 또한 각 분야 현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은 기본1·기본2·전문·심화 4단계로 구성되며 총 12일간의 집합교육과 단계별 선수학습(사이버인권교육, 지정도서 등)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다. 집합교육은 4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기본과정에서는 인권 일반 및 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인권의 이해(총론), 자유권·사회권·평등권의 이해, 국제인권 체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이해 등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전문과정과 심화 과정은 분야별 직무 연관성을 높여 교과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강의 시연 및 평가를 통해 실제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양성과정이 종료되면 강의시연 평가를 거쳐 강사를 위촉하고 있다.

다.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공간이다. 특히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권 전문성과 현장성을 교육과정에 녹여냄으로써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권 문화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구)관세청 통관센터를 활용하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유재산기금으로 2억 2600만 원의 기본 설계비를 확보하였다. 향후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증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안 검토 후 설계, 시공, 감리 등 설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2020년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는 평등법 입법 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2020년 우리 위원회와 지자체 간 인권교육 계획 공유, 지자체 인권교육 협력 방안, 인권교육담당자 및 인권보호관 연수과정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협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위원회와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지자체 인권교육담당자 및 인권보호관 연수과정은 지자체 인권교육 및 조사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 워크숍에서 연수과정으로 확대하여 인권역량 향상을 추진하였다. 교육 대상 범위도 기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로 확대하였으며, 업무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2020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는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참여하는 ‘군인권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간 인권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군인 인권의 이해> 조기 개설·활용과 군 인권교육 전문가사 풀(Pool) 공동 활용, 국방부-인권위 공동 <국군 인권교육 교재> 개정 등 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를 발굴

하였다.

학교 분야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위원회와 교육부, 광역시·도교육청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제14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모색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교장·교감 인권리더십 연수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연수 등을 진행하는 등 학교 분야 인권 역량 강화 지원 등 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위원회는 2019년 10월 대학인권센터 역량 강화 지원 및 인권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을 위해 62개 대학인권센터와 함께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제2차 협의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회의로 개최하였고, 대학별 인권증진 업무 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20)> 관련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의 실질적 이행 등을 논의하였다. 2020년 1월에는 부산대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2020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전국 44개 대학인권센터 및 인권위 담당자 등 87명이 참석하여 대학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들 간 업무 경험과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1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회는 다른 교육기관 소속 강의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총 2회 실시), 교육자료 개발·보급(교안 1종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교육기관인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교육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체계와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이돌보미 등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 서비스에서 빚어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의를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대상 인권

교육을 수행하는 강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아이 돌봄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안을 개발하였고, 교안을 토대로 2020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해 아이돌보미 대상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강의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을 총 17회 실시하였다.

[표 2-3-1] 2020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분야	일자	인원	참석기관 및 학교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6. 24.	16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군인권교육 협의회	6. 30.	14명	국방부, 삼군 및 해병대, 위원회(인권위 주관)
	12. 29.	16명	국방부, 삼군 및 해병대, 위원회(국방부 주관)
학교인권교육 협의회	7. 2.	26명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교육청, 위원회
대학인권센터 협의회	12.17. (서면회의)	62개 대학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 순천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국대(서울), 동국대(경주), 동양대, 동의과학대, 목포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체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위원회는 6월 25일 인권교육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평등법 입법 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하였다. 인권교육전문위원회는 업무 과제 발굴, 업무계획 수립, 주요 현안 대응 방안 마련, 업무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월 6일 인권교육전문위원,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자체 인권 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한 제19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개최해 위원회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과제를 논의하였다. 논의한 내용은 2021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고 중장기 추진계획에도 고려할 것이다.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가. 인권교육 실시 현황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고도화 및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사무소에 인권교육 센터 공간 마련 및 운영, 강사 양성 시스템 정비를 통한 인권강사 위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교육을 전면 실시하였고, 기존 의무교육 위주의 집합교육을 2일 이상 전문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인권의식 확산 및 전문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총 2,177회, 25만 7,949명에게 실시하였다. 2019년까지 실시하던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의무교육 중단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권교육 이수자 수는 감소

하였으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동 활용기관을 확대하여 2019년 30개 기관에서 2020년 6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인권교육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표 2-3-2]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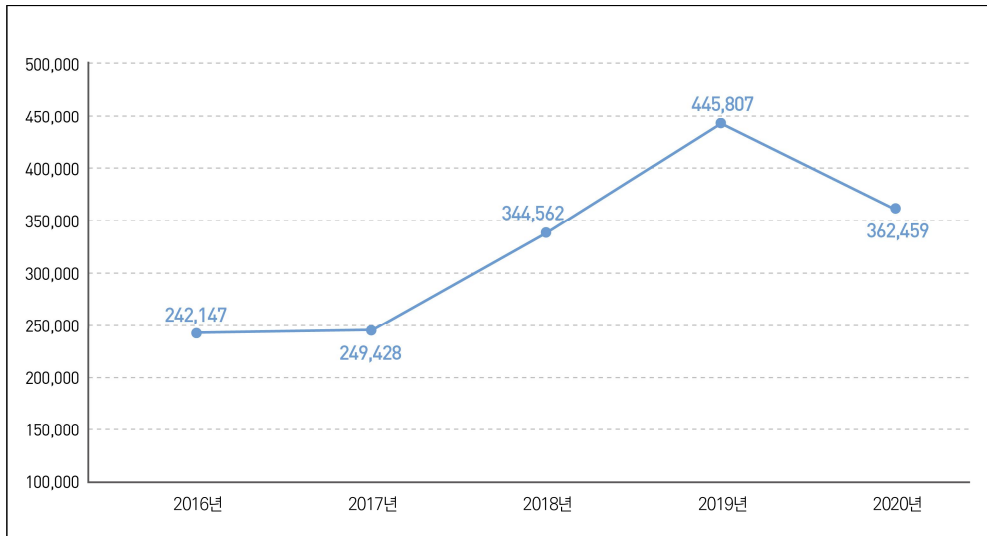
(단위: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인권교육		인권특강		(나라배움터) 콘텐츠공동 활용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계	37,508	2,744,954	3,961	182,504	3,396	75,404	6,547	991,732	17,865	1,161,694	5,739	333,620
2020	3,443	362,459	150	5,011	163	2,700	1,131	220,392	733	29,846	1,266	104,510
2019	6,282	445,807	330	12,527	556	10,694	1,363	261,505	2,699	107,372	1,334	53,709
2018	5,189	344,562	427	19,957	484	8,542	1,133	166,183	2,116	106,189	1,029	43,691
2017	4,447	249,428	494	28,916	533	10,974	915	79,799	1,968	101,482	537	28,257
2016	4,247	242,147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545	34,528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그래프 2-3-1]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나. 다양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1) 공공 분야 인권교육

위원회는 2010년부터 인권교육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인권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2016년 이후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공동 운영 방식으로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검찰 대상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개설하여 전국의 인권감독관 69명을 대상으로 1회 3일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장애인 인권, 이주·다문화 인권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위주의 인권특강을 개설하여 전국의 인권감독관, 인권전담검사, 검사, 수사관 206명을 대상으로 6회 1일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군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공동으로 육군·해군·공군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관양성과정과 군 간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해 왔다. 2020년에는 일선 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군인권교관양성과정을 운영하여 121명의 인권교관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군대 내 인권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군 교도관 22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군 지휘관이 군대 인권존중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2017년 국방부와 협의해 육군 지휘관과정(대령·중령)에 인권특강을 포함하도록 한 이래 2020년에도 이를 지속하여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친화적 경찰 업무 수행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매년 경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선정·운영됨에 따라 교육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국가공권력 집행자로서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의 점점에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곧 인권보호로 나타나므로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역량향상과정을 개설하여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0명이 참석하였다. 지방직 공무원은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앙부처는 인권교육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직 공무원의 인권교육 활성화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돌봄 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정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총 15명(지방의원 14명, 공무원 1명)이 참석하였다.

[표 2-3-3] 2020년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횟수	인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인권역량 향상과정	2	20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
검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	1	23	인권감독관
인권특강	6	206	인권감독관, 인권전담검사, 검사, 수사관
군 인권교관양성과정	2	51	군 인권교관
군 인권감수성향상과정	1	22	교도관
군 지휘관과정	12	748	군 중령·대령
경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	2	33	(광주·전남)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등
돌봄 노동인권 지방의회 인권리더십 과정	1	15	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2) 학교 분야 인권교육

학교 분야 인권교육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일부 교육청에서도 교사 연수과정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도 학교 분야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 연수과정 직접 운영 또는 공동 주최 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2020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대학인권센터의 인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어 ‘대학인권센터 직무역량 향상 연수과정(1·2·3기)’을 기획·운영하였다. 참가자 접근 편의를 위해 1기 연수과정은 본부 인권교육센터, 2기는 대전 인권교육센터, 3기는 부산 인권교육센터에서 각 2일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처리 이해, 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과정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지속적인 교육 제공과 심화·전문과정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많아 2021년에는 인권사무소 협력을 통해 연수과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중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4개의 권역(서울·경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으로 나누어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인권리더십과정을 운영하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등으로 초·중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대상 인권교육가과정을 운영하였다.

인권사무소에서는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정, 노동인권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인권교육가 역량향상과정,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표 2-3-4] 2020년 학교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횟수	인원	대상
2020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1	86	대학인권센터 및 인권위 담당자
교장·교감 인권리더십 연수과정(1-4권역)	4	90	전국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대학인권센터 직무역량 향상 연수과정(1-3기)	3	51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연수	1	18	전국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1	17	법학전문대학원생
2020 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4	58	부산대학교 학생
2020 학교인권교육가 역량향상과정	1	11	대구 경북지역 노동인권 교사
대구 경북지역대학 인권업무 담당자 워크숍	1	13	대구 경북지역 대학 인권센터 담당자
2020 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	28	강원지역 유치원교사

3)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위원회는 그간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 해당 분야 종사자 교육이 의무적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 4시간 위주의 인권교육을 중점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정신건강 분야는 2009년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에 따라 전국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노숙인 분야는 「노숙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2013년 중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 분야는 특히 2018년부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3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이러한 의무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 분야 교육대상을 해당 분야 시설종사자에서 관리자, 업무담당자, 해당 분야 인권강사로 구분하고, 교육시간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4시간에서 1박 2일로 연장하였으며, 교육방식도 ‘줌(Zoom)’ 시스템 등을 통한 원격교육 활용 등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 분야 인권교육의 전문화 등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리더십 과정은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7회, 518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권 지식 등을 교육하였으며, 역량과정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권 지식을 실무 위주로 4회, 82명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인권교육가 과정은 사회복지와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51명을 대상으로 각종 특강 등에 필요한 인권 지식과 강의 방법 등을 3회 과정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2020년에는 시민분야 인권교육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인권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 직무역량과정을 개설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련된 인권 실사 등에 대하여 2회 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포츠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강사역량과정을 개설하여 1회, 3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6회, 2,237명에 대하여 사이버 형태로 전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3-5] 2020년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횟수	인원
사회분야	사회복지 인권리더십과정	7	518
	사회복지 인권역량과정	4	82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	2	33
	정신보건 인권교육가과정	1	18
시민분야	기업과 인권 직무역량과정	2	70
	스포츠 인권교육가과정	1	39
의무교육	노숙인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6	2,237

4) 인권특강 및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위원회는 인권의식 확산과 인권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에 부응하는 인권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강교육 요청이 대폭 감소하여 공공·학교·시민 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733회 실시하여 2만 9,846명이 수료하였다.

[표 2-3-6] 최근 5년간 인권특강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계		공공 영역		학교 영역		시민 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0	733	29,846	176	7,024	330	14,379	227	8,443
2019	2,699	107,372	406	25,844	1,725	63,463	568	18,065
2018	2,116	106,189	385	41,681	1,180	44,841	551	19,667
2017	1,968	101,482	327	37,136	1,191	39,681	450	24,665
2016	1,760	96,302	254	28,793	888	42,401	618	25,108

아울러 위원회 인권도서관과 각 지역 인권체험관을 방문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체험관 폐쇄와 신청·취소를 반복하여 총 163회에 걸쳐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방문 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업무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교육의 친화력을 높이고, 체험식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2-3-7] 최근 5년간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계		공공 영역		학교 영역		시민 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0	163	2,700	24	295	34	474	105	1,931
2019	556	10,694	81	1,761	242	4,601	233	4,332
2018	484	8,542	92	2,195	230	3,672	162	2,675
2017	533	10,974	63	1,551	273	4,624	197	4,799
2016	380	5,930	19	383	284	4,473	77	1,074

다. 인권강사 양성 및 강사역량강화과정

위촉 인권강사단 현황 및 국내외 정책 변화와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4개 분야(기업, 노숙인, 스포츠, 장애 분야)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인권경영 제도화에 따른 ‘기업과 인권’ 교육 수요 증가(2년 연속 양성),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안정적 운영, 스포츠계 선수 인권보호체계 등 직권조사 결정 관련 적극적 인권교육 필요, 2019년 장애 분야 인권교육 연수 과정 후속으로 심화된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필요성을 기초로 교과를 편성하였다. 교육생 선발 절차를 강화하여 1차 서면, 2차 영상 에세이를 통해 316명 중 87명을 선발하였고, (최종) 심화과정 수료자 71명 중 강의 시연 평가를 통해 위촉된 강사는 30명이다.

인권강사 양성 못지않게 위촉된 인권강사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역량 강화는 최근 인권 동향 파악 및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인권의 이해, 혐오와 차별, 교육대상별 인권교육 준비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었다. 또한 ‘강의시연워크숍(마이크로티칭과정)’이 새롭게 도입되어 인권강사가 강의 시연 후 동료 및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더 나은’ 인권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은 총 16회,

244명이 수료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원격으로 진행되었고, 더불어 인권강사가 원격 시스템을 활용한 강의 기술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강사 위촉관리는 최초 위촉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재위촉심사를 받고, 이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위촉심사를 거친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위촉심사를 위한 필수요건을 역량강화과정 50시간 수료(필수과정 3회 21시간, 자율과정 29시간)로 완화하였다. 2020년 12월 위촉 종료 예정자 137명 중 88명이 필수요건을 충족하였고, 심사를 통해 73명이 재위촉되었다.

[표 2-3-8] 2020년 강사역량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역(운영기간)	횟수	수료인원	교육 대상
인권강사 역량강화 (필수과정)	서울(5. 20. ~ 9. 11.)	16	244	위원회 위촉 강사 (분야 통합)
	부산(5. 28. ~ 6. 19.)	4	84	
	광주(5. 27. ~ 8. 26.)	4	86	
	대구(5. 27. ~ 7. 9.)	5	86	
	대전(6. 11. ~ 7. 16.)	6	68	
	강원(6. 2. ~ 9. 18.)	3	37	
	제주(5. 22. ~ 9. 25.)	3	18	

라. 사이버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상시 학습체제 구축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접근성 확대, 자기주도적 사이버학습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 관련 소양 함양 및 전문 역량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05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를 개설하여 2006년부터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 위원회는 사이버 인권교육센터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권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나라배움터’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접근 편의를 위해 교육사랑

연수원을 통해 사이버 직무연수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23개 과정을 총 1,266회 운영하였다. 이수 인원은 22만 392명으로, 2019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과정(이수 인원 11만 500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점을 감안했을 때 상기 과정을 제외한 전년도 15만 1,005명보다 46% 증가하였다. 이처럼 사이버 인권교육 이수 인원이 증가한 요인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웹 접근성 정기 심사로 이용자 편의성 개선, 교육관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고도화 사업 실시로 중단 없는 기능 개선 등 이용자·학습자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 말부터 이용 중단이 예고된 구형 플래시 콘텐츠 파일을 HTML5 파일로 신속히 교체, 제작하여 사이버 과정을 개설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공동 활용도 사이버 인권교육 이수 인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 활용은 2017년 11개 기관, 2018년 25개 기관, 2019년 30개 기관, 2020년에는 자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보유한 공기업 60개에 위원회가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실제 60개 공기업은 11과목을 473회 운영하여 총 13만 1,153명이 이수하였다.

[표 2-3-9] 최근 5년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현황

(단위: 명, %)

연도	이수 인원(명)				이수율(%)		
	계	공직자	교사	시민	공직자	교사	시민
2020	220,392	80,667	5,606	134,119	80	83	87
2019	261,505	56,140	5,663	199,702	82	82	86
2018	166,183	85,592	6,627	73,964	78	91	76
2017	79,799	33,738	2,348	43,713	79	80	76
2016	71,434	46,226	13,066	12,142	80	81	59

4. 인권교육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인권의 주요 개념과 가치를 전달하고 교육의 장에서 공유되는 인권교육 콘텐츠는 시의성과 전문성 및 활용성이 높은 콘텐츠가 개발·보급될 때 교육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을 초기부터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 발간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교육 콘텐츠는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인권교육 환경과 교육자·학습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총 164종(공공 31종, 학교 28종, 시민 105종)을 개발하였다. 인권교육 콘텐츠는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유관기관·단체·인권강사 등의 교육자와 공공 도서관·온라인 사이트 등에 제공 및 보급해 오고 있다.

2020년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환자의 인권>교재, <노인 인권 교육> 교안, 아동인권 온라인 콘텐츠, <차별의 이해> 교안, <노동 인권의 이해> 교안, 온·오프라인 공용 콘텐츠(14종), <인권교육 기본용어> 개정 증보, 유럽인권재판소 혐오표현 관련 판례 번역물 등을 개발, 보급하였다.

나.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 · 보급

1) 웹드라마 제작·보급

웹드라마는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을 일상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 시청자들이 인권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임으로써 차별과 침해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2018년 <진정하세요>, 2019년 <비밀의 비밀>에 이어 2020년에는 아동보호



웹드라마 <차타공인>

시설 청소년에 대한 편견, 일상에서의 성차별, 스포츠 인권 등을 다룬 <차타공인>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보급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게시된 <비밀의 비밀>과 2020년 11월 게시된 <차타공인>의 누적 조회수가 9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보급 또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특히 <차타공인>은 수어본뿐 아니라 영어본으로도 제작, 보급하여 외국인 사용자까지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2) 인권작품 공모전

위원회는 인권이 생활 영역 전반에서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0년 인권작품 공모전 공모 주제는 ‘차별반대’ ‘차별예방’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년도에 실시한 ‘포스터’, ‘카드뉴스’ 부문 외에도 ‘인권에세이’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일반부 658편, 청소년부 413편 등 총 1,071편의 작품을 접수하였다. 그중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총 43편을 선정, 위원장 표창을 하였다. 선정된 포스터 부문 수상 작품은 엽서로도 제작하여 인권도서관·인권사무소·시민에게 배포하였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인권주간 전시회에 전시하였으며, 위원회의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2-3-10] 2020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부문	수상 내역	작품명	
포스터	일반부	대상	멈추면 시작됩니다
		최우수상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수상	칭찬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비원의 인권도 밝게 비춰주세요
	장려상	모두 똑같습니다	
		차별갑질	
		이제 제법 한국인 같네?	
	청소년부	대상	차별하면 안돼요
		최우수상	인권은 사과입니다
		우수상	당신에겐 손가락 상대에겐 살인무기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어요			
장려상		인권은 외침이다	
	성차별 5초만		
카드뉴스	일반부	대상	불편해도 관촬아
		최우수상	나는 이백중입니다
		우수상	없습니다
			입뿐만 아니라 눈마저 가린 마스크
	장려상	남녀평등 가사분담	
		당신의 차별농도는 '맑음' 입니까? 마음을 잇는 엄마	
	청소년부	대상	저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최우수상	탈북민의 달지 못할 편지
		우수상	저희도 남들과 같은 엄마, 아빠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장려상		검색창 속의 세상	
		임산부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인종차별을 지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부문		수상 내역	작품명
인권 에세이	일반부	대상	나의 분대장
		최우수상	이웃집 김 씨 아저씨
		우수상	두 계단
			그 해 겨울이 따뜻했던 이유
		장려상	미등록 산타클로스의 위태로운 선물배달
			인권 무시의 전이
	빨간 조교모자		
	청소년부	대상	물 밖의 물고기
		우수상	꽃이기를 거부한다
			제 친구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슬펐고 별들은 울었다
		장려상	게임 속 나의 인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삶 속의 흑백논리			
나의 일부			

5. 인권도서관 운영

인권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도서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02년 별도의 소속 기관인 인권자료실로 개관하였다. 2009년 위원회 조직 축소 과정에서 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에는 인권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인권교육기획과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 서비스, 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보존,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인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3-11]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자료 유형	소장 현황	자료 유형	소장 현황
단행본	49,649권	전자저널	1,139종
비도서자료	9,694점	Web-DB	9종(학술정보 7종, 법률정보 2종)
연속간행물	67종	전자책	2,838권

[표 2-3-12] 위원회 간행물 원문 이용 현황(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다운로드 건수	13,177건	9,283건	8,694건	4,661건	4,602건

인권자료 이용 확대와 편의 제공을 위해 자료회원과 단체(학교, 기관, 단체 등)에 외부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고,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장서 개발 정책과 비대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2-3-13] 인권도서관 이용 현황

구분	자료 대출(도서, 비도서)		도서관이용자
	내부이용자	외부이용자(개인, 단체)	
2020년	482명 1,801권	152명 539권	25,157명

지역민에게 인권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각 인권사무소와 협력하여 분관(부산·광주·대구·대전분관 2015년 개관, 강원분관 2017년 개관)을 운영하는 등 인권정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3-14] 인권도서관 분관 장서 현황

(단위: 권, 점)

구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합계	2,076	2,161	2,377	2,090	1,610
단행본	1,753	1,842	2,034	1,771	1,341
비도서자료	323	319	343	319	269

장서 증가에 따른 서고 과밀화 및 부족한 이용자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인권도서관 확장 공사를 실시하여 장서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장애인 접근성 증대 등 쾌적한 이용자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인권영화 상영회, 인권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인권정보 활용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실을 확장하고 환경을 개선하였다.



다양한 인권정보를 통해 국민이 인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권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인권도서관 공간 확장 공사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한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매년 전국 도서관과 함께하는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행사는 미개최하고, <2020 어린이 인권 도서 목록>을 제작하여 전국 15개 도서관 등에 배부 하였다.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인권전문학교, 부서별 교육, 인권감수성과정, 대상별 역량강화과정 등 총 1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801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인권전문학교는 조사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 기법, 조사의 이론 및 실제,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조사관학교’, 국내외 인권 현황에 대한 주제 및 교육 기획·설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인권 정책·교육학교’를 진행하였다.

인권감수성 과정으로 ‘인권근현대사 이해’ 교육이 진행되었다. 위원회 발간 도서인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2019)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인권활동가, 인권 분야 교수 등 외부 인권옹호자를 통해 인권사상, 인권법제, 소수자, 새로운 인권 이슈 등을 주제로 6회 운영하였다.

대상별 교육과정으로는 ‘신규직원역량강화’, ‘리더십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부서별 전문교육 운영을 통해 각 부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11개 부서에서 13회 진행하였다.

법정의무교육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나라배움터’ 플랫폼 등 사이버 교육과정과 연계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2-3-15] 2020년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현황

(단위: 명)

프로그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인원
조사관학교 (차별시정국)	6.22.~6.24.	바비엡 교육센터	- 차별사건 조사 이론 및 실제, 보고서 작성 요령 - 조사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기법 및 실무 역량 학습 - 조사관으로서 필요한 소양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 방안 논의	61
조사관학교 (침해조사국)	7.8.~7.10.	PJ호텔	- 인권침해사건 조사 이론 및 실제, 보고서 작성 요령 - 조사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기법 및 실무 역량 학습 - 조사관으로서 필요한 소양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 방안 논의	57
신규직원 역량강화	9.3.~9.4.	HJ비즈니스 센터	- 신규직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 및 실무역량 학습 - 위원회에 대한 이해 및 주요기능, 인권업무 이해 향상	24
인권정책· 교육학교	9.24.~9.25.	바비엡 교육센터	- 정책교육국 담당자의 공통역량 과정과 교육업무 중심의 전문성강화 과정으로 분리운영 - 인권교육 기획과 과정 설계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인권정책교육 업무 관련 상황변화, 주요 쟁점 검토 및 공유 -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 방안 논의	46
인권감수성 향상 (대한민국 인권근현대사 이해)	10.23.	인권 교육센터 (온·오프 병행교육)	- 헌법의 제정 및 개정역사를 통해 본 인권	111
	10.26.		- 4차 산업혁명과 인권 & 인권의 미래	23
	10.28.		- 노동의 시민권과 노동차별	109
	11.5.		- 한국여성운동사와 여성인권	77
	11.6.		- 한국의 인권 100년	80
	12.3.		- 한국 인권사의 관점과 조망 & 기후위기와 인권	78
간부급 역량강화	11.20.	인권위 중회의실	- 리더십의 역할 및 강화 방안 - 변화된 환경과 인권위 역할 - 새로운 인권위 구상과 추진전략	17
부서별 전문교육	부서별진행	-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전문교육 진행 - 총 11개 부서, 13회 운영	118
법정의무교육	6.15.	인권 교육센터 (온·오프 병행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	241
	6.15.		- 아동폭력예방교육	254
	6.25.		성인지 관점으로 성희롱예방교육	264
	6.25.		- 성인지 관점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237
	11.24.		장애인식개선 교육	249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총 192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표하였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과 논평, 인권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국내외 주요 활동 등이었다. 이를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 요청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등 핵심적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인터뷰와 같은 기획보도 형태로 널리 알렸으며, 플랫폼노동자, 코로나19와 인권, 미등록 이주아동, 스포츠 인권 등의 주요 권고 발표 시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인터뷰 등을 기획하고 지면 반영 및 방송사 뉴스 제작을 유도하는 등 홍보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 한편 체육계 인권침해 직권조사, 위원회 소관 비영리단체 감독 등 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부정적 보도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국회에 대한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 등 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및 현안 대응과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 등을 개최하였다. 이는 언론의 이해와 주목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빠르고 명확하게 밝히는 데 일조하였다. 아울러 출입기자와 상시적 소통을 통해 위원회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했으며, 인권보도준칙 확산, 언론 분야 인권 감수성향상과정 지원 등 언론인 인권의식 제고에도 앞장섰다. 한편 기사 스크랩, 주 단위 언론 동향 보고 등 위원회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으로 위원회 내부 소통 강화에 기여했다.

나.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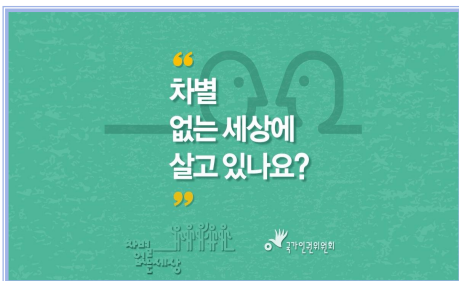
기존의 블로그와 <휴먼레터>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뉴미디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를 위원회 정책 고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발송하여 위원회 주요 보도자료와 다양한 활동 내용을 알렸다. 17명의 온라인 서포터즈 별별기자단과 함께 580건의 홍보 콘텐츠를 블로그 <별별이야기>에 게재하였으며, 이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적극적이고 폭넓은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2-3-16] 홍보 매체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블로그 방문자	537,487	632,956	646,454
카카오톡 구독자(누적)	3,849	5,045	6,009
유튜브 구독자(누적)	1,785	2,630	13,149
웹드라마 조회수	378,698	736,658	912,624



차별 인식 개선 캠페인

특히 차별에 관한 인식조사, ‘평등법’ 내용 및 제정 필요성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카드뉴스·영상·캠페인 이미지 등으로 제작하였으며, 온라인·옥외 전광판·버스 등에 송출·게재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청사 앞 전광판을 통해 주요 결정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인권상 공모 및 조정제도 등을 홍보하였다.

위원회는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 인권을 알리는 한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및 다양한 정책과 주요 성과를 홍보하였다. 위원회 각 부서의 홍보 수요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 ‘인권의 날’ 행사 진행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오전 10시 온·오프라인 병행(위원회 유튜브 채널, 위원회 10층 교육센터)으로 ‘2020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0 인권의 날 기념식

2020년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중계를 중심으로 개최

하였다. 위원장 기념사, 김명수 대법원장·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및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의 축사에 이어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남북여성합창단 여울림의 축하 공연을 진행했다.

2020 대한민국 인권상은 홍조근정훈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위원장 표창 개인 3명, 단체 4개 등 총 9명이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권상 홍조근정훈장은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원전 방사능 피해, 라돈침대 건강 영향조사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진실 규명과 국가 배상을 이끄는 활동을 전개해 온 백도명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라. <인권> 잡지 발간

<인권> 잡지는 2003년 8월 월간으로 창간되었고, 2007년부터 격월간지로 변경된 이후 2020년 12월 통권 131호까지 발간되었다.

<인권> 잡지는 인쇄본 3,600부를 발행하여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사회복지 시설, 중·고등학교 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우선 배포하였다. 또한 인쇄본 잡지를 웹진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총선 관련 선거정치와 인권,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관련 아동권, 평등법(안) 추진 등 우리 사회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매호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인권이 자란다’, ‘미래 니얼이 말하는 인권’ 등을 통해 새로운 인권 영역, 다양한 관점과 논의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기구가 발행하는 인권 전문지이면서 교양지를 지향하며, 인권상당 사례와 위원회 소식뿐 아니라 읽을거리가 풍부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권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한편 <인권>지는 웹진, 목점자 도서로도 발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표 2-3-17] 2020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호 수	특 집	기타 주요 기사
1/2월호 (통권 126)	- 전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중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을 지켜주세요	- 무엇이 여성을 위협하는가 -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나
3/4월호 (통권 127)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정치가 필요한 이유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현장 정치에 19금은 없다 감정노동자의 인권
5/6월호 (통권 128)	- 민주화 운동 속에 핀 꽃, 인권 - 역사를 품다. 오월어머니회	- 깨끗한 물과 위생관리 -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대전환의 씨앗을 흩쳐보다

호 수	특 집	기타 주요 기사
7/8월호 (통권 129)	- 평등법 제정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 차별에 굴복한 14년 평등법으로 멈춰야 할 시간	- 시도 차별하나요 -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노동자
9/10월호 (통권 130)	-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 ‘공정성’은 공정한가? - 엘리트 체육, 그리고 사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11/12월호 (통권 131)	-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섬에 갇힌 이주 노동자	- 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마. 인권보도상 시상

위원회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의 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하여 2008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하였고, 2012년부터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0년 제9회 인권보도상 심사위원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차별시정총괄과장·홍보협력과장 2명의 내부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 총 33건이 접수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일간지 10건, 방송 17건, 통신사 1건, 인터넷 4건, 잡지 1건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표 2-3-18] 2020년 제9회 인권보도상 당선작

구분	매체명	보도 제목	기자
대상	EBS	EBS 연중기획 〈가족의 탄생-가족을 구성할 권리〉 - 혈연 외에 1인가족, 동거, 입양, 그룹홈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 조명	이상미, 송성환
본상	서울신문	열 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 청소년 미혼부모 중 사법처리 사례 전수조사해 처벌은 대부분 여성이 받고 있는 문제 조명	이하영, 김정화, 이근아
	제주 CBS	대마도가 품은 '제주 4.3 수장학살' - 제주 4.3 당시 수장학살 희생을 목격한 일본 대마도와 인근 도서 주민 증언 채록해 보도	이인, 고상현
	국민일보	'죽음조차 가난했던 무연고 사망의 기록' 외 - 무연고 사망자와 주변인의 증언, 기록 통해 무연 인생이 빈곤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보도	전웅빈, 김유나, 정현수, 김판, 임주언
	서울신문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아드림의 배신 -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학대피해 결혼이주여성, 혼자 남은 이주아동 등의 문제를 현지 유가족, 당사자 인터뷰 통해 심층 보도 - 학대피해 후 본국 돌아간 여성 생애사 취재해 결혼이주여성 문제 조명	유대근, 홍인기, 김형우, 박윤슬, 이하영, 기민도, 나상현,
	한겨레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 기자가 한 달간 요양보호소에 근무하며 환자, 보호사, 가족, 빈곤 등의 인권문제를 다각도로 취재해 보도	권지담, 이주빈, 황춘화, 정환봉

바. 결정례 동영상 제작·배포

위원회는 2014년부터 결정례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이던 결정례를 재연 드라마, 애니메이션 형태 등으로 제작해 위원회 결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2020년은 유튜브 대담 형식을 차용하여 군대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권력관계에 기반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었는데, 결정례 설명과 함께 결정 과정이나 위원회의 역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였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따른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대응, 결정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에도 공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교육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CD로 제작·배포하였다.

[표 2-3-19] 2020년 결정례 동영상 내용

분야	내용
군 인권	부대장의 사적 지시로 인한 인권침해
공공기관장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공공기관장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제3절 평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상황 실태조사〉,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결과는 내실 있는 인권교육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에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개선 추진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해 광역시·도 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돌봄분야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한국인권교육포럼 등을 개최하여 업무 계획 공유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수과정 개최를 통해 직무 관련 인권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인권교육 기획-교육과정 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각 분야의 자립적 인권역량 구축과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인권전문가 및 활동가와 협력하여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한층 힘을 쏟았다. 질 높은 인권교육을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것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다. 향후 인권 관련 사회 현안과 교육 현장의 수요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 또한 필요하다.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는 위원회의 정책 현안, 조사 및 구제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인권 의제를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도자료로

배포·공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등 핵심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인터뷰 등 기획보도 형태로 널리 알렸으며, 플랫폼노동자 인권, 코로나19와 인권, 미등록 이주아동, 스포츠인권 등의 주요 권고 발표 시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인터뷰 등을 기획하여 지면 반영 및 방송사 뉴스 제작을 유도하는 등 홍보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 한편 체육계 인권침해 직권조사, 위원회 소관 비영리 단체 감독 등 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부정적 보도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대면, 전화, 모바일 등을 통해 출입기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위원회 업무와 현안에 대해 알리고 있다. 앞으로 인권 현안 및 위원회 중점 과제를 깊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연재 및 심층보도 등을 기획할 계획이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의 개설 등 최근 몇 년간 점차 확대된 뉴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방식은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적극 활용되었다. 기존 카드뉴스, 브로슈어, 엽서 등의 홍보 콘텐츠는 영상 위주의 콘텐츠로 제작되어 위원회 유튜브에 신속하게 게시, 보급되었다. <비밀의 비밀>에 이어 제작한 <차타공인>도 드라마를 통해 홍보 성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을 향한 집단 따돌림 문제 등 학원물 장르에 등장했던 단골 소재가 이 작품에도 빠짐없이 들어 있다. 다만 <차타공인>은 이 모든 문제의 이면에 입시 경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학원물과 달리, 인권 특히 청소년들의 열악한 인권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겨레 11.27.-

2020년 <인권> 잡지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 총선, 평등법 제정 관련

의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 밖에도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 N번방 관련 취재기자의 현장 스케치 기사 등을 다루어 시시각각 발생하는 인권 이슈들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잡지 내용의 다양성과 인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잡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매호 기획회의를 하는 등 잡지 콘텐츠의 질과 가독성을 높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표적인 인권옹호자에게 인권훈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적이었으나 온라인 중계 병행 개최를 통해 인권위원, 자문위원, 주한 외교관,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직원 인권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시민사회 우수한 프로그램과 전문성 도입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인권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하고, 조사관학교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조사 기법 특화 강의 및 참여형 실습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학교는 미래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반기에는 2021년 예산 및 업무 계획 수립과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에 대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에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하반기에는 인권증진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시로 인권단체를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운영 확산, 국제인권 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논의 진행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관련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 인권 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인권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2회 개최하였다.

또한 인권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걸친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지역 인권사무소 협력업무 담당자 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인권기구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8월 26일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인권옹호자대회를 개최하여 인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위원회·지역 인권기구·인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에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을 중심으로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GANHRI가 6월 주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화상회의에 패널로 참가하여 노인인권 주제와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였고, 12월 초 화상으로 개최한 GANHRI 연례회의에서 이를 문서화하여 국제사회에 공유하였다.

위원회는 9월 APF와 공동으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혐오차별 대응 기제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혐오차별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10월 유럽연합(EU) 국가 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들과 ‘평등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평등법’ 제정 과정, 제정 이후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경험 및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특히 9월에 개최된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APF 부의장 겸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국가인권기구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가. 인권단체와 일상적 협력

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주요 전략과 사업 계획에 인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상반기에는 2021년도 예산 및 업무 계획 수립과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중장기적 업무 방향을 담은 ‘인권증진행동전략’의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시로 인권단체를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협력을 활성화하였다.

위원회는 굿네이버스의 희망편지쓰기대회를 후원하고 위원장 상장을 지원하였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 시상식에 위원장의 서면 축사를 보내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인권보고대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나.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접근, 인권 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위원회 주요 전략과제와 연계한 4개 과제(혐오표현 예방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 공감대 확산, 공항난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를 지정과제로 제시하여, 위원회의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과제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2-4-1]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구분	사업주제	신청	선정 (예비선정)
자율주제	인권 관련 새로운 분야 개발 및 활성화	6	3 (1)
	인권단체 또는 국제기구 연대 강화	-	-
	국제인권조약	2	-
	인권 관련 지역단체 간 연대활동	4	2 (1)
	소계	12	5 (2)
지정주제	혐오표현 예방 대책	5	(1)
	차별금지법 제정 공감대 확산	2	1
	공항난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사업	1	1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8	5
	소계	16	7 (1)
합계		28	12 (3)

구분	신청	선정 (예비선정)	구분	신청	선정 (예비선정)
장애	5	2 (2)	인권일반	1	1
여성	4	1	정보인권	1	1
아동·청소년	4	2	국제인권	1	-
이주	3	2	노인	1	-
자유권	2	1	농민	1	-
차별일반	2	1	종교	1	-
성소수자	2	1 (1)			
소계	22	10 (3)	소계	6	2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 ‘공항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 등 1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난민 신청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활동 프로그램과 시민사회 인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 인권 영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2-4-2]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현황

연번	단체명	사업명
1	사단법인 두루	‘공항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2	(사)대전장애인인권포럼	거주시설 발달지적장애인 인권활동가 양성
3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인권의 내일을 위한,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4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
5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6	(사)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 인권역량 강화 프로젝트
7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프로젝트 〈이제 부산에서 ‘땡땡’〉
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접근성 모니터링 사업
9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이주민 인권 청년활동가 역량 강화 및 차세대 이주 인권 감수성 교육
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평등하게 차별금지법〉
1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20 성소수자 시민권 도약의 해 만들기
1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비전 및 인권경영 지침 개발·배포 사업

또한 모범적인 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7개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표 2-4-3]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단체명 (사업명)	선정 이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접근성 모니터링 사업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애초 목표한 모니터링 목표를 상회하여 전국 단위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임.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교육·모니터링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지구대 일선 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함. 지역사회 가장 기초적인 권리옹호체계로서의 치안행정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옹호기관을 이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사단법인 두루/ '공향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공향난민 인권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문제 인식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도출함. 내실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언론보도, 국회 상임위원장 현장 방문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결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등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	변화하는 정보사회에서 신규 기술과 인권 이슈를 접목한 사업 내용이 시의적절하였으며,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 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역량 강화에 기여함. 또한 인권활동가의 사전 요구를 파악하여 강의를 구성·진행하고, 서울 외 지역을 포괄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강좌 공유 등을 통해 강좌 내용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내실 있고 실효적인 사업 수행이 돋보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평등하게 차별금지법)	전국 26개 도시를 방문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단체와의 네트워크 마련을 통해 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전국적 규모로 다수의 시민과 만나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력이 돋보이고,

단체명 (사업명)	선정 이유
	<p>코로나19, 기상 악화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식 변경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다수 제시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성이 높은 홍보 콘텐츠 등 사업 성과물이 우수함.</p>
<p>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인권의 내일을 위한,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교육</p>	<p>소규모 인권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저년차 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수행함으로써 인권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단체활동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과 공동 과제 모색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증진과 인권의 저변 확대에 기여함. 비속박, 소규모 사업으로의 전환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업 변화를 주면서도 집중도 있고 실효성 높은 교육을 수행함.</p>
<p>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p>	<p>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현황 파악과 기억의 기록화를 통해 향후 조사, 구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강제수용 인권침해 생존자들의 치유와 삶의 회복을 위한 사회의 역할을 도출하고 제안함. 인권침해 현황,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안과 관계기관 공유 등 활용 가능성 높은 성과를 냄.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초과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회의, 간담회, 피해자 개별적 의료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내실을 기함.</p>
<p>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프로젝트 〈이제 부산에서 '핑동'〉</p>	<p>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지역 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를 직접 상담하고, 자원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함. 청소년 성소수자 지역 내 커뮤니티 구성 등 지속적 활동과 네트워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역 내 다양한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함.</p>

다. 인권현장 방문 등 교류

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현안 논의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인권현장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방문하여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을 찾아가 ‘평등법’ 제정의 중요성과 취지를 설명하고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여 법조계의 의견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2-4-4] 2020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연번	방문일	현장	유형	비고
1	2. 20.	중국동포 거주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동포 혐오에 대한 상황 청취	위원장
2	7. 9.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취지 설명 및 법조계 의견 청취	위원장 이상철 위원
3	7. 13.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군구금시설 방문조사	박찬운 위원
4	7. 14.	대한변호사협회	평등법 제정 취지 설명 및 법조계 의견 청취	위원장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5	9. 1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평등법 관련 쟁점 설명, 개신교 원로 의견 청취 등	위원장
6	10. 13.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 시설 방문조사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희 위원
7	10. 28.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실태 점검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	정문자 위원 서미화 위원
8	11. 19.	제주 ‘천사의 집’	아동양육시설 인권현장 방문 및 시설 방문조사	이상철 위원

또한 위원회는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혐오표현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로하고, 혐오와 차별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 내 중국동포 모임의 대표와 회원, 초·중등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중국동포 주민, 이주민단체 활동가, 교사, 교육청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현장 방문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하면서 온·오프라인 등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 성명을 내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혐오표현에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국동포 거주지역 인권현장 방문

라.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전담기구 신설이 확산되고 국제인권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지역인권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인권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

하였다.

또한 5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수도권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간담회, 11월 경기도 인권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자료 및 의견을 공유하였다.



2020년 인권옹호자회의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8월 26일 ‘2020 인권옹호자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및 인권위원, 인권옹호(보호)관, 인권단체 활동가 등 130여 명이 참여해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평등

법과 관련하여 △각 인권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대응, △지자체 인권기구(지역행정, 의회, 단체 등)의 책무,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으로 분과를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하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공동 주최하면서 전체 회의 발제, 국내 인권도시 인권옹호자 워크숍과 차별금지 분과회의 운영 등을 하였다.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과 협력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협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들이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발전·강화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에 필요한 리더십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이다. 출범 당시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나, 2016년 3월 연례회의에서 명칭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변경하였다.

위원회는 매년 GANHRI 연례회의 및 집행이사회에 참가해 다자간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온라인 연례회의에서는 △신규 집행이사회 승인 △2019년 연례보고서 승인 △2020~2022 전략계획 △2020~2021 예산안 승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2019년 APF 회의에서 GANHRI 집행이사회 아·태지역 대표로 선출되었고, 이번 12월에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최종 의결되었기에 향후 4년간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또한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GANHRI가 6월에 온라인으로 주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회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위원회의 활동상을 발표하였으며, 12월 초 온라인으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이를 문서화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공유하여 연대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9월 유엔 특별 절차인 노인인권 독립전문가가 준비한 <노인의 권리

향유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성명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협력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역 조정기구로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 지원,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9월 9일 개최된 제25차 APF 연례회의에 화상으로 참가하였다. 연례회의에서는 △APF 성과보고서, 연간보고서 및 회계 승인 △APF 직위 선출 △성 주류화 논의 △제26차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개최지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APF 부의장 겸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위원회와 APF는 9월 17일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여 혐오차별 대응 기제로서의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혐오차별과 관련된 인권문제의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선도적인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유엔기구 및 기타 인권 관련 기구와 협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11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가 취소되자 위원회는 12월 중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 함께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노인인권을 주제로 한 유일한 정부 간 회의인 실무그룹 회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에 취약점이 더욱 드러난 노인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 부사무총장,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및 집행이사회 등 주요 인사에게 송부

하여 해당 주제를 정부 대표 및 유엔기구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뉴욕의 인권단체 패스파인더즈 소장(Dr. Liv Torres),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Wolfgang Angerholzer), 주한 스위스 대사(Linus von Castelmur) 등 인권기관 대표 및 외교사절들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10월 23일 유럽연합(EU) 국가 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평등법’과 인권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는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의 주한 대사와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위원회가 제안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등법’의 추진 경과에 대해 위원회가 설명하고 참석한 각국 대사들이 각국의 ‘평등법’ 제정 과정, 제정 이후의 사회적 영향,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 및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주한 대사 등과의 간담회 (2020. 10. 23.)

3. 국제회의 개최

1)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위원회는 9월 17일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APF 및 유럽연합(EU)과 공동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 등 국제기구, 인권기구, 시민단체, 연구자, 활동가, 인터넷 기업, 그리고 주한 각국 대표 등 8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온라인 참가자는 1,300여 명) 혐오차별 관련 인권문제의 국내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는 유럽집행위원회, 유럽평의회, 덴마크인권위원회 등 유럽권역의 혐오차별 관련 전문가들과 주한 대사관, 그리고 국내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혐오차별 대응 관련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와 도전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1세션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정책 동향에 대해, 2세션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기제로서의 ‘평등법’ 추진의 성과와 도전에 대해,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이번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가시적 결과물로 혐오와 차별 철폐,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협력·지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에 대한 ‘구두 성명’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구두 성명’ 초안을 마련한 후, 공동 주최 기관인 유럽연합(EU)과 발표자들, 참석 대상 주한 대사들에게 사전 회람·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평등법’ 제정 동력을 지속화하고 국제 연대를 유인하였다.

2)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위원회는 12월 7일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주(駐)유엔 아르헨티나 대표부의 후원으로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는 노인의 생명권, 안전권 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보호되고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유엔,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 인식하에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마리아 델 카르멘 스퀴프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당선인이 2021년으로 예정돼 있는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준비 현황 및 정부 간 논의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2부에서는 교육·연수·평생교육 및 역량 강화 관련 규범 요소를, 제3부에서는 사회보장·사회안전 관련 규범 요소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인의 안전권 보장 방안을, 제4부에서는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권 그리고 사법접근권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를 통해 노인인권 보장 법안을 모색하였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전국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인권기구,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인권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인권에 관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예산 및 업무 계획,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인권증진행동전략 등에 대하여 온라인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시로 인권단체를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관계를 더욱 활성화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옹호자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지방 자치단체 인권위원과 인권옹호관(보호관)·인권행정공무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평등법’ 관련 각 인권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대응,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지역 행정, 의회, 단체 등)의 책무,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국제교류·협력에서 위원회의 중점 사안인 혐오차별 대응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APF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위원회 혐오차별 대응과 함께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구두 성명을 도출하는 등 국제적 지지를 견인하였다. 주한 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등법’ 제정 및 혐오·차별 대응 관련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에 인식 확산을 꾀하였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인인권이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고,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통해 노인의 사회권 보장 등 규범적인 요소와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주제에 대해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인인권을 주제로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등에게 성명서를 송부하는 등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을 주제로 한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더불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여 자유권규약상 정부의 의무를 환기하는 한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중간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부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권고의 정부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국회의 역할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GANHRI 집행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공식적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APF 부의장 겸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국제인권 무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 기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 기관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에 5개의 인권사무소와 제주에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0월 부산인권사무소와 광주인권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대구인권사무소, 2014년 10월 대전인권사무소, 2017년 6월 강원인권사무소, 2019년 10월 제주출장소를 개소하였다.

[표 2-5-1] 인권사무소와 출장소 위치 및 관할 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인권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인권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제주출장소	제주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인권상담 △경찰,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 군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구급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체험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주요 활동

1.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2020년 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 1,638건, 상담 9,172건, 민원·안내 5,139건을 접수하였다. 2019년에 비해 진정사건은 259건(13.7%) 감소하였는데, 강원인권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인권사무소에서 진정 접수 건수가 감소하였다. 반면 상담은 343건(3.9%), 민원·안내는 1,231건(31.5%)이 각각 증가하였다.

[표 2-5-2]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인권사무소	연도	진정	상담	민원 / 안내	합계
합계	2020	1,638	9,172	5,139	15,949
	2019	1,897	8,829	3,908	14,634
부산	2020	476	2,337	405	3,218
	2019	483	2,361	759	3,603
광주	2020	280	2,315	1,614	4,209
	2019	453	2,332	1,326	4,111
대구	2020	283	1,677	582	2,542
	2019	408	1,720	413	2,541
대전	2020	319	2,459	661	3,439
	2019	360	2,099	501	2,960
강원	2020	260	231	1,820	2,311
	2019	188	298	904	1,390
제주	2020	20	153	57	230
	2019*	5	19	5	29

* 제주출장소 2019년 통계는 개소일(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2020년 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접수는 1,745건이며, 종결 처리는 1,636건이다. 종결 처리 중 171건(10.5%)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792건(48.4%)이 상담종결, 673건(41.1%)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되었다. 2019년과 비교해 보면 면전진정 접수는 45건(2.6%), 종결 처리는 142건(8.7%)이 각각 감소하였다.

[표 2-5-3]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인권사무소	연도	접수	처리						
			소계	진정 접수	상담종결	철회			
합계	2020	1,745	1,636	171	10.5	792	48.4	673	41.1
	2019	1,790	1,778	319	17.9	720	40.5	739	41.6
부산	2020	559	542	38	7.0	276	50.9	228	42.1
	2019	504	502	90	17.9	192	38.2	220	43.8
광주	2020	365	344	19	5.5	176	51.2	149	43.3
	2019	402	385	65	16.9	184	47.8	136	35.3
대구	2020	483	438	62	14.2	195	44.5	181	41.3
	2019	556	564	87	15.4	207	36.7	270	47.9
대전	2020	268	240	38	15.8	123	51.2	79	32.9
	2019	231	235	56	23.8	114	48.5	65	27.7
강원	2020	59	57	12	21.1	15	26.3	30	52.6
	2019	89	88	21	23.9	23	26.1	44	50.0
제주	2020	11	15	2	13.3	7	46.7	6	40.0
	2019*	8	4	-	-	-	-	4	100.0

* 제주출장소 2019년 통계는 개소일(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3. 진정사건 처리

2020년 인권사무소에 배당된 진정사건은 3,052건이고, 3,225건이 처리되었다. 권리구제 건수는 총 736건으로 권고 등 232건, 합의종결 9건, 조사중해결 495건이다.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진정사건 배당은 117건(3.7%)이 감소하였으나, 처리는 677건(26.6%)이 증가하였다.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광주·강원인권사무소에서 권고와 조사중해결 등 권리구제건 중 이례적으로 병합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2-5-4]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인권 사무소	구분	배당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2020	3,052	3,225	736	-	232	-	9	495	1,686	20	774	9
	2019	3,169	2,548	284	-	115	-	11	158	1,510	22	731	1
부산	2020	805	784	88	-	36	-	2	50	511	7	175	3
	2019	777	714	67	-	17	-	3	47	387	10	250	-
광주	2020	610	630	171	-	138	-	1	32	320	4	134	1
	2019	774	563	92	-	47	-	5	40	352	2	116	1
대구	2020	662	700	43	-	19	-	-	24	438	1	216	2
	2019	725	532	47	-	17	-	-	30	338	-	147	-
대전	2020	537	568	80	-	32	-	5	43	286	5	194	3
	2019	575	569	70	-	32	-	1	37	325	8	166	-
강원	2020	379	486	342	-	6	-	1	335	109	2	33	-
	2019	292	159	8	-	2	-	2	4	98	1	52	-
제주	2020	59	57	12	-	1	-	-	11	22	1	22	-
	2019*	26	11	-	-	-	-	-	-	10	1	-	-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제주출장소 2019년 통계는 개소일(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조사관 토론회, 사건처리 단계별 점검 등을 통해 장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부산출입국 단속 과정 중 외국인 근로자 사망, 공직유관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경찰의 부당한 수갑 등 사용,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권리 미고지 등 다양한 조사 영역에서 적극적인 권고를 추진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호텔 종사자 음식물 반입 등 긴급구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 조명탑 고공농성 긴급구제 등의 사건에 신속한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우선적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20년 한 해 동안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및 공동 조사관제를 운영하여 사건처리 효율성 및 구제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직장 내 괴롭힘, 대학교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장애인 모욕 및 비하 발언 등과 같은 지역 내 이슈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자체 장애인 화장실과 관련된 115건의 집단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군산지역 고공 농성장 음식물 반입 금지에 따른 긴급구제 사건을 현장 중재를 통해 해결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장조사 등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축제 행사장 장애인 주차구역 미제공,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접근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등에 대한 시정 권고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찰의 불법체포 및 부당한 긴급체포, 교정시설 간부의 순시 시 정렬 등 부당지시, 학교 두발 규제 및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지방자치단체 공문의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한 시정 권고로 경찰이나 학교,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침해 사안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아울러 ○○대의료원 고공 농성 현장, 동인동 재개발 현장, 성주 사드기지 장비반입 저지 농성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병원 현장조사 등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전인권사무소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조사관 토론회 등을 통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직업체험관 교사의 장애아동 차별, 경찰의 부당한 출석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수형자에 대한 방송 인터뷰 불허, 직장상사의 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코로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지역 내 이슈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우한 교민 관련 시위 현장(아산, 진천) 대응 모니터링, 서산 산업폐기장 관련 농성 모니터링 실시 등 언론보도,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신속한 기초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대학 및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그에 따라 재임용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건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권고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적절한 조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구금시설 내에서 펜형 인슐린 주사기의 주삿바늘을 2~3일 간격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한 사건에 대해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관 주의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를 당한 강원도민의 권리구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출장소는 무사증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의 입국거부사건(입국조치, 조사중해결), 항공기 이용 시 장애인 편의 제공 미흡 사건, 수용자 서신발송 불허 사건, 발달장애 아동 놀이기구 탑승 제한 사건 등은 피진정기관의 적극적 조치로 조사중해결이 되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업무 수행의 근거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무부 등 기관에 수용자 공항호송 외부노출 관련 규정 준수, 미란다원칙 고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의견표명을 하였다. 아울러 지역 권익

옹호기관 및 단체와 사례회의(온라인 회의 병행)를 통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조사구제절차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위원회 전체 진정 접수 처리 사건 대비 제주지역 사건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권익 옹호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4. 인권교육

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인권강사양성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인권특강 등을 실시하였다.

2020년 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은 총 734회(2만 4,693명)이며, 유형별로는 인권강사양성과정 22회 361명, 인권감수성향상과정 36회 808명, 방문교육 159회 2,631명, 인권특강 517회 2만 893명이다. 이 중 인권특강을 통한 인권교육이 가장 많았다.

[표 2-5-5] 2020년 인권사무소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 명)

인권 사무소	합계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방문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734	24,693	22	361	36	808	159	2,631	517	20,893
부산	367	12,887	4	84	22	515	20	370	321	11,918
광주	106	3,401	4	86	6	95	23	640	73	2,580
대구	93	1,925	5	86	5	88	35	402	48	1,349
대전	127	4,857	6	68	1	16	65	1,121	55	3,652
강원	41	1,623	3	37	2	94	16	98	20	1,394

특히 부산인권사무소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을 208회 실시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의 경우 업무 협력기관인 지방경찰청·교육청·전남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손잡고 인권교육을 인권감수성향상과정으로 실시하였다.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가. 홍보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이 힘든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홍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평등법 제정 및 혐오차별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홍보사업으로 △‘평등법’ 제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평등법’ 제정 관련 부산 종교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시설공단 산하 주차장, 전광판 등 매체 이용 혐오차별 대응 및 ‘평등법’ 제정 관련 자막·동영상 약 3,000회 상영, △혐오차별 대응 및 ‘평등법’ 제정 지역 내 지지 분위기 확산을 위한 부산시청 대로변 가로등 배너 100조 게시, △평등을 이미지화한 ‘평등벤치’ 부산시민공원 내 제작·설치, △혐오차별 대응 및 ‘평등법’ 제정 지지 유도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3회 실시, △부산 시보 <다이내믹부산> 인권코너 2회 게재 및 자체 블로그 이벤트 6회 실시 등을 통해 지역 내 ‘평등법’ 제정 및 혐오차별 대응에 긍정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기념식 개최, △혐오차별대항 인권문화제 개최, △인권선언 조항 일러스트 포스터 전시회 개최, △인권선언문 온라인 참여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시민공원 내 '평등벤치' 설치



부산 종교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광주인권사무소



시민과 함께 보는 인권영화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청 및 아시아문화원과 손잡고 <시민과 함께 보는 인권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2020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가 폭력을 다룬 영화를 상영,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2020년 광주인권사무소가 권고한 진정사건을 모아 제작한 <2020 광주인권사무소 결정레집>을 주제로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한 언론인은 줄었으나 굵직한 지역 인권 현안으로 10여 개 언론에 보도되어 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편 12월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모든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기념 문화행사를 열었다. 이번 기념 영상에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쓴 시민사회단체, 방역공무원, 학생, 교사 등의 인터뷰를 담아 소속과 직위, 계층의 구분 없이 서로를 보살피는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카드뉴스와 같은 새로운 형식을 적극 활용, 사무소가 주관하는 행사와 위원회 결정례를 일상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혐오차별과 평등법을 주제로 한 단체 활동가의 기고문을 연속 게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역에 널리 알렸다.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5~6월에 건강권, 이주여성과 장애인 인권, 노동인권 등을 주제로 매주 시민 대상 ‘인권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행사를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행사 촬영본은 인권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였다. 4월과 11월에는 장애인권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함께 읽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로 송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관장과 시민단체 대표, 시민이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울러 지역 공기업 협력으로 인권영화 상영, 인권단편시 공모전, 인권 포스터 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도 추진하였다. KBS1 라디오에 매주 출연하여 총 71회에 걸쳐 위원회 결정례와 지역의 인권 현안을 소개하고, 지역 일간지에 매월 인권 칼럼을 게재하는 한편 블로그 및 SNS에 인권 관련 정보를 꾸준히 게재하여 인권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 유도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는 2020년 지역 내 혐오표현과 차별 해소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연중 온·오프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전도시철도공사 전동차 내 상단 모니터에 혐오



혐오차별 예방 및 '평등법' 제정 홍보 캠페인

충청지역 대표 일간지인 <중도일보> 지면에 격주 금요일마다 위원회 주요 결정례를 연재하였으며, 다양한 인권 이슈를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적극적이고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문화 조성 및 '평등법' 제정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국제 성소수자의 날', 혐오차별 예방 '마주' 캠페인,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 축구 캠페인, 제2회 대전장애인인권영화제 평등법 제정 축구 캠페인 등 지역 문화 축제 등을 이용한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4월 29일 장애인 인권 현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세계인권선언 제72주년 기념 시민인권영화제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전과 같은 대시민 캠페인 등 각종 대면 행사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행사, 온라인 콘텐츠 강화 및 홍보전략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기념하여 <2020 인권공모전> 수상작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도내 지자체(17), 교육청(1), 공공기관(10) 등 총 28개 기관과 협의하여 강원인권주간(11. 6.~12. 11.) 동안 지자체 전광판, 공공기관 로비 등에서 영상을 송출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주민들에게 세계인권선언과 강원인권사무소를 홍보

차별 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인권 홍보 동영상을 열차 1량당 4개의 모니터(총 8량)에 연중 동시 상영하고,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음성광고를 2020년 10월 1일부터 1개월간 충북 청주지역 버스정류장(2개소)에 정차하는 모든 시내버스에 송출하였다. 또한 대전·



2020 인권공모전 영상 송출

함과 동시에 지역 내 인권의식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강원인권사무소 공식 블로그의 개편 작업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인권서포터즈를 통해 총 40건의 영상·웹툰·기사 등을 게시하여 더 많은 방문자가 인권 관련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강원인권서포터즈의 개인 SNS 계정,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강원인권사무소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주출장소



북토크 in 제주(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속 혐오)

제주출장소는 지역 혐오차별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7월 15일 역사 속 혐오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유튜브 영상 중계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나. 인권체험관(인권전시관)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전시관은 △유엔 인권포스터 전시 <저마다의 빛깔로> △제주4·3 수형인 사진전 <나, 죄 어수다> △노동인권 카툰전 <노동자가 되고 싶어요> △‘평등법’ 홍보 전시 <모두를 위한 평등> △노인인식개선 카툰전 △발달장애인 미술작품전 <내 마음속 꿈을 그리다> △세계인권선언문 일러스트 전시 <보편적인 삶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 ‘평등법’ 등 다양한 인권 분야를 조명하는 전시회를 기획·운영하여 지역 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 부산인권전시관 전시회 방문객 수는 총 1만 362명으로 2019년과 비슷하였으나, 방문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 확산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과 휴교 등으로 학교 단체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부산인권사무소는 다른 지역 인권체험관과 공동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전시회로 <청소년 인권 단편시전 및 코로나19 및 청소년 일상 기록전>을 기획·운영하였다.



4·3수형인 사진전 <나, 죄 어수다>



‘평등법’ 홍보 <모두를 위한 평등>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테마역사는 2008년 10월 말 개관, 2009년부터 지하철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방문객이 줄어들어 총 640여 명이 인권테마역사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하철 스탬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동반 학부모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어린이들은 동물농장 애니메이션 감상문을 작성하며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인권테마역사 운영



인권테마역사 운영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이라는 주제로, 5개 지역 체험관 공동으로 8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N행시, 그림, 글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공모전에 응모한 250여 편 중 80여 편을 선정, 온라인 전시까지 마쳤다.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체험관은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별별인권체험관 스탬프투어’ 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자가 인권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을 기존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 등으로 확대한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체험 프로그램 횟수 35회, 참여자 400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8~12월까지 <인권체험관 온라인 전시회>를 운영하였는데, 그중 <코로나19, 청소년 일상기록전>은 청소년이 제출한 250여 건의 작품 중 85건을 선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전시하였다.



인권체험관 방문 프로그램



인권체험관 온라인 전시회

대전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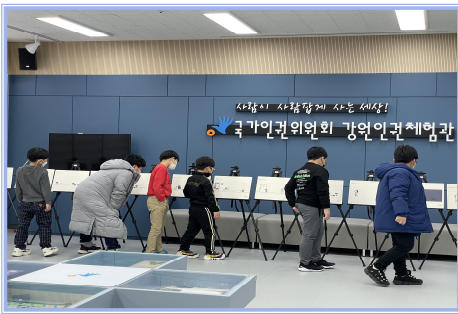
기업의 인권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또한 9월에 대전시청역으로 체험관을 이전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VR체험·모바일 앱·터치스크린 등 인권을 한결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콘텐츠 및 디바

대전인권체험관은 2020년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이주민·공공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총 1,474명이 체험관을 이용하였는데,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이스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역사 내에 혐오차별을 주제로 한 전시물을 설치하고,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인권 관련 동영상 상시 상영하고 있다.

강원인권사무소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강원인권 체험관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북한이탈 주민 등 다양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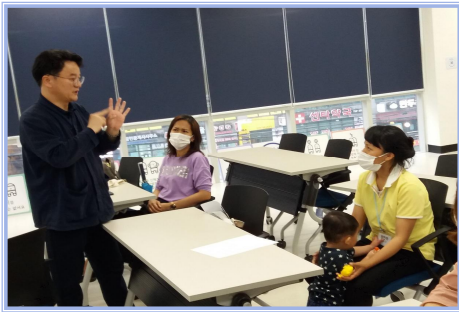
인권체험관 운영

아울러 각 지역 체험관 공동협력사업인 <온라인 전시회>를 추진·진행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가진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소통·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인권에 대한 관심도 증진 등의 홍보 효과 및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어린이 인권도서 순회전시>를 기획·개최하여, 인권에 대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산간벽지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도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강원지역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인권 콘텐츠 제공을 통한 생활 속 인권의식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주출장소

제주출장소는 제주인권교육센터에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을 꾸미고, 관련 기관 및 각 학교에 안내하여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인권교육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 인권 포스터 전시, 혐오차별 예방 <마주> 캠페인,



이주여성 방문 프로그램

웹 기반 체험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제주인권교육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방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 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 광역지자체의 인권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울산시 인권위원 등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남 찾아가는 도민인권학교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광역교육청과 '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온라인 연수교재(동영상) 제작 및 교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하는 등 정기적 교류를 통해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권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증진과 교육을 위해 '경찰청 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경찰 대상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운영, 경찰인권강사단 연구모임 운영, 청문감사관실 인권담당 직무교육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도 '인권옹호네트워크'를 구축해 사례를 공유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인 '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분야별 인권활동가들과 수시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울산지역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 개최, 평등법 제정을 위한 소통협력위원회 결의문 채택, 부산종교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등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내외부 협력 채널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과제들을 지역의 인권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 지자체·교육청·의회·시민사회단체·시민이 함께하는 ‘부산인권정책포럼’을 개최하면서 실질적인 지역인권 신장의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소통협력위원회 개최



부산인권정책포럼 개최

광주인권사무소

2020년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와 긴밀하게 연계해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을 맞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주제로 한 토론회, 전북지역의 장애인 탈시설 인권 현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시민과 함께 보는 영화〉 등 지역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권·시민사회단체, 문화기관 및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업해 다채롭게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 협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전북 지역 인권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권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협의회’를 연 2회 진행하였고, 2019년 광주지역에 이어 2020년에는 전북지역 내 아동·노인·여성·장애·이주 등 분야별



지자체 인권증진협의회

인권단체들과 지역인권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공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타 지역에도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민·관·학 소통 및 학습 공간인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매일 운영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다. 1년 동안 △플랫폼 노동자 인권 현안, △청소년 참정권, △국제사회 민주화, △코로나19와 교육의 혼란, △영화로 보는 노동인권, △데이터3법과 개인정보, △기후변화와 인권, △미디어와 혐오표현 등 다양한 인권 담론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인권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하였다. 대구광역시청과 5~6월에 시민인권특강, 11월에 홍보물 전시회 등을 공동 추진하였다. 경상북도청의 경우 인권팀 신설에 따른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결정례 영상 상영,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함께 운영하였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주간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 공기업 등과 협력하여 <세계인권선언 함께 읽기> 영상 제작, 인권영화제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다.



대학인권센터 워크숍

인권단체들과 지역인권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공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타 지역에도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민·관·학 소통 및 학습 공간인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매일 운영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

10월에 대구·경북지역 대학인권센터 워크숍을 열어 대학 인권 현안과 인권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하반기 간담회를 여는 한편, 인권현장 모니터링 등 지역 현안 대응에 상시 협력하였다.

대전인권사무소

2020년 대전인권사무소는 지역 인권 현안 공유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인권상담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였다.

대전·충청권 인권담당자 간담회, 대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육군·해군·공군 인권부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내 인권행정기구의 인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인권보호관 워크숍, 충북인권협의회 인권사례 콘퍼런스, 충남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 상담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및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충남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혐오와 차별 해소 및 평등법 제정을 위한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 연계 인권캠페인, 시민인권특강,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장애·이주 등 보호 전문기관 및 인권·시민단체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전시 스쿨미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 관련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인권 이슈 발굴 및 의제화를 통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분야별 인권전문가로 필진을 구성하고 인권 에세이 기고 등의 활동을 하여 감염병의 대유행과 인권, 코로나 상황의 장애인과 인권, 환경과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인권 에세이를 8회에 걸쳐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는 대면 또는 비대면 형식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을 지속하였다. 강원지역 13개 주요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소통협력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여 인권박람회, 인권취약현장방문, 장애인 사망사건 같은 지역 내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강원지역 10개 공공기관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를 구축해 2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실제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인권취약현장방문(청소년SOS공감행동비지트, 태백가정폭력상담소)을 통해 지역의 인권정책과제 발굴과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청·강원도 교육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원인권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내외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강원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2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의 인권업무 현황과 인권행정 실무에 대한 중요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강원지역 8개 권리



강원지역 권리보호·인권옹호자 워크숍

보호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강원도 내 총 18개 민·관·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강원 지역 권리보호·인권옹호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강원지역 인권옹호자들의 인권 전문성 제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강원지역 인권옹호자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제주출장소



제주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6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월 1회, 총 5회에 걸쳐 제주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제주출장소와 지역 유관기관단체가 집중적으로 노력해 해결해야 할 인권 현안을 미리 되짚어보기 위한 자리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 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보인권 증진 방안, 권력형 성범죄와 여성인권, 인권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농민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였다.

제주출장소는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주지역 주요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 등과 함께 ‘지역 인권활동가 휴먼라이브러리’를 주 1회 개최하고, 인권 옹호활동가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도서 <제주의 사람과 사람: 인권활동가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제3절 평가

2020년 인권사무소에 배당된 진정사건은 3,052건이고, 3,225건이 처리되었다. 권리구제 건수는 총 736건으로 권고 등 232건, 합의종결 9건, 조사중해결 495건이다.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진정사건 배당 건수는 117건(3.7%)이 감소하였다. 반면 처리 건수는 조사관 토론회,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공동조사관제 운영 등을 통해 사건처리 효율성과 권리구제율 제고를 위한 노력, 병합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677건(26.6%)이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지역 내 농성 현장 등에서의 긴급구제 사건에 신속한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등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평등법 제정 및 혐오차별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 공론화 및 차별 대항 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시민공원 내 ‘평등벤치’ 설치, 부산 종교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내 ‘평등법’ 제정 및 혐오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찾아가는 인권교육 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대상별·분야별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협의회’를, 광역경찰청 및 교육청과 ‘인권교육협의회’를, 지역 내 아동·노인·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인권옹호 네트워크’를, 인권·시민사회단체와도 정기적 의견 수렴 창구인 ‘소통협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대학·교육청·의원·단체·시민이 함께 하는 ‘부산인권정책포럼’을 통하여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자 지역 내 인권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진진정, 대면상담, 오프라인 홍보, 대면회의 및 교육 등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컸던 해로, 줌(Zoom)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나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대면 방식의 한계 및 대체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추후 인권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플랫폼 노동’, ‘코로나19와 교육’, ‘기후변화와 인권’, ‘미디어와 혐오표현’ 등 사회적 이슈와 새로운 인권 의제를 학습하고 논의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거의 매달 개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집담회를 개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인권증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분야별 인권단체들과 지역 인권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인권영화를 상영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인권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인권의 제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관내 지자체 단위별로 인권증진계획과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실제로 인권이 지방정부 내 행정에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인권경영 이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 업무협력으로 지역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과 인권교육, 인권홍보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대학 인권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등과 인권주간사업 준비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세계인권선언 주간 행사를 기획하였다.

한편 대구·경북 권역별로 상·하반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인권 현안 등을 논의하고 인권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평등법 입법추진 설명회를 실시하고, 인권단체와 ‘코로나19 상황 속 장애인 인권’, ‘탈시설’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혐오차별 대응 인권특강, 북콘서트 등을 공동 개최하여 지역 인권시민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인권교육·홍보 및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였다. 경찰 및 공기업, 지역언론인, 교사, 정당 당원 등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권토크 콘서트 및 장애인 인권 토론회 등을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해당 영상은 인권교육 콘텐츠로도 활용하였다.

방송 고정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여 지역 인권문화 확산에 힘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권체험관 방문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체험관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로 이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가 아직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향후 지역 인권 거버넌스의 실질적 기반 마련이 요청된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청소년 인권네트워크, 충북인권협의회 및 충남민관협력 실무협의회 등 지역인권상담 네트워크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대전시 스쿨미투,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 활동하며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 대안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연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생활시설 입소 반대 시위 현장(아산, 진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지역 내 인권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차별 해소를 위한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주요 인권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인권홍보 동영상 및 음성광고를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전도시지하철 전동차 및 청주버스 내에 게시·방송하여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전인권체험관의 신속한 재개소 및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상시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공공시설인 시청역사 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은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특강, 캠페인 등 홍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인권단체와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원인권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의 대면 기반 사업 수행이 제한됨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행사 및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 다른 부서, 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시의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강원도 장애인 이동권의 현주소>를 주제로 두 차례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원주인권영화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한편 <2020 인권공모전> 수상작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도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상영하여 전시회를 대체함으로써 물리적 제약 없이 더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온라인 홍보 채널을 개설하고 블로그를 개편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강원인권서포터즈 활동과 연계하여 웹툰, 영상, 기사 등의 다양한 인권 관련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시함과 동시에 서포터즈 개인 SNS와 사무소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더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통협력위원회, 인권경영협의체, 강원지역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권강사역량강화과정을 세 차례 진행하였으며, 다른 지역사무소의 인권체험관과 공동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을 지속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다.

한편 ‘평등법’ 제정과 혐오·차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혐오 차별대응기획단,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울림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안을 개발하여 강원도 내 20개교 3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좋은 평가 결과를 확인하였다.

2019년 10월 1일 문을 연 제주출장소는 개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역 인권 기관단체 간담회, 정책 라운드테이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애인권 현안 토론회(온라인), 분야별 단계별 지역 인권증진협의체 구축 등을 진행하여 인권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해 가고 있다.

제주출장소는 지역주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 제주 사회의 든직한 인권 지킴이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권상담 및 조사 활동과 더불어 인권교육 실시, 기관 및 인권·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20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345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64
3. 2020년 결산	377
4. 2020년 상담·진정 통계	378
5. 2020년 업무 총괄도	380
6. 2020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381
7. 2020년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현황	407
8. 위원회 간행물	408
9. 보도자료	411
10. 사진으로 보는 2020년	419
11. 위원회 소관 법규	423
12. 위원회 활동일지	427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2020.12.31. 기준)

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인권위원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권자(임기)
 위원장 최영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지명 (2018. 9. 4.~ 2021. 9. 3.)
 상임위원 정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 부평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국회 선출 (2018. 6. 22.~ 2021. 6. 21.)
 상임위원 이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 선출 (2019. 9. 19.~ 2022. 9. 18.)
 상임위원 박찬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권법학회 회장 •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지명 (2020. 1. 13.~ 2023. 1. 12.)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권자(임기)
 인권위원 조현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일·가정양립위원회 위원장 •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대법원장 지명 (2017. 6. 21.~ 2020. 12. 10.) * 2020. 7. 3. 연임 * 2020. 12. 10. 사임
 인권위원 임성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로비의혹사건 특별수사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 우체국공익재단 감사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대법원장 지명 (2018. 8. 27.~ 2021. 8. 26.)
 인권위원 김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선출 (2018. 8. 27.~ 2021. 8. 26.)
 인권위원 문순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 참여연대 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대표이사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 국민재산도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주지 • 중앙승가대학교 외래교수 •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 	대통령 지명 (2019. 7. 9.~ 2022. 7. 8.)
 인권위원 이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대법원장 지명 (2020. 2. 28.~ 2023. 2. 27.)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권자(임기)
 인권위원 서 미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 보건복지부 성평등자문위원회 위원 •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제9대 목포시의원 	대통령 지명 (2020. 5. 1.~ 2023. 4. 30.)
 인권위원 석 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장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제2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 (2020. 7. 3.~ 2023. 7. 2.)

■ 역대 위원장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제1대 위원장 김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 •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2001. 11. 25. ~ 2004. 12. 23.
 제2대 위원장 최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12. 24. ~ 2005. 3. 22.
 제3대 위원장 조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2005. 4. 4. ~ 2006. 10. 1.
 제4대 위원장 안경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2006. 10. 30.~ 2009. 7. 5.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p>제5~6대 위원장 현병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장 • 한양대학교 사무처장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 	<p>2009. 7. 17.~ 2015. 8. 12. * 2012. 8. 13. 연임</p>
 <p>제7대 위원장 이성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법 천안지원 지원장 •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려화실무그룹 의장 	<p>2015. 8. 13.~ 2018. 9. 3.</p>

■ 역대 위원

구분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상임위원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2001. 11. 25. ~ 2004. 12. 23.
상임위원 유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7. 20.
상임위원 유시춘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2001. 11. 25. ~ 2004. 3. 12.
인권위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 ~ 2003. 2. 23.
인권위원 김덕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1. 11. 25. ~ 2005. 3. 14.
인권위원 김오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01. 11. 25. ~ 2002. 11. 29.
인권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조미경	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류국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2002. 12. 12. ~ 2003. 2. 23.
인권위원 이흥록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2003. 5. 1. ~ 2005. 4. 18.
인권위원 김만홍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2003. 8. 1. ~ 2006. 10. 24.
상임위원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4. 7. 23. ~ 2007. 9. 20.
상임위원 김호준	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논설주간	2004. 12. 24. ~ 2008. 2. 3.
상임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나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12. 24. ~ 2006. 6. 28.
인권위원 이해학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2004. 12. 24. ~ 2006. 12. 31.
인권위원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신혜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05. 3. 15. ~ 2008. 3. 19.
인권위원 원형은	부산기독교협의회 회장	2005. 6. 1. ~ 2008. 9. 9.
인권위원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6. 8. 10. ~ 2012. 8. 9.
인권위원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2006. 10. 25. ~ 2009. 12. 28.
인권위원 정재근	조계종 금선사 주지	2007. 2. 8. ~ 2010. 2. 7.

구분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상임위원 최경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2007. 9. 21. ~ 2010. 10. 10.
상임위원 유남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2007. 12. 24. ~ 2010. 11. 4.
인권위원 조 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 12. 24. ~ 2010. 11. 15.
인권위원 황덕남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7. 12. 24. ~ 2011. 1. 18.
상임위원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2008. 2. 4. ~ 2010. 11. 4.
인권위원 최윤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08. 9. 4. ~ 2012. 1. 2.
인권위원 김양원	사회복지법인 엘리엘동산 복지재단 이사	2008. 9. 10. ~ 2011. 9. 27.
인권위원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 변호사	2009. 12. 29. ~ 2012. 6. 27.
인권위원 한태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2010. 2. 8. ~ 2016. 6. 15.
상임위원 장향숙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2010. 10. 11. ~ 2012. 1. 12.
상임위원 김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11. 15. ~ 2016. 11. 27.
인권위원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1. 19. ~ 2014. 1. 18.
상임위원 흥진표	(사)시대정신 이사	2011. 2. 21. ~ 2014. 3. 6.
인권위원 김성영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2011. 9. 28. ~ 2014. 11. 2.
인권위원 곽관주	법무법인 민 변호사	2012. 1. 3. ~ 2015. 2. 4.
상임위원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012. 3. 8. ~ 2015. 3. 15.
인권위원 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2012. 8. 13. ~ 2016. 9. 22.
상임위원 유명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14. 3. 7. ~ 2016. 1. 12.
인권위원 윤남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1. 19. ~ 2017. 1. 31.
인권위원 이선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4. 1. 19. ~ 2017. 3. 23.
인권위원 최이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	2014. 11. 3. ~ 2017. 12. 14.
상임위원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공동대표	2015. 3. 16. ~ 2018. 6. 21.
인권위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015. 2. 5. ~ 2018. 8. 26.
인권위원 한위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8. 10. ~ 2018. 8. 26.
인권위원 장애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2016. 6. 16. ~ 2019. 6. 15.
상임위원 정상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6. 3. 22. ~ 2019. 9. 18.

구분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상임위원 최혜리	서울지방법원 판사	2016. 11. 28. ~ 2020. 1. 12.
인권위원 김기중	(사) 오픈넷 이사	2016. 9. 23. ~ 2020. 1. 12.
인권위원 배복주	(사) 장애여성공감 대표	2017. 12. 15. ~ 2020. 2. 7.
인권위원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변호사	2020. 1. 13. ~ 2020. 2. 23.
인권위원 한수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2. 1. ~ 2020. 2. 27.

■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사무총장 송 소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총무 •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 재단법인 진실의힘 상임이사 	 기획조정관 이 석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위원회 비서실장 •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정책교육국장 조 영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침해조사과장 • 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침해조사국장 안 성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침해조사과장 •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차별시정국장 강문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연합 인권담당 • 광주인권운동센터 사무국장 • 국가인권위원회 준비단 • 광주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나.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정책자문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곽란주	법무법인 중부로 변호사, 전 인권위원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김상우	JTBC 대외협력본부장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현	큐렉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서울지검 강력부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박영립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전문 교수, 보훈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서울대학교 이사장, 전 대법관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사회학자), 전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유엔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 위원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준	경희대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윤범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장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조정연맹 이사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철순	(사)한국희망재단 상임이사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홍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성명	주요경력
백 미 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 공 현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조 효 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전 국가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Eunice K. Kim (김유니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이 태 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순 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서 창 록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임 을 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

■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정 문 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 해 정	sex&steak 연구소 소장
이 명 선	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조 수 경	조수경스포츠심리연구소장
이 영 미	헤럴드스포츠 대표기자
여 준 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김 상 범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 민 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서 정 화	국가대표 모글스키 코치
김 승 겸	중경고등학교 교장

■ 전문위원회

1) 사회권전문위원 (위원장 : 정문자 상임위원)

분야	성명	주요경력
사회권 일반	남 재 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석 재 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수 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은 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권	이 주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 성 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애 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정 소 연	법률사무소 보다 대표, 변호사
	이 상 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수 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박 점 규	직장갑질 119 활동가
	이 종 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김 혜 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건강·환경·생명권	전 형 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 영 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김 나 경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주거권	이 동 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문화권	김 기 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 인권교육전문위원 (위원장 :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은 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김 중 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해 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형 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 희 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노 석 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류 은 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	박 형 철	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장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대표	오 경 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소장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상 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 은 진	서울발산초등학교 교사
이 주 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 창 범	인터넷법학회 부회장
이 필 우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허 창 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구제팀장

3) 국제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최영애 위원장)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신 혜 수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이 양 희	전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정 진 성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정 영 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성 훈	전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 대 훈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교수
김 미 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김 기 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임 흥 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조 영 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4) 지역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명 속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채 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안 은 정 (릴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최 완 옥	광주인권지기 활착 상임활동가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재 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이 진 속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상임활동가
박 영 철	(사)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김 지 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조 성 제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신 강 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상임활동가
서 창 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5) 자유권제1전문위원 (위원장 :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정 문 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 양 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옥 한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 성 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박 경 용	법무법인 L.K.B.&Partner 변호사	전 학 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지 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남 규 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6) 자유권제2전문위원 (위원장 : 이상철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강 성 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원 영 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 수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윤 옥 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김 미 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윤 종 철	노인전문용인병원 진료부장(정신과)
김 사 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 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 예 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이 상 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김 정 란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은 주	인천사랑요양원 원장
김 철 호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현 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김 희 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 현 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남 철 관	(사)나눔과미래 국장	이 형 길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
노 호 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정 원 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영 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 문 기	송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 지 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 영 수	한림대학교의학전문대 교수(예방의학)
서 정 화	열린여성센터	최 해 경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 민 혜	건대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한 명 섭	비전트레이닝센터
우 삼 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허 용 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7) 차별시정전문위원 (위원장: 정문자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조 속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 상 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엘 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 상 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윤 구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 형 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심 재 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 재 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윤 애 림	서울대 고용복지센터 연구위원	박 주 영	민노총법률원 노무사
구 미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혜 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 정 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갑 선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방 준 식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8) 장애인인권전문위원 (위원장: 정문자 상임위원)

분야	성명	주요경력
장애차별	김 정 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제 철 응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종 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김 현 아	(주)마크로젠 변호사
	최 정 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조 원 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 인 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 영 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 효 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손 학	(주)에스씨이 이사
	윤 영 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장애시설	임 소 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고 명 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은 종 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문 용 훈	태화생숲는집 관장
	김 귀 자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관장
	김 명 연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 경 미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 한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장애	조 성 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
	홍 선 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 진 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전문의
	신 권 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해 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백 재 중	녹색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인권의학연구소)
	유 동 현	한국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소장
	전 준 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회장
	박 재 우	서초열린세상 소장
	하 경 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 원 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9) 아동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이상철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호 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김 수 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 진 호	부천실업고등학교 교감	손 귀 남	한양초등학교 교장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화	강동소아정신과 원장
이 승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이 지 경	서울 용강초등학교 교사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손 지 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김 용 옥	법무법인 IB 변호사		

■ 조정위원회

1) 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 명 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류 혜 정	법무법인 지평변호사
김 희 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		

2) 성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백 미 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기중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 현 아	법무법인 GL변호사		

3) 장애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장 명 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인권위원장	이 상 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박 승 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조 원 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4) 인권침해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 형 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름	이름 법률사무소 변호사
태 원 우	법무법인(유)로고스		

■ 행정심판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경력
당연직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 찬 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 문 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 상 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 석 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조 영 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안 성 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강 문 민 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위촉직	이 현 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왕 미 양	법무법인 탐 서초분사무소 변호사
	강 수 경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대 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인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 성 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선 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 희 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재 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박 진 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영 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이 상 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 경 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김 종 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속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오 선 희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염 형 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 윤 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 태 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가. 전원위원회

-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 개최

〈 2020년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회, 건)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1	63	23	-	40

〈 전원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 〉

회차	의안명	구분
2020-01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의 건	의결
2020-01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의결의 건	의결
2020-02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202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03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안) 의결의 건	의결
2020-03	거주지 CCTV 부당확인 등 사생활 침해사건	의결
2020-03	스포츠인권 자문위원 위촉 의결의 건	의결
2020-03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2020-04	거주지 CCTV 부당확인 등 사생활 침해사건(재상정)	의결
2020-05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20-05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의결

회차	의안명	구분
2020-06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차별	의결
2020-07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의 건	의결
2020-08	2021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의 건	의결
2020-0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08	코로나19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	의결
2020-09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차별(재상정)	의결
2020-09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20-09	직권조사결과 의결 처리에 관한 건	의결
2020-09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건	의결
2020-1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의결
2020-1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의결의 건	의결
2020-11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재상정)	의결
2020-11	직권조사결과 의결 처리에 관한 건(재상정)	의결
2020-11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안)의 건	의결
2020-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의 건	의결
2020-11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의 장애인 차별	의결
2020-12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차별(3회상정)	의결
2020-12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의 장애인 차별(재상정)	의결
2020-12	영유아용 상품의 색깔별 성별표기로 인한 차별 등	의결
2020-13	영유아용 상품의 색깔별 성별표기로 인한 차별 등(재상정)	의결
2020-13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결정의 건	의결
2020-14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3회상정)	의결
2020-14	위원회 목표설정 체계 개선방안 의결의 건	의결

회차	의안명	구분
2020-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16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16	성전환 군인에 대한 전역처분 등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	의결
2020-16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결
2020-1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 차별	의결
2020-18	북한선원 강제 복송에 따른 생명권 등 침해	의결
2020-18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의결의 건	의결
2020-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20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의무조사 및 전역처분 부당(재상정)	의결
2020-20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0-21	사형제 폐지 등에 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20-21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0-21	2021년 위원회 업무계획 의결의 건	의결
2020-2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나. 상임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

- 4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상임위원 3명)
-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 2020년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회, 건)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44	134	34	11	89

〈 상임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 〉

회차	의안명	구분
2020-01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의 건	심의
2020-01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심의의 건	심의
2020-02	농어촌 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20-02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2020-03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2020-04	2020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채택의 건	의결
2020-04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04	아동에 대한 사법제도 개선안	의결
2020-05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보고
2020-05	「고문방지협약」 쟁점 목록 의견서에 대한 의결의 건	의결
2020-06	인권침해 판단기준 연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20-06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의 건	보고
2020-06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안)심의의 건	심의

회차	의안명	구분
2020-06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07	장병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20-07	2020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20-0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08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20-08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의결의 건	의결
2020-09	○○○○병원 폐쇄병동 환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구제의 건	의결
2020-10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보고
2020-10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20-10	2020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20-10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20-10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국회 안상수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서 제출의 건	의결
202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11	2020년 인권상황 실태조사(2차) 과제 채택의 건	의결
2020-11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2020-12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0-1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20-12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업무협약(MOU) 체결의 건	의결
2020-13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20-13	2019년도 연간보고서(안) 보고	보고
2020-13	빙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20-13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실태조사 의결의 건	의결
2020-14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보고
2020-14	여성 스포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2020-14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회차	의안명	구분
2020-14	직장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	의결
2020-14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의결
2020-14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15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20-1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	의결
2020-1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	의결
2020-15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개선을 위한 권고의 건	의결
2020-15	국가인권위원회-대전광역시-대전도시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안)의 건	의결
2020-16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보고의 건	보고
2020-17	2019년 하반기 정책교육국으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보고
2020-17	2020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추진 계획(안) 보고	보고
2020-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18	2021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의 건	심의
2020-18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의결의 건	의결
2020-18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의 건	의결
2020-18	202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정 과제) 추진 방안 의결의 건	의결
2020-18	재개발 현장 음식물 반입 금지 등에 따른 긴급구제	의결
2020-19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의 건	의결
2020-20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0-21	2020년 기획조사팀 운영계획 보고의 건	보고
2020-21	교도관의 진정취하, 허위 공문서 작성 강요 진정 관련 긴급구제신청의 건	의결
2020-22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	심의
2020-22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심의의 건	심의
2020-22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의 건	의결
2020-2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개정안 의견제출 심의의 건	심의

회차	의안명	구분
2020-2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2020-2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0-23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	의결
2020-23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의결의 건	의결
2020-24	빙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20-25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2020-26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의 건	보고
2020-26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모니터링’ 보고의 건	보고
2020-26	기후변화(폭염)에 의한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의 건	의결
2020-26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2020-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27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20-27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외	의결
2020-27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28	긴급구제 처리절차 개선방안 검토보고	보고
2020-28	2020년도 상반기 보상금 지급 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2020-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2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29	노노돌봄 인권보호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0-29	2020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2020-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30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회차	의안명	구분
2020-31	위촉인권강사 강의평가 방안 연구용역 계획 보고의 건	보고
2020-31	위원회 목표설정 체계 개선방안 심의의 건	심의
2020-31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2020-32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의 건	보고
2020-32	2020년 상반기 정책교육국으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보고
2020-32	20대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0-32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3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재상정)	의결
2020-35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수용보고	보고
2020-35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수용보고	보고
2020-35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2020-35	2020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2020-35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2020-36	기후변화(폭염)에 의한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2020-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38	「보호수용법 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화신의 건	의결
2020-38	경찰의 단식 농성자에 대한 방한물품 반입 제한에 따른 긴급구제	의결
2020-39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심의의 건	심의
2020-39	경찰의 단식 농성자에 대한 방한물품 반입 제한	의결
2020-39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회차	의안명	구분
2020-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의결
2020-40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40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20-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41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20-41	유도 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	의결
2020-42	사형제 폐지 등에 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심의
2020-42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0-42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42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2020-43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20-43	정신건강 인권보도기준 추진 경과 및 최종안 보고	보고
2020-43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20-43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20-43	2021년 위원회 업무계획 심의의 건	심의
2020-43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인식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	의결
2020-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권고의 건	의결
2020-44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2020-44	강제퇴거,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0-44	2020년도 하반기 보상금 지급 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2020-4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4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0-44	감치제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의 건	의결

다. 소위원회

- 3~5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
-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별 담당 분야 〉

소위원회	담당분야
침해구제제1위원회	검찰·경찰·국정원·국회·법원 관련 침해사건 및 직권조사, 군 관련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경찰 및 군 관련 방문조사
침해구제제2위원회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경찰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제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사건 및 직권조사, 방문조사
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19개 차별사유 중 장애를 제외한 사유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사건, 직권·방문조사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침해사건, 직권·방문조사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 관련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장애사건 제외), 아동보호시설·소년원 등 진정사건, 직권·방문조사

〈 2020년 소위원회별 운영 현황 〉

(단위: 회, 건)

구분	개최횟수	안건 수			
		계	의결사항	보고사항	심의안건
합 계	71	3,745	3,095	649	1
침해구제제1위원회	16	1,027	909	117	1
침해구제제2위원회	17	1,007	851	156	-
차별시정위원회	13	562	416	146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14	929	753	176	-
아동권리위원회	11	220	166	54	-

라. 조정위원회

- 3명으로 구성(인권위원인 조정위원장 1명, 외부 조정위원* 2명)

* 조정위원은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위촉

〈 2020년 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회, 건)

합계		차별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5	5	2	2	2	2	0	0	1	1

마.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의제 수	주요 논의 내용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법 주요 내용 및 입법을 위한 방안 모색 • 인권증진행동전략 의견수렴

* 구성 : 34명(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북한인권 등 다양한 분야)

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제도개선안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입장과 의견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제도개선안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입장과 의견

* 구성 : 100명(중앙행정기관 44명, 지방자치단체 17명, 교육청 17명, 민간위원 22명)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정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도 회의 소집 가능

사.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의제 수	주요 논의 내용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기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연간업무계획보고 및 논의 • 실태조사관련 정책권고방안 검토 • 스포츠인권취약분야 현장조사 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및 논의 • 직권조사관련 경과보고 및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 관습 관련 직권조사 추진상황 보고 및 논의 • 2020년 홍보계획보고 및 추진현황보고 및 논의 • 스포츠 경기대회 모니터링 추진상황보고 및 논의 • 스포츠분야 현황 보고 및 논의
* 2019년 8회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업무계획 설명 및 논의 • 스포츠자문위원회 운영방식 논의 • 스포츠분야 성폭력 폭력 관련 실태조사계획 보고 및 논의 • 인권보호체계 관련 직권조사 계획 보고 및 논의 • 온라인 기반 실태조사 및 체육대회 설문지 검토 • 운동선수 합숙소 실태조사 계획안 관련 논의 • 홍보활동 주의사항 등 논의 • 스포츠분야 주요 사건 선정 및 발표방안 검토 • 스포츠인권 캠페인 기획 및 향후계획 보고 •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활동경과보고 및 2020년 업무계획 논의

* 1기(2019. 2. 25. ~ 2020.2.24.), 2기(2020.2.25.~2021.2.24.)

아. 전문위원회

구분	개최 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사회권전문위원회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노동인권 개선방안 •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 노동 가동연한 상향 등에 따른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연구 실시의 건 • 2021년 사회인권과 업무계획(안) 검토의 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 건
인권교육전문위원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평등법 입법 추진계획 및 시안 주요 내용
국제인권전문위원회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제2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주요 내용 및 부서별 검토 의견 •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 의견표명 검토(안) •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COVID-19 관련 위원회 활동사항 등 정리 보고
지역인권전문위원회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업무계획 보고 등 •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운영 계획 • 지역인권 보장체계 비전과 전문위원회 활동 목표 • 지역인권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사무소 역할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총괄과 2019년 업무평가 및 주요 사업 계획 •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 • 자유권 영역 진정사건 처리의 한계와 개선 방안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의 채식 제공 요청 거부 •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한 부당한 보호감호 • 노동착취 피해 이주노동자의 보호 미흡
아동인권전문위원회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개선방안 검토 • 202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사업 추진 관련 제언
차별시정전문위원회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법 추진경과 및 주요 골자 • 무기계약직 기본급 내 군 경력 불인정 • 직군을 이유로 한 근무경력 환산 차별 • 전환 공무원과 신규채용 공무원 간의 임금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전략(안) 검토 •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시설장을 겸직하는 사람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차별
장애인권전문위원회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차별) 단안시력자에 대한 소형선박조종면허 취득 제한, 중증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영어점수 졸업조건 적용, 교회의 시각장애인 예배참석 제한, 멀티플렉스 극장의 관람석 수 설치 기준에 대한 해석 • (정신장애) 동일 병원 부당 입퇴원 반복에 의한 인권침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진단 예외 규정 시행 방안

3. 2020년 결산

가. 세입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총 계	12	15.74	14.44	1.3	-	
기타 경상이전수입	10	14	13.7	0.3	-	
기타 잡수입	1	0.04	0.04	-	-	
변상금, 위약금	-	0.2	0.2	-	-	
과태료	-	1	-	1	-	
기타 재산수입	1	0.5	0.5	-	-	

나. 세출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전년이월포함)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38,370	36,187	317	1,865	
인 건 비	17,793	17,204	0	589	
기 본 경 비	8,871	8,303	300	268	
주요사업비	11,706	10,680	17	1,009	
일반 · 지방 행정 분야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1,372	1,294	-	78
	① 인권의식 향상	900	859	-	41
	② 지역인권문화 확산	472	435	-	37
	인권교육 활성화	1,737	1,627	-	100
	④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737	1,627	-	100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3,960	3,425	17	518
	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00	140	-	60
	⑥ 취약분야 인권개선	3,154	2,764	17	373
	⑦ 장애인 인권증진	606	521	-	85
	인권제도 선진화	1,460	1,343	-	117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237	1,179	-	58
	⑨ 북한인권 개선	223	164	-	59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384	1,264	-	119
	⑩ 국제교류 협력	1,094	978	-	116
	⑪ 인권단체 공동협력	290	286	-	3
	정보화(정보화)	1,794	1,727	-	67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102	1,071	-	31	
⑬ e-진정 시스템 구축운영	692	656	-	36	

4. 2020년 상담 · 진정 통계

가. 연도별 진정 · 상담 · 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진정	상담	민원 / 안내	합계
누 계	150,897	430,547	562,503	1,143,947
2020	8,948	28,182	46,153	83,283
2019	9,752	33,441	44,861	88,054
2018	9,285	32,278	45,968	87,531
2017	12,336	36,370	42,939	91,645
2016	10,647	31,616	38,020	80,28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20. 12. 31.까지 합계이다.

※ 상담은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포함

나. 2020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8,948	9,301	1,610	1	581	1	69	958	5,215	49	2,337	90
침해	6,530	6,385	634	-	307	-	37	290	3,898	39	1,760	54
차별	2,385	2,879	976	1	274	1	32	668	1,283	7	577	36
기타	33	37	-	-	-	-	-	-	34	3	-	-

다.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종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법률 구조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150,897	147,545	22,250	169	5,387	19	73	2,678	13,924	83,250	1,718	39,453	874
2020	8,948	9,301	1,610	1	581	0	1	69	958	5,215	49	2,337	90
2019	9,752	9,138	1,041	5	488	0	1	63	484	5,515	131	2,444	7
2018	9,285	10,185	1,614	6	547	0	7	141	913	5,747	78	2,729	17
2017	12,336	11,012	1,601	9	357	0	19	88	1,128	6,571	104	2,709	27
2016	10,647	10,868	1,462	21	249	1	18	158	1,015	6,405	95	2,875	31
2015	10,695	10,894	1,287	8	173	0	1	314	791	6,245	87	3,143	132
2014	10,923	10,331	1,217	23	142	1	1	329	721	6,013	56	2,978	67
2013	10,056	10,427	1,380	2	217	2	2	353	804	5,893	29	3,086	39
2012	9,582	9,580	1,212	3	329	2	2	145	731	5,392	24	2,906	46
2011	7,357	7,085	1,231	11	321	2	2	196	699	3,436	40	2,356	22
2010	9,168	8,392	1,527	9	305	1	1	224	987	4,476	153	2,149	87
2009	6,985	6,788	1,621	5	319	0	2	208	1,087	3,046	88	1,961	72
2008	6,309	6,466	1,556	12	335	1	2	75	1,131	3,003	113	1,729	65
2007	6,274	6,064	1,730	13	276	2	3	98	1,338	2,892	138	1,262	42
2006	4,187	4,206	1,214	17	281	1	10	46	859	1,836	81	1,049	26
2005	5,617	5,350	595	6	224	2	0	85	278	3,142	155	1,408	50
2004	5,368	5,804	181	6	112	4	1	58	0	4,028	154	1,387	54
2003	3,815	3,797	130	9	95	0	0	26	0	2,766	116	785	0
2002	2,790	1,856	40	2	36	0	0	2	0	1,629	27	160	0
2001	803	1	1	1	0	0	0	0	0	0	0	0	0

5. 2020년 업무 총괄도

비 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 명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4대 전략 목표	성과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④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구제 ⑦ 장애인 등 탈시설(사회복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⑧ 이주민·난민의 인권보호 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 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⑱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 특별 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기획 사업 >	위원회 역량 강화

6. 2020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정책권고

연번	권고명	의결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1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직권조사 관련 정책권고	1. 22.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수용
2	학생상담시스템 운용에 대한 정책권고	2. 7.	교육부	일부수용
3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	2. 10.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수용
4	장기결석 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3. 10.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수용
5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 배제 관련 제도개선	3. 27.	○○○○시교육청	수용
6	2019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5. 14.	보건복지부	검토중
7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5. 21.	고용노동부	일부수용
8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 개선	5. 26.	행정안전부	검토중
9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 개선 권고	5. 28.	6개 요양원	검토중
10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	6. 23.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감, ○○체육회	검토중
1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6. 23.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직장운동경기부운영 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체육회장및시군구 체육회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검토중

연번	권고명	의결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12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7. 6.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검토중
13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8. 28.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검토중
14	요양병원 인권교육 의무화 정책검토	9. 10.	보건복지부	검토중
15	감사 시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개선 권고	10. 6.	해양수산부	검토중
16	2020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	10. 13.	국방부	검토중
17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아동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	10. 22.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중
18	기후변화(폭염)에 의한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10. 29.	고용노동부	검토중
19	교육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차별 직권조사 관련 정책권고	12. 3.	17개 시도교육청	검토중
20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12. 17.	보건복지부	검토중
21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12. 10.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회	검토중
22	유도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12. 10.	문화체육관광부 ○○유도회	검토중
2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2. 14.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검토중
24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권고	12. 17.	금융위원회	검토중
25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12. 17.	보건복지부	검토중
26	강제퇴거,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12. 24.	국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검토중
27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2. 24.	보건복지부	검토중
28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개선 권고	12. 28.	보건복지부	검토중

■ 의견표명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	혼인 시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	1. 29.	법무부
2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1. 29.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1. 30.	국회
4	고문방지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 쟁점 목록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 제출	2. 6.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 10.	국회
6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2. 13.	보건복지부
7	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 중인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2. 17.	법무부
8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성폭력 피해 여성 치료 관련 여성보호사 채용 등에 관한 의견표명	2. 19.	보건복지부
9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2. 19.	○○○○고용센터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 20.	국회
11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시기 제한	2. 26.	행정안전부
1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3. 12.	국회
13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3. 16.	○○시 보건복지부
14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거주자전용주차 선정 의견표명	3. 16.	○○○○○○공사
15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거부 의견표명	3. 16.	○○○○ 주식회사 ○○랜드 리조트
16	성희롱 사건 관련 대학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재발방지 의견표명	3. 27.	○○○○대학교
17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4. 2.	국회
18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4. 7.	○○○○시교육청
19	인권친화적 학생 복장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표명	4. 7.	○○고등학교
20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4. 16.	경찰청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21	매입임대주택 배정 방식 개선(승강기)에 대한 의견표명	4. 20.	○○○○○○○○공사 ○○○○○○○○공사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4. 23.	경찰청
23	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4. 28.	○○항공 주식회사
24	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4. 28.	△△항공 주식회사
25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 6.	검찰청
26	중학교 전학 시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요구에 관한 의견표명	5. 12.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5. 21.	금융위원회
2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5. 21.	행정안전부
29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5. 2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원 7개 피진정회사
30	여성비하 발언 등 괴롭힘에 대한 의견표명	5. 26.	김○○
31	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 기재 관련 의견표명	6. 12.	교육부
32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난독증 수험생 편의 미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6. 12.	교육부 한국○○○○○○원
33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시 권리고지 관련 관행 개선 의견 표명	6. 12.	보건복지부
34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반 편성 관련 「학교규칙」 개선 의견표명	6. 12.	○○초등학교
35	재판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6. 26.	법원행정처
36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6. 29.	○○병원
37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6. 30.	국회
38	교육 현장에서의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의견표명	7. 2.	○○○○○○도교육청
39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7. 6.	법무부
40	거주시설 시설장의 장애인 탈시설 방해 행위 등에 관한 의견표명	7. 7.	○○성공회 ○○교구 사회복지재단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41	사건기록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7. 16.	검찰, 법원행정처
42	대중교통수단 이용 호송시 수용자 복장 관련 의견표명	7. 22.	법무부
43	보호실 차폐물 설치 및 장기 금지 제한 관련 의견표명	7. 22.	법무부 ○○구치소
44	학교전담경찰관의 학생 면담 시 신뢰관계자 동석에 관한 의견표명	7. 28.	경찰청
4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8. 13.	고용노동부
46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8. 13.	고용노동부
47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8. 13.	고용노동부
48	교도소의 부당한 징벌처분 등	8. 13.	법무부
49	정신요양시설의 폐쇄형태 생활실 개선 등에 관한 의견표명	8. 14.	○○수양원
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8. 21.	국회, 법무부
5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8. 27.	법무부
5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8. 27.	여성가족부
53	○○문화복지회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9. 1.	○○문화복지관
5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9. 1.	○○회관
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9. 3.	보건복지부
56	경찰의 사건관계자 정신질환 정보 임의공개에 대한 의견표명	9. 21.	경찰청
57	○○○○재단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견표명	9. 21.	○○○○재단
58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의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9. 21.	대통령비서실
59	코로나19를 사유로 한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절차(추가진단) 위반 의견표명	9. 21.	보건복지부
60	감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9. 21.	감사원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61	정신의료기관의 병실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9. 21.	보건복지부
62	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9. 22.	교육부
63	학교 밖 청소년의 국회 체험 프로그램 참여 불가 등	9. 22.	국회사무처
64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	9. 22.	17개 시도 교육청
65	비학생 청소년 교통시설 이용상 차별	9. 22.	국토교통부
66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표명	9. 24.	보건복지부
67	외국인 수용자 통역 제공 관련 의견표명	10. 6.	○○교도소
6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0. 8.	여성가족부
69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10. 12.	방송통신위원회
7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10. 12.	국토교통부
71	「국가인권정책협약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10. 26.	법무부
72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10. 26.	○○○○경찰청
7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0. 29.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74	체포적부심 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견표명	11. 4.	경찰청
75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 차별 의견표명	11. 9.	행정안전부
76	보호수용법 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11. 12.	법무부
77	아동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의견표명	11. 17.	보건복지부
78	혹서기 초등학교 정구대회 개최 관련 의견표명	11. 17.	○○체육회 ○○소프트테니스협회 문화체육부
79	북한선원 강제송환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1. 23.	통일부장관
80	장애인거주시설 이성종사자의 돌봄 관련 의견표명	11. 24.	사회복지법인 ○○○○ ○○원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81	경찰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11. 25.	법무부, 경찰청
82	코로나19 상황 통제에 따른 장병 경조사 청원	11. 25.	국방부
8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11. 26.	경찰청
84	변호인 접견시설 미흡 등	11. 27.	법무부
85	수용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실시 관련 의견표명	11. 27.	○○교도소
86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장 문구 관련 의견표명	11. 27.	법무부
87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의 사망 관련 의견표명	11. 27.	○○체육회, ○○빙상경기연맹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대학교
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1. 30.	국회
8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경찰) 등에 대한 의견표명	12. 3.	경찰청
90	교사 등의 학생의 양심의 자유 침해 관련 의견표명	12. 21.	○○고등학교
9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12. 24.	국회행정안전위원회
9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2. 28.	국회
93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의견표명	12. 29.	인사혁신처

■ 의견 제출

연번	의견제출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	사형제 폐지 등에 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한 의견제출	12. 28.	헌법재판소

나.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 검찰·경찰·법원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과 폭행 등	19-진정-0088400	1. 22.	수용
2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19-진정-0059900	2. 26.	검토중
3	경찰의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19-진정-0609400	3. 18.	수용
4	경찰의 불법체포 및 과도한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068100	4. 16.	검토중
5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	18-진정-0657300	5. 6.	검토중
6	검찰의 벌금 납부 독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20-진정-0155200	5. 6.	수용
7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19-진정-0551500	5. 6.	수용
8	수사관의 강압 수사 등	19-진정-0678900 등 7건 병합	5. 27.	검토중
9	경찰의 부당한 출석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579000	5. 27.	수용
10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19-진정-5008300 등 2건 병합	6. 2.	수용
11	경찰관의 부당한 소지품 압수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	19-진정-0429400	6. 22.	검토중
12	경찰들의 가택 무단침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638800	6. 22.	수용
13	부당한 출국금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084900	6. 22.	검토중
14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0-진정-0240700	6. 22.	수용
15	체포 시 과도한 뒷수갑 사용과 휴대전화 수색	19-진정-0683300	6. 22.	수용
16	법원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개문	19-진정-0848300	6. 26.	검토중
17	검사의 반말 등 인권침해	19-진정-0663300	6. 26.	검토중
18	경찰관들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219800 등 2건 병합	7. 16.	수용
19	경찰의 과도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480900	7. 16.	수용
20	속옷차림 현행범인 체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	20-진정-0401800	7. 16.	수용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21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장구사용 등 인권침해	19-진정-0056400	7. 16.	수용
22	경찰차량 호송 시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200600	8. 25.	검토중
23	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및 심야조사 등 인권침해	19-진정-0484900	8. 25.	검토중
24	경찰의 뒷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602300	8. 25.	수용
25	경찰의 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진정-0322800	8. 25.	수용
26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20-진정-0065200	8. 25.	검토중
27	형집행장에 의한 피체포자 수갑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713000	8. 25.	검토중
28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100300	9. 14.	검토중
29	경찰의 바디캠 영상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240600	9. 15.	검토중
30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조사	20-진정-0256500	10. 13.	검토중
31	경찰의 주취자에 대한 과잉 장구사용	20-진정-0523700	11. 4.	검토중
32	경찰의 유치인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	19-진정-0819100 등 6건 병합	11. 4.	검토중
33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 부당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191400	11. 4.	검토중
3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2차 가해 등	19-진정-0967400	11. 25.	검토중
35	경찰의 전기충격기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336300	11. 25.	검토중
36	경찰의 부적절한 출석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320500	11. 25.	검토중
37	경찰관의 미성년자에 대한 과도한 수갑 사용 등	20-진정-0825200	12. 21.	검토중

■ 군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수술환자 병사에 대한 관리 및 보호조치 소홀 등	18-진정-0539800	1. 22.	수용
2	직장 상사의 부당한 폭언 등	19-진정-0721800 등 2건 병합	1. 22.	수용
3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한 사망사건	19-진정-0688700	1. 22.	수용
4	주임원사에 의한 성희롱 등	19-진정-0659900	2. 26.	검토중
5	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 축소 은폐 등	19-진정-0905500 등 2건 병합	2. 26.	수용
6	사망사고 병사에 대한 정서적 가혹행위 및 부대 관리·감독 소홀	18-진정-0898900	2. 26.	수용
7	거주지 CCTV 부당확인 등 사생활 침해사건	19-진정-0789100	3. 23.	수용
8	군부대 상사의 강제이발	20-진정-0044200 등 2건 병합	4. 16.	수용
9	과도한 신체접촉 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등	19-진정-0824100	5. 6.	수용
10	집회시위 과정에서 군부대의 인권침해	18-진정-0734800 등 3건 병합	5. 27.	수용
11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20-진정-0195500	5. 27.	수용
12	하급자 전출을 목적으로 한 징계정보 유출 등	19-진정-0297500 등 2건 병합	6. 22.	검토중
13	체력단련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서약서 강요	19-진정-0411000	6. 22.	수용
14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181200	6. 22.	검토중
15	초급간부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9-직권-0004300	7. 16.	수용
16	의료조치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19-진정-0198900	8. 25.	검토중
17	환자상태 훈련병에 대한 과도한 열차려 부여 등	19-진정-0243900	9. 15.	수용
18	군간부 독신자숙소 출입문 잠금장치 수집 등에 따른 인권침해	19-진정-0892800	9. 15.	검토중
19	군사법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질의	20-진정-0229700	10. 13.	검토중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20	군 휴가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19-진정-0277500	11. 4.	검토중
21	군의 4.15. 총선 시 투표 인증샷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653300	12. 22.	검토중
22	군의 부당한 감찰조사 등 인권침해 사건	20-진정-0676000	12. 22.	수용

■ 구금시설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교도소 측의 부주의에 따른 진정인의 치아손상 치료 미흡	19-진정-0087400	3. 31.	검토중
2	수형자에 대한 방송 인터뷰 불허	19-진정-0637100	4. 13.	수용
3	수용자에 대한 조사시 진술거부권 등의 미고지	19-진정-0781300	5. 28.	수용
4	피감정 유치자에 대한 일률적인 실외운동 제한	19-진정-0789400	5. 28.	수용
5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	19-진정-0333800	6. 12.	검토중
6	교정시설 간부들의 순시 시 정렬 등 부당한 지시	19-진정-0944800 등 2건 병합	6. 12.	수용
7	교도관의 진정취하, 허위 공문서 작성 강요 등 괴롭힘	20-진정-0359200	7. 22.	검토중
8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19-진정-0728300 등 15건 병합	8. 13.	수용
9	장기간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19-진정-0312700 등 2건 병합	9. 10.	검토중
10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분리조치 미흡에 따른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20-진정-0253200	9. 10.	검토중
11	구치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계속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858500	10. 6.	검토중
12	근무 중 휴대전화 일괄 수거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412000	10. 6.	검토중
13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20-진정-0083900	11. 2.	검토중

■ 다수인보호시설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정신병원의 인격권 침해 등	19-진정-0042800	1. 29.	수용
2	정신의료기관 내 휴대전화 제한 등	19-진정-0700400	1. 29.	수용
3	정신병원의 장기간 강박	19-진정-0415300	1. 29.	수용
4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기능 제한 및 부당한 격리·강박	18-진정-0886800	1. 29.	검토중
5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직권-0004500	1. 29.	기타
6	장애인 촬영 동영상 무단 전송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859700	2. 19.	수용
7	정신병원 자의입원 환자 퇴원 거부 및 강박	19-진정-0187000	2. 19.	수용
8	정신병원 과도한 격리 및 편의제공 미흡 등	18-진정-0863200	2. 19.	검토중
9	정신병원 응급조치 미흡	19-진재-0003400	2. 26.	수용
10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및 강제입원 등	19-진정-0404100	3. 16.	검토중
11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과 격리, 강박 및 긴급통화 차단 등	19-진정-0336100 등 3건 병합	3. 16.	검토중
12	정신병원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466800 등 2건 병합	4. 20.	수용
13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 및 진정서 발송 지연	20-진정-0073200	5. 14.	검토중
14	목욕 중 샤워실 문 외부 잠금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320700	5. 14.	검토중
15	입원환자의 동의 없는 병실이전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094500	6. 12.	검토중
16	정신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의 CCTV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087500	6. 12.	검토중
17	입원적합성심사 절차위반	19-진정-5007200	6. 12.	수용
18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19-진정-5010301	7. 27.	검토중
19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043600	7. 27.	검토중

6. 2020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20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	20-진정-0310500	8. 14.	검토중
21	격리·강박 시 부당한 기저귀 착용 등	20-진정-0456100	9. 1.	검토중
22	동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 절차 위반 등	20-진정-0393100	9. 1.	검토중
23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절차 위반	19-진정-0738200	9. 1.	검토중
2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20-진정-0183400	9. 1.	검토중
25	입원환자에 대한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제한 등	20-진정-0146700	9. 21.	검토중
26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조치 미흡 등	20-진정-0314900	9. 21.	검토중
27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20-진정-0513000	10. 22.	검토중
28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권리 미고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063300 등 2건 병합	11. 24.	검토중
29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지시 없는 격리 등	20-직권-0001500	12. 21.	검토중
30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부당한 격리·강박 등	20-진정-0375401	12. 21.	검토중
31	정신병원 폐쇄병동 내 휴대전화·공중전화 사용 제한	20-진정-0361900	12. 21.	검토중
32	격리·강박 중 부적절한 응변 처리 등	20-진정-0458200 등 2건 병합	12. 21.	검토중
33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에 대한 강제 탈의	20-진정-0458200 등 2건 병합	12. 21.	검토중
34	과도한 강박 및 전화사용 제한 등	20-진정-0641900	12. 21.	검토중

■ 중앙행정기관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18-진정-0545600	2. 17.	수용
2	직장상사의 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19-진정-0656500	4. 13.	수용
3	부당한 피의자 신문 등 인권침해	19-진정-0598700	5. 27.	수용
4	공무원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663200	5. 28.	수용
5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담당자의 성희롱	19-진정-0868100	6. 22.	수용
6	해경의 안전점검 시 부당한 사물함 검사 및 신체접촉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091200	8. 25.	검토중
7	고용보험수사관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663101	9. 10.	검토중
8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고지 미흡	20-진정-0493900	9. 15.	수용
9	내부고발인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035400	11. 2.	검토중

■ 지방자치단체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주민 체납 내역 공개	19-진정-0140800	1. 31.	수용
2	채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	19-진정-0133600	2. 17.	검토중
3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19-진정-0865000	2. 17.	수용
4	지자체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262600	3. 31.	검토중
5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상급자의 욕설 및 폭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건	20-진정-0034400	4. 16.	검토중
6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욕설	20-진정-0015200 등 2건 병합	4. 16.	수용
7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	20-진정-0234400	5. 21.	일부수용
8	주민센터의 긴급복지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거의 자유 침해	19-진정-0821900	5. 28.	검토중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9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등	20-진정-0264200	5. 28.	검토중
10	지자체 공무원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20-진정-0194400 등 2건 병합	6. 12.	검토중
11	시청 직원의 내부공문에 의한 개인정보 공개	20-진정-0337300	6. 29.	수용
12	지자체의 당사자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938200	8. 13.	검토중
13	코로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진정-0607400	11. 2.	검토중
14	지자체의 버스불편민원 피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20-진정-0573200	11. 2.	검토중
15	지자체공무원의 민원 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20-진정-0320900	11. 27.	검토중
16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251500	11. 27.	검토중
17	직속팀장의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0-진정-0533300	11. 27.	검토중
18	담당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욕설 등	20-진정-0750700	12. 22.	검토중
19	공무원의 욕설	20-진정-0821900	12. 23.	검토중

■ 공공기관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 불허에 의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	19-진정-0319100	2. 17.	검토중
2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449900	4. 13.	수용
3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606300	6. 29.	검토중
4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838100	8. 13.	수용
5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 인격권 침해	20-진정-0426800	10. 6.	검토중
6	고충 상담에 대한 보복성 폭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906300 등 4건 병합	10. 6.	검토중
7	공단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20-진정-0297400	12. 23.	검토중

■ 교육기관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공직자 비위사실 등의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461300	1. 31.	수용
2	중학교 배정시 교육청의 개인정보 요구	19-진정-0795600	2. 7.	일부수용
3	대학의 부당한 현수막 게시 거부 등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19-진정-0538500	2. 17.	수용
4	중학교의 휴대전화 압수 규정에 따른 통신의 자유 침해	19-진정-0957800	3. 10.	수용
5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흡	19-진정-0373800	3. 10.	검토중
6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두발 및 교실 내 외투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899700	4. 7.	검토중
7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9-진정-0448600	4. 7.	검토중
8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644000	4. 7.	검토중
9	대학 인권센터 조사 중 피조사자 방어권 침해	19-진정-0110000	4. 13.	일부수용
10	성희롱 관련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573300	4. 29.	수용
11	학교의 교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19-진정-0528800 등 4건 병합	4. 29.	수용
12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827700	4. 29.	검토중
13	학교폭력자치지역위원회 청구인에 대한 휴대폰 압수 등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20-진정-0096300	4. 29.	수용
14	고등학교 기숙사의 학생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	19-진정-0407600	5. 12.	검토중
15	대학교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9-진정-0831700 등 3건 병합	5. 28.	검토중
16	교사의 체벌 및 반성문 작성 강요 등	19-진정-0591200	6. 2.	검토중
17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 유출로 인한 학습권 침해	19-진정-0903400	6. 2.	수용
18	대학의 집회 학생에 대한 폭력 진압 등	17-진정-0591600	6. 29.	검토중
19	개인정보 누설 및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348800	6. 29.	수용
20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가입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883300	6. 30.	검토중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21	중학교의 수업시간 등 외투 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891200	6. 30.	수용
22	아동에 대한 자리 배치 및 강제 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	19-진정-0807000	6. 30.	수용
23	초등학생에 대한 원거리 학교 배정	19-진정-0685900 등 2건 병합	6. 30.	수용
24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폭언 등	19-진정-0726400	6. 30.	검토중
25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병가 및 연가 처리 등 업무배제	19-진정-0154500	7. 22.	검토중
26	국립대학교의 질병휴직 연장 불허 등	20-진정-0071900	7. 22.	검토중
27	학교의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776800	7. 28.	수용
28	학교의 두발 제한에 의한 자기결정권 등 침해	19-진정-0496000	9. 22.	검토중
29	교사의 초등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20-진정-0079500	9. 22.	검토중
30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미흡	20-진정-0105600	9. 22.	수용
31	중학교의 학생 표현의 자유 제한 등	20-진정-0143500	9. 22.	검토중
32	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내용 공개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252000	11. 2.	검토중
33	유치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20-진정-0524500	11. 17.	검토중
34	중학교 배정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0-진정-0743600	12. 21.	검토중
35	학교폭력전담교사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진정-0749400	12. 21.	검토중
36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420500	12. 21.	검토중

■ 출입국관리기관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703100	3. 31.	검토중
2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19-진정-0360200	4. 29.	검토중
3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오류로 인한 인권침해	18-진정-0572400	9. 10.	검토중
4	보호실 내 CCTV 모니터링 및 외부진료 불허	19-진정-0943400	11. 2.	검토중
5	출입국·외국인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사망사건	19-진정-0968500	12. 23.	검토중

■ 스포츠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학교운동부 감독 및 코치의 선수 인권침해	19-진정-0431400 등 2건 병합	2. 7.	수용
2	초등학교 야구부 지도자의 폭언에 의한 학생 선수 인권침해	19-진정-0258900	3. 10.	검토중
3	대학교수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	19-진정-0511100	3. 31.	검토중
4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 미흡	19-진정-0890500	3. 31.	검토중
5	학교폭력 사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088300	4. 7.	수용
6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 비하 발언 등	19-진정-0981200	4. 20.	검토중
7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704200	4. 29.	수용
8	대학교 기숙사에서의 선수 간 성폭력	20-진정-0115800	7. 2.	기타
9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20-진정-0188600	8. 13.	수용
10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 등	20-진정-0370200	10. 20.	검토중
11	초등학교 배드민턴 코치의 학생 성추행 방조 및 폭행 등	19-진정-0163200	10. 22.	검토중
12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083300 등 2건 병합	10. 22.	검토중
13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력, 욕설, 휴식권 침해 등	20-진정-0539300	11. 17.	검토중
14	체육전문고등학교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20-진정-0620300 등 2건 병합	11. 17.	검토중
15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20-진정-0427700	12. 23.	검토중
16	체육지도자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학교의 조치 미흡	20-진정-0237400	12. 23.	검토중

다. 차별행위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 성차별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19-진정-0493800 19-진정-0939000	4. 28.	검토 중
2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19-진정-0595700	7. 30.	검토 중
3	경조휴가부여시 외가 차별	19-진정-0058400	7. 30.	검토 중
4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20-진정-0222100	7. 30.	검토 중
5	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	20-진정-0106800	7. 30.	검토 중
6	여성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이용자 차별	19-진정-0688200	10. 15.	검토 중

■ 성희롱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및 2차 피해 등	19-진정-0787100	3. 27.	검토중
2	직장상사의 성희롱 및 회사의 부당 처우	19-진정-0329700	3. 27.	수용
3	회사 대표이사의 직원 성희롱	19-진정-0897300	5. 26.	일부수용
4	통역업무수행 중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19-진정-0489500	7. 2.	검토중
5	대표이사의 성추행 등	20-진정-0263800	7. 30.	검토중
6	대사관 상사에 의한 외국인 직원 성희롱 등	18-진정-0858400	7. 30.	검토중
7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원 성희롱	19-진정-0942400	8. 25.	검토중

■ 장애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시각장애인 사전투표 편의제공 미흡	18-진정-0483800	1. 29.	불수용
2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19-진정-0928600 등 10건	2. 10. 등 7회	수용
3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8-진정-0670600	2. 19.	검토중
4	장애인에 대한 시설(사우나) 이용 거부	19-진정-0037300	3. 16.	검토중
5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9-진정-0242600	4. 7.	검토중
6	지자체 체육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9-진정-0035900	4. 20.	수용
7	장애를 이유로 한 수영장 이용 제한 등	19-진정-0156600	4. 20.	수용
8	메인뉴스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한국수어통역 미제공 등	19-진정-0130100	4. 20.	수용
9	국가직공무원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 제한 등	19-진정-0314400	5. 14.	수용
10	경찰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및 부당한 수사	20-진정-0100700	6. 12.	수용
11	농인에 대한 온라인 렌탈 신청 거부	19-진정-0349500	6. 12.	수용
12	시각장애인 통장개설 시 보호자 대동 요청에 의한 장애인차별	19-진정-0838300	7. 7.	수용
13	장애학생 학교배정 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19-진정-0606900	7. 27.	수용
14	장애인에 대한 학습권 침해	19-진정-0369100	7. 27.	검토중
15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 등	19-진정-0514200	7. 27.	수용
16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20-진정-0052500	8. 24.	검토중
17	구급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19-진정-0096100	9. 21.	검토중
18	청각장애인에 대한 온라인 공개강좌 포탈의 편의 제공 미흡	20-진정-0200800	11. 24.	검토중
19	기면증수험생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9-진정-0618500	11. 24.	검토중
20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20-진정-0254700	12. 21.	검토중

■ 나이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신집현전 태학사 과정 모집 시 나이 차별	19-진정-0873300	4. 28.	수용
2	한국프로볼링협회의 프로볼러 선발 시 나이제한 등	20-진정-0621400	11. 12.	불수용

■ 사회적 신분 등 고용상 지위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19-진정-0731200	1. 22.	일부수용
2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차별	18-진정-0694500	3. 27.	수용
3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를 이유로 한 경력인정 차별	19-진정-0564000	3. 27.	수용
4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따른 고용차별	19-진정-0593200	3. 27.	불수용
5	정부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원 임금 차별	19-진정-0858000	3. 27.	수용
6	호봉 산정 시 기간제교사 경력 차별	20-진정-0075600	4. 28.	수용
7	동종업무 수행 전문계약직에 대한 처우 차별	19-진정-0741500	5. 26.	수용
8	대학의 직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19-진정-0606100	7. 30.	불수용
9	기간제 직원에 대한 고용차별	19-진정-0980800	8. 25.	수용
10	직군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19-진정-0245100	9. 15.	검토중
11	공동교육과정 수당 지급에서 교육공무원 차별	20-진정-0297700	9. 15.	수용
1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19-진정-0542300	11. 12.	검토중
13	경력인정 기준에서의 차별 처우	19-진정-0973500	11. 12.	검토중
14	호봉획정에서의 계약직 경력인정 차별	20-진정-0656800	11. 12.	검토중
15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20-진정-0373400	12. 3.	검토중
16	기간제근로자(해외취업전문가)의 일방적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차별	19-진정-0686700	12. 29.	검토중

■ 종교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부교수 승진대상 제외	19-진정-0383000	1. 22.	불수용
2	종교에 따른 채용 차별	20-진정-0059600	3. 27.	불수용
3	대학교 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진정-0118500	8. 25.	검토중
4	히잡 착용을 이유로 취업에서의 차별	19-진정-0461800	12. 29.	검토중

■ 병력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병력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	19-진정-0935800	3. 27.	수용
2	경찰공무원 채용, 의무경찰 모집 시 내반슬(오다리)을 이유로 한 지원 제한	19-진정-0707500	8. 25.	수용
3	신원진술서상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검사임용에서의 차별	20-진정-0490600	10. 15.	수용
4	HIV감염인 침상 표지에 따른 차별	19-진정-0979700	12. 29.	검토중

■ 성적 지향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교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게시 불허	19-진정-0204000	1. 22.	불수용

■ 기타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불인정	19-진정-0957300	1. 22.	수용
2	공사의 운전원 채용 시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한 고용 차별	19-진정-0864500	2. 26.	수용
3	교수협의회 소속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19-진정-0092100	3. 27.	일부수용
4	교원해외파견자 선발 시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한 차별	19-진정-0526800	4. 28.	수용
5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 배제 차별	19-진정-0875100	7. 2.	검토중
6	무자녀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	20-진정-0313300	7. 2.	검토중
7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	20-진정-0240300	7. 30.	수용
8	지자체의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미지급	20-진정-0364600	7. 30.	일부수용
9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차별	20-진정-0501901	9. 15.	검토중
10	2차병원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고용 차별	19-진정-0680700	10. 15.	검토중
11	대학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19-진정-0965400	10. 15.	검토중
12	재단법인 채용 시 출신지역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20-진정-0210900	10. 15.	검토중
13	지자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외동포 (F4비자) 배제	20-진정-0632000	11. 12.	검토중
14	카지노업체의 힘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 차별	20-진정-0681000	12. 3.	검토중
15	정규직 전환 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자 배제	20-진정-0181900	12. 29.	검토중

라.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 직권조사

연번	제목	직권조사 개시결정	조사 대상 기관
1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 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6. 23.	○○체육대학교 등 10개 대학
2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직권조사	6. 30.	보건복지부,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찰서), 충남 ○○시, 경남 ○○군, 경북 ○○시 등
3	동일병원 내 부당한 입퇴원 반복으로 인한 인권침해	7. 27.	○○병원
4	정신의료기관 의사 지시 없는 경리강박 등 직권조사	7. 27.	○○○○병원
5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30.	서울특별시
6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 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7. 30.	17개 시도 교육청
7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 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8. 10.	17개 시도교육청
8	장애인거주시설 ○○홈 거주인 건강권 직권조사	9. 1.	장애인거주시설 ○○홈
9	법률업무 담당 채용 응시자격 제한 직권조사	11. 23.	17개 시도 교육청

■ 방문조사

연번	방문조사명	방문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1	2020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	4 ~ 10월	육군 4개, 해군 및 공군 각 1개
2	2020년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방문조사	5월~	정신의료기관 14개
3	2020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6~12월	교정시설 10개
4	2020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7월~	외국인보호기관 5개
5	2020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8월~	아동양육시설 6개
6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10월~	장애인거주시설 10개
7	2020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10월~	노인복지시설 10개

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현황

연번	과제명	수행기관	기간
1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4. 10. ~ 10. 8.
2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 10. ~ 10. 8.
3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서울대 산학협력단	4. 22. ~ 10. 21.
4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5. 18. ~ 11. 17.
5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5. 19. ~ 12. 17.
6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5. 25. ~ 11. 24.
7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공익법센터 어필	5. 25. ~ 12. 21.
8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문화사회연구소	6. 1. ~ 11. 27.
9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전북대 산학협력단	6. 9. ~ 12. 3.
10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 17. ~ 12. 15.
11	여성 스포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행복한 일 연구소	6. 17. ~ 12. 16.
12	스포츠분야 해외 선진제도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6. 18. ~ 12. 16.
13	장병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6. 19. ~ 12. 18.
14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평화인권교육센터	6. 25. ~ 12. 24.
15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인권정책연구소	4. 13. ~ 10. 12.
16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한신대 산학협력단	4. 21. ~ 8. 20.
17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주민과함께	4. 22. ~ 11. 21.
18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용역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5. 15. ~ 11. 14.
19	아동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서울신학대 산학협력단	5. 15. ~ 12. 14.
20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사단법인 두루	5. 18. ~ 11. 14.

연번	과제명	수행기관	기간
21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노동법학회	6. 12. ~ 12. 11.
22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젠더정책연구소 여세연	6. 16. ~ 12. 15.
23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용역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6. 17. ~ 9. 16.
24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인권연구소	6. 17. ~ 11. 16.
25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리얼미터	3월 ~ 4월
26	성희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행복한 일 연구소	6. 17. ~ 12. 16.
27	학교분야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모니터링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6. 22. ~ 12. 21.

7. 2020년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현황

가. 국제회의의 참가 현황

연번	회의명	출장기간(기간)	출장지/방식	출장자(참가자)
1	APF 워크숍(GANHRI 등급심사 대비 교육)	1. 18. ~ 1. 24.	카타르 (도하)	국제인권과장 외 1명
2	GANHRI 주최, 코로나19와 노인인권	6. 22.	화상회의	국제인권과장 외 1명
3	제25차 APF 연례회의	9. 9.	화상회의	위원장 외 3명
4	소셜미디어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대응 관련 '아태지역 포럼(The Opening Meeting of the Asia-Pacific Regional Forum) * 유엔 소수자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Rapporteur on Minority Issues) 주관	10. 19.	화상회의	차별시정국장
5	GANHRI 연례회의	11. 30. ~ 12. 4.	화상회의	국제인권과장 외 1명

나. 국제회의의 개최 현황

연번	회의명	일시/장소
1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9. 17.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화상회의)
2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	12. 7. / 나인트리호텔(화상회의)

8. 위원회 간행물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연간 보고서	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9	기획재정담당관	5월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9	기획재정담당관	5월
	3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기획재정담당관	7월
결정례집	4	2002~2020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결정례집	인 권 정 책 과	12월
	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2집(2019)	행정법무담당관	9월
	6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9집(2020)	성 차 별 시 정 팀	7월
실태조사보고서·연구용역보고서	7	2019 국가인권통계 심층보고서	기획재정담당관	12월
	8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기획재정담당관	12월
	9	2020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아동청소년인권과	11월
	10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 회 인 권 과	10월
	11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인 권 정 책 과	9월
	12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사 회 인 권 과	12월
	13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인권교육운영팀	12월
	14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조사	사 회 인 권 과	11월
	15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16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연구	인권교육기획과	11월
	17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인권교육운영팀	12월
	18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성 차 별 시 정 팀	12월
	19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성 차 별 시 정 팀	12월
	20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스 포 츠 인 권 특 별 조 사 단	12월
	21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구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22	위촉인권강사 강의평가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인권교육운영팀	12월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23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 권 정 책 과	11월	
	24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 방안 연구	인 권 정 책 과	12월	
	25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권침해조사과	12월	
	26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조 사 총 괄 과	12월	
	27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 회 인 권 과	12월	
	28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정책 개선과제 연구	장애차별조사2과	11월	
	29	정신재활시설 운영 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장애차별조사2과	10월	
	3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혐 오 차 별 대 응 기 획 단	6월	
	31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32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인 권 교 육 기 획 과	12월	
	33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혐 오 차 별 대 응 기 획 단	9월	
	34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혐 오 차 별 대 응 기 획 단	12월	
	35	평등법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차별시정총괄과	12월	
	36	한국의 인권통계 2020	기획재정담당관	12월	
	37	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인권교육기획과	12월	
	교육 자료	38	스포츠가버려야할것들 :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	스 포 츠 인 권 특 별 조 사 단	12월
	자료 집	39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2주년 기념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	부산인권사무소	10월
40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토론회	광주인권사무소	5월	
41		2020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코로나19 시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인 권 정 책 과	11월	
42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43		2020 인권옹호자회의	홍 보 협 력 과	8월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44	2020년 상반기 인권경영포럼 : 대체 자료집	사 회 인 권 과	6월
	45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코 로 나 1 9 특 별 대 응 팀	9월
	46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기획재정담당관	6월
	47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 입법부를 중심으로	국 제 인 권 과	12월
	48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부산인권사무소	10월
	49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모색(정보인권포럼)	인 권 정 책 과	11월
	50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 방안	부산인권사무소	10월
	51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인권 : 코로나-19 현안 집담회	광주인권사무소	5월
	52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대학공동체의 역할과 책임	인권교육기획과	11월
	53	혐오차별의 극복과 민주인권 가치의 실현, 차별금지의 법제화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차별금지회의)	차별시정총괄과	10월
일 반 단 행 보	54	Report on Hate Speech	혐 오 차 별 대 응 기 획 단	12월
	55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2020. 12.)	행정법무담당관	12월
	56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개정판)	국 제 인 권 과	12월
	57	딩동, 코로나가 도착했습니다 : 동시 에세이 만평 (광주인권사무소 15주년 기념 발간)	광주인권사무소	12월
	58	모두가 즐거워야 스포츠다(스포츠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강연 콘텐츠 개발 결과 자료집)	스 포 츠 인 권 특 별 조 사 단	12월
	59	유럽인권재판소(ECHR) 판례-증오표현(전자파일)	인권교육기획과	12월
	60	인권교육 기본용어(개정증보판)	인권교육기획과	12월
	61	주거권 국제기준 자료집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 관련	사 회 인 권 과	10월

9. 보도자료

연번	배포일	제목
1	1. 2.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과장급 정기인사 실시
2	1. 2.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3	1. 6.	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4	1. 7.	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5	1. 8.	인권위,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6	1. 9.	인권위,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7	1. 1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 박찬운, 비상임 인권위원 양정숙 임명
8	1. 13.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식발관행 개선필요
9	1. 15.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0	1. 15.	인권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방안 모색”
11	1. 16.	인권위, 미디어 종사자들과 혐오표현 반대 실천 선언
12	1. 16.	[설명자료] 알려드립니다. ‘국민청원’건 관련
13	1. 20.	인권위, 군지휘관은 부대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14	1. 21.	인권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등의 ‘범죄사실’ 기재 항목 삭제해야
15	1. 21.	인권위,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
16	1. 22.	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17	1. 23.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감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18	1. 29.	인권위,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 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19	1. 30.	인권위,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 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20	1. 31.	인권위, “유엔인권 정보검색은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1	2. 3.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22	2. 4.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일부, 법무부 불수용
23	2. 4.	인권위, 「제9회 인권보도상」 후보자 공모
24	2. 5.	최영애 인권위원장,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연번	배포일	제목
25	2. 5.	인권위,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 단계적 개선 필요”
26	2. 6.	인권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
27	2. 10.	인권위, 해외봉사단원의 휴가지 제한은 인권침해
28	2. 11.	인권위,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 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 결정
29	2. 11.	인권위,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해야”
30	2. 12.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의 전자영상장비 이용 등 ‘특별 계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31	2. 13.	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32	2. 1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33	2. 18.	인권위, ADHD치료 위한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34	2. 19.	인권위, 2020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 추진
35	2. 20.	최영애 인권위원장, 중국동포 현장 목소리 청취
36	2. 24.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발간
37	2. 25.	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권고
38	2. 26.	인권위·기자협회, 제9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6편 선정
39	2. 27.	인권위,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 시 모든 가족에게 특정 종교의 신앙생활 요구는 차별
40	2. 2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에 이준일 교수 임명
41	2. 28.	인권위, ‘신상관리 강화’ 통해 군사망사고 예방 필요
42	2. 28.	재난상황 보도에서 농민(農人)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긴급 성명
43	3. 2.	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44	3. 3.	인권위, 시각장애인 참정권행사에 필요한 편의 제공 해야
45	3. 3.	‘○○○○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46	3. 4.	인권위, 장애인 폭행 및 학대한 거주시설 종사자 수사 의뢰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권고
47	3. 5.	최영애 인권위원장,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대응 노력 바람직”
48	3. 5.	인권위, 체육단체 및 기관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번	배포일	제목
49	3. 6.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50	3. 6.	인권위, 조사대기 중 피의자에 과도한 제압과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관 징계 권고
51	3. 9.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52	3. 10.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53	3. 11.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
54	3. 16.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논평
55	3. 17.	인권위, 환자 요구와 동의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허용해야
56	3. 18.	인권위, 교원 성과평가 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
57	3. 19.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적 지위 부여를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58	3. 20.	인권위, 국정감사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59	3. 20.	[참고자료] 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추진 상황' 관련
60	3. 25.	국가인권위원장, “제21대 총선은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로 만들어야”
61	3. 30.	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필요”
62	3. 3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킨권 조례' 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63	4. 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64	4. 3.	남양주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간 공가 적용 차별금지 권고 불수용
65	4. 8.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어려운 시기, 모두가 동등한 한 표 행사하는 선거 기대”
66	4. 9.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코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67	4. 9.	인권위, 국토부의 비적정 주거 거주민 주거상향 정책 환영
68	4. 10.	인권위, 선관위에 투표장서 성별 등 신원확인 시 유의사항 전달
69	4. 20.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70	4. 21.	인권위, 공항 장기체류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 보호해야
71	4. 28.	인권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 차별 말아야”
72	4. 29.	인권위, “경찰의 불법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73	5.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에 서미화 소장 임명

연번	배포일	제목
74	5. 7.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해야
75	5. 7.	태아의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76	5. 7.	인권위,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않는 것은 인권침해”
77	5. 8.	인권위, 재개발 현장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긴급구제 권고
78	5. 14.	“혐오와 차별 중지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79	5. 15.	인권위, ‘2019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80	5. 19.	인권위,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
81	5. 21.	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82	5. 22.	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인권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
83	5. 26.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는다
84	5. 27.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
85	6. 1.	인권위-교육공동체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 실천 약속
86	6. 2.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
87	6. 4.	인권위,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88	6. 4.	인권위, 선수 폭력·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광역시 체육회·구청 담당자 등 징계 권고
89	6. 11.	인권위,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90	6. 15.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노인의 취약성 선명하게 부각”
91	6. 16.	인권위,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빚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92	6. 16.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93	6. 17.	인권위, “남성은 정규직 아나운서,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은 성차별”
94	6. 17.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위해 민관학 힘 모은다
95	6. 19.	“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96	6. 23.	인권위, “압수영장 집행 시 영장 일부분만 보여주면 안 돼”
97	6. 23.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로나19,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여”
98	6. 24.	인권위, 장애 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및 직원 인권교육 권고

연번	배포일	제목
99	6. 30.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100	7.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에 조현욱 인권위원 연임 및 신임 석원정 센터장 임명
101	7. 7.	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
102	7. 7.	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 권고
103	7. 7.	인권위,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
104	7. 8.	인권위,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 의견표명
105	7. 9.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106	7. 13.	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107	7. 14.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 개선 권고
108	7. 14.	알려드립니다
109	7. 15.	인권위,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가 우선돼야”
110	7. 15.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화이 해답
111	7. 15.	알려드립니다
112	7. 21.	알려드립니다
113	7. 28.	인권위,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114	7. 29.	인권위,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제도 개선 시급”
115	7. 30.	인권위,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116	8. 3.	인권위, “중학교 전학 시 과도한 추가 자료 요구는 인권침해”
117	8. 3.	인권위 “미성년자 생활체육 이용 금지는 차별”
118	8. 4.	인권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표현 인식개선 적극 나서
119	8. 5.	인권위, “수사절차 진행 시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120	8. 6.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권고 이행 상황
121	8. 6.	스포츠인권 실태, 인권위가 직접 듣고 확인한다
122	8. 10.	인권위, “피의자 조사 시 장애인 등 방어권 보장해야”
123	8. 11.	인권위, “영장 없는 수색의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연번	배포일	제목
124	8. 12.	인권위, 경비업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명 징계권고
125	8. 13.	인권위, “육아시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차별”
126	8. 18.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조항 폐지돼야”
127	8. 19.	인권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128	8. 20.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129	8. 24.	인권위 “검찰·법원 사건기록 관리제도 개선해야”
130	8. 27.	인권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주제로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131	8. 27.	“인권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권고 결정”
132	8. 28.	인권위,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133	9. 1.	인권위,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
134	9. 1.	KBS와 MBC 등 방송 3사 간판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
135	9. 3.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 개최
136	9. 4.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137	9. 8.	인권위, “장남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 주고 친조부모 상사에만 유급휴가 주는 것은 차별”
138	9. 9.	인권위,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조항 삭제해야”
139	9. 9.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APF 국가인권기구연합 부위원장에게 선출
140	9. 10.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41	9. 16.	인권위,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142	9. 22.	인권위·카카오·한국언론법학회 온라인 혐오표현 공동 연구결과 발표
143	9. 23.	인권위, “공직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되어야”
144	9. 28.	“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
145	9. 28.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46	10. 6.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147	10. 7.	최영애 인권위원장, “일상의 평등 실현이 인권도시 미래의 시작”

연번	배포일	제목
148	10. 7.	평등법 제정 향해 종교계와 대화 나서
149	10. 8.	“예비군 지휘관 등 선발 시 만기 전역 중령에게만 과도한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
150	10. 8.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51	10. 12.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해야”
152	10. 15.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153	10. 19.	"무한경쟁과 과잉훈련 속에 고립된 학생선수,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154	10. 20.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155	10. 2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156	10. 22.	“동등한 자격요건 갖춘 강사에게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
157	10. 23.	인권위, 주한대사 등과 각국의 평등법 제정 과정 및 사회적 영향 공유
158	10. 29.	택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59	11. 2.	류현진, “즐겁게 운동해야 진정한 스포츠!”
160	11. 2.	인권위,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하는 '돌봄 종사자의 노동인권 향상 연구과정' 개최
161	11. 4.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162	11. 10.	인권위, 요양병원 인권교육 권고
163	11. 11.	인권위, 경찰청장에 정신질환정보 임의공개 관행에 대해 의견표명
164	11. 12.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 회신 결과 공표
165	11. 16.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및 입원절차 존중에 대한 의견표명
166	11. 16.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67	11. 16.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인권포럼 개최
168	11. 18.	“피의자 신문시 군사법경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비밀 침해”
169	11. 19.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170	11. 19.	유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첫 찬성 표결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71	11. 23.	한국어 사용 가능 외국인이라도 형사사법 절차상 의사소통 왜곡 없도록 통역 제공 등 보장해야”

연번	배포일	제목
172	11. 24.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173	11. 26.	인권위-대학생 자치기구, ‘대학 인권현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
174	11. 27.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공개
175	12. 4.	65세를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법률 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76	12. 4.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177	12. 7.	인권위-KBL, 인권주간 캠페인 실시
178	12. 7.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개최
179	12. 9.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180	12. 9.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급시설 운영 개선 권고
181	12. 10.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식 개최
182	12. 10.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183	12. 14.	“정보경찰의 활동범위에서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184	12. 17.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개최
185	12. 21.	“스포츠인권, 상호존중에서 다시 시작”
186	12. 22.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187	12. 22.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88	12. 23.	국가인권위원회, 23일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고
189	12. 24.	경찰청,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경찰 채용 제한 개선 권고 불수용
190	12. 30.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 존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91	12. 31.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의견표명
192	12. 31.	인권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10. 사진으로 보는 2020년



≫ 2020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8월 16일 위원회는 인권옹호자회의를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과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1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0 하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11월 5일 위원회는 2020년도 하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원회의 중장기적 업무 방향을 담은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020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2020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최영애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 실현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살균제와 폐 손상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원전 방사능 피해, 라돈침대 건강 영향조사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진실 규명과 국가 배상을 이끄는 활동을 전개해 온 백도명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인권상 홍조근정 훈장을 수상했다.



» 제25차 APF 연례회의 참석

9월 9일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주최한 제25차 APF 연례회의(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대체)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APF 부의장 겸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원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지지를 확인하였다.



≫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9월 17일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PF 및 유럽연합(EU)과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여 혐오차별 관련 인권문제의 국내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평등법'과 인권, 주한 대사 등 간담회 개최

10월 23일 '평등법'과 인권, 주한 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 국가 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들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평등법'의 추진 경과, 각국의 평등법 제정 과정, 제정 이후의 사회적 영향,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12월 7일 개최한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 콘퍼런스에서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역량 강화와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 관련 규범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주제인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권, 사법접근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11. 위원회 소관 법규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 2. 4.	행정부무담당관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017. 5. 29.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7. 3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20)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2016. 5. 4.	조사총괄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2005. 7. 6.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2012. 11. 23.	조사총괄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2018. 8. 27.	조사총괄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 5. 19.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019. 2. 22.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2019. 8. 19.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2017. 6. 13.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2017. 6. 13.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2011. 1. 28.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2017. 6. 13.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017. 6. 13.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2016. 5. 4.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2019. 10. 25.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2017. 6. 13.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2017. 10. 27.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10. 8. 2.	행정부무담당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2017. 6. 13.	운영지원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2017. 6. 13.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2019. 10. 4.	조사총괄과 차별시정총괄과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훈 령 (50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8. 7. 24.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2014. 11. 2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2019. 5. 1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2019. 1. 10.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2019. 3.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2011. 9. 22.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019. 10. 1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2018. 7. 25.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2009. 7. 27.	조 사 총 괄 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2012. 10. 12.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2015. 2.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2019. 10. 1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2020. 4. 22.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2019. 10. 1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8. 7. 24.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2019. 10. 1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2016. 3. 30.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2016. 9.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2014. 11. 2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2019. 12. 3.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2020. 4. 22.	기획재정담당관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훈 령 (5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2020. 6. 24.	인권교육운영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2017. 6. 8.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2018. 7. 24.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2020. 11. 26.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2018. 8. 20.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2018. 7. 24.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2018. 7. 24.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2018. 7. 24.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2019. 9. 1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017. 6. 1.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2018. 8. 2.	기획재정담당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2014. 11. 21.	운 영 지 원 과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2. 25.	홍 보 협 력 과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2018. 7. 24.	인권상담조정센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2. 7.	기획재정담당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2019. 11. 14.	기획재정담당관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2012. 5. 21.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2017. 6. 1.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2017. 6. 1.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2015. 6. 12.	홍 보 협 력 과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2018. 7. 9.	홍 보 협 력 과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3. 7.	조 사 총 괄 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2. 15.	혐 오 차 별 대 응 기 획 단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1. 3.	혐 오 차 별 대 응 기 획 단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 4. 1.	운 영 지 원 과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 4. 1.	운 영 지 원 과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예 규 (22)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2018. 7. 25.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2017. 6. 1.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2012. 8. 6.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2015. 6. 9.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2019. 10. 1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2014. 10. 3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2016. 3. 30.	인권교육운영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2019. 10. 1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2014. 5. 27.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2016. 11. 30.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2015. 3. 17.	운 영 지 원 과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2017. 6. 1.	인 권 정 책 과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2018. 8. 14.	행정법무담당관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2018. 7. 25.	행정법무담당관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2013. 4. 11.	운 영 지 원 과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2018. 7. 9.	홍 보 협 력 과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2019. 8. 17.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2019. 8. 19.	기획재정담당관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2009. 9. 24.	행정법무담당관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2018. 7. 25.	인권상담조정센터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2013. 3. 4.	운 영 지 원 과

12. 위원회 활동일지

2020년 1월

- 1월 2일 • 2020년 시무식 및 국립묘지 참배
- 1월 9일 • 시민사회단체 신년 하례회
- 1월 13일 • 박찬운 신임 상임위원 임명
- 1월 15일 •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 1월 16일 •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식
- 1월 29일 • 인권친화적 도시개발 모색 토론회

2020년 2월

- 2월 10일 • 제1차 성평등포럼
- 2월 11일 • 제7차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 2월 12일 • 사회권전문위원회
- 2월 12일 •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
- 2월 13일 •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월 20일 • 중국동포 거주지역 현장방문
- 2월 27일 • 제9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 2월 28일 • 이준일 신임 인권위원 임명

2020년 3월

- 3월 5일 •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발표
- 3월 16일 •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논평
- 3월 25일 • 혐오표현 없는 선거 만들기 위원장 성명
- 3월 26일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 성명 발표
- 3월 27일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

2020년 4월

- 4월 21일 • 제1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 4월 23일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간담회
- 4월 23일 • 상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온라인 의견 수렴(~5.6.)
- 4월 24일 •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
- 4월 29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장애인권현안 ONLINE 토론회

2020년 5월

- 5월 1일 • 서미화 신임 인권위원 임명
- 5월 6일 • 제1차 국제인권전문위원회
- 5월 13일 • 지역인권단체 간담회
- 5월 17일 • 국제 성소수자의 날 혐오차별 예방 ‘마주’ 캠페인
- 5월 19일 •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발족
- 5월 19일 • 인권토크콘서트 진행
- 5월 22일 • 제8차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 5월 26일 • 인권경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업무협약식
- 5월 27일 •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 5월 28일 •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
- 5월 29일 •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대표 간담회

2020년 6월

- 6월 2일 • 코로나19 전문가 좌담회
- 6월 2일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 6월 4일 • 인권위원 워크숍(~6월 5일)
- 6월 8일 •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 모니터링
- 6월 11일 • 위원장, 평등법 관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단 간담회
- 6월 16일 • 제1차 북한인권포럼 운영위원회 간담회
- 6월 16일 •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 6월 22일 • 코로나19와 노인인권 GANHRI 회의 참가
- 6월 23일 • 위원장, 뉴욕 소재 단체 '패스파인더스' 소장 접견
- 6월 24일 •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 6월 24일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울산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
- 6월 30일 • 평등법 제정 국회 의견표명 및 기자회견

2020년 7월

- 7월 1일 • 제46차 북한인권포럼
- 7월 1일 • 충남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실무협의회
- 7월 2일 • 제14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 7월 3일 • 석원정 신임 인권위원 임명
- 7월 8일 • 위원장, 평등법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제정 필요성 및 시안 설명)
- 7월 9일 • 위원장, 평등법 관련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면담
- 7월 10일 • 평등법 권역별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설명회(~22일)
- 7월 10일 • 위원장, 평등법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면담
- 7월 14일 • 위원장, 평등법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장 면담
- 7월 21일 •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 7월 21일 • 평등법 입법 추진을 위한 지역설명회

- 7월 23일 • 위원장, 원불교 교정원장 면담
- 7월 30일 • 위원장, 유교 성균관장 면담
- 7월 31일 • 위원장, 천도교 교령 면담

2020년 8월

- 8월 4일 • ‘청소년 인권단편시전’ 전시
- 8월 6일 • 스포츠인권 현장조사 학교운동부 방문
- 8월 13일 • 제1차 지역인권전문위원회
- 8월 18일 •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 촉구 캠페인
- 8월 26일 • 2020 인권옹호자회의

2020년 9월

- 9월 4일 • ‘평등및차별금지에관한법률’ 입법추진 전략회의
- 9월 9일 •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
- 9월 9일 • 제25차 APF 연례회의
- 9월 17일 • 2020 혐오차별대응 국제콘퍼런스
- 9월 18일 • 평등법 관련 종교계 원로간담회
- 9월 22일 •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공동 세미나(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카카오)
- 9월 22일 • 평등법 관련 주한 해외대사관 초청 국회 인권콘퍼런스 공동개최
- 9월 23일 • 2020년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9월 28일 •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9월 28일 • 이주 및 장애 분야 인권상담사례 네트워크 협의

2020년 10월

- 10월 6일 • 위원장,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접견
- 10월 6일 • 평등법 관련 개신교 원로초청 간담회
- 10월 7일 • 세계인권도시포럼
- 10월 8일 • 평등법 관련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차별금지회의〉 개최
- 10월 13일 • 정문자 상임위원, 주한 뉴질랜드 주최 간담회 참석
- 10월 15일 • 제2차 지역인권전문위원회
- 10월 19일 • 소셜미디어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아태지역 포럼 참가
- 10월 21일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 10월 21일 • 제2차 차별시정전문위원회
- 10월 22일 • 202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토론회
- 10월 23일 • 평등법과 인권 주한대사 등 간담회
- 10월 27일 •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에 관한 토론회
- 10월 28일 • 인권현장방문(국립정신건강센터 등)

2020년 11월

- 11월 3일 • 위원장, 스포츠인권 명예대사 류현진 선수 위원회 방문 면담
- 11월 5일 • 평등법 입법 추진 관련 간담회
- 11월 7일 • 충북 이주민축제 혐오·차별 및 평등법 제정 홍보 캠페인
- 11월 17일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 11월 17일 • 정보인권 포럼
- 11월 18일 • 인권영화 상영
- 11월 23일 • 아동인권 보고대회
- 11월 24일 • 제9차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비대면)
- 11월 24일 • 평등법 제정 관련 부산 종교계 대표초청 간담회 개최
- 11월 25일 • 위원회 설립기념일 행사

- 11월 26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11월 5일 • 하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11월 18일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중간점검 간담회
- 11월 24일 •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상황 중간점검 토론회
- 11월 26일 • 2020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 11월 30일 • GANHRI 연례회의 참석(~12월 4일)

2020년 12월

- 12월 4일 • 2020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 12월 7일 •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
- 12월 7일 • ‘인종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프로농구’ 캠페인(12.7~11, KBL 공동)
- 12월 8일 • 위원장, 주한 스위스 대사 간담회
- 12월 8일 • 사회권전문위원회
- 12월 9일 •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 12월 9일 • 온라인 북콘서트
- 12월 10일 • ‘코로나19, 청소년 일상기록전’ 전시
- 12월 10일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 12월 10일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시민인권영화제
- 12월 11일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 12월 18일 •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입법부를 중심으로) 개최
- 12월 22일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온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20 연간보고서

|인쇄일| 2021년 5월

|발행일| 2021년 5월

|발행인| 최영애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우) 04551

|전화| (02) 2125-9793

|팩스| (02) 2125-0913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주)삼일기획 (044) 866-3011

ISSN 1975-3128

비매품

